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아마티아 셴의 정의론의
시민교육적 함의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오명운

아마티아 셴의 정의론의 시민교육적 함의

지도교수 김 형 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오 명 운

오명운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2월

위 원 장 _____ 김 병 환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김 형 렬 _____ (인)

위 원 _____ 정 창 우 _____ (인)

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마티아 센(Amartya Kumar Sen)의 정의론의 시민교육적 함의를 모색한다. 센의 정의론은 인류 공통적인, 부정의에 대한 강한 지각을 말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자유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학제적인 성격의 센의 정의론을 해석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들을 다루고, 이어서 센의 정의론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네 가지 특징들로 재구성하였다. 첫째, 센의 정의론은 실현 중심의 비교접근방식을 추구한다. 둘째, 실질적인 자유로서 역량을 주장한다. 이때 역량 자유는 자유의 다면성 관점을 전제한다. 셋째, 자유의 다면성을 사회선택이론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센의 자유주의 패러독스'를 또 다른 특징으로 다룬다. 도덕적 관점에서 사회선택이론의 적용은 센 정의론만의 독특한 전개과정이기도 하다. 넷째, 센의 사회선택이론을 통한 공적추론의 강조는 구체적인 실천방식으로서 센의 민주주의론으로 확장된다.

그러나 센의 정의론은 크게 세 가지 한계를 보인다. 우선 선형적 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다는 비판과 제도의 중요성을 오히려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둘째, 역량 개념의 여러 한계들도 비판받는다. 역량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추구하기에 인정의 문제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와 같은 실제 적용에 대한 한계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센의 민주주의 방식은 제도적 고려 없이 공적추론만 강조하게 되고, 심의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부족하여 기존 심의민주주의 한계를 그대로 지적받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해낸 센 정의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역량과 비교접근방식(사회선택이론)의 초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실천성 비판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기에 비록 센의 주장과는 다르더라도 열린 공평성의 관점에서 역량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센의 본의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을뿐더러 역량과 비교접근방식 두 접근의 본질적인 충돌도 해소 가능하다.

몇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셴의 정의론이 추구하는 확장된 자유의 범위나 세계시민주의 관점은 도덕과 시민교육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자유의 다면성 관점에서 자유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기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자유는 자유주의의 개인적 자유로서 공화주의의 공동선과 대비된다. 그러나 셴은 역량을 비롯하여 비간접 자유나 비지배 자유 모두 자유의 다면성 관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유의 다면성 관점에서는 개인선이 반드시 공동선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정보를 반영하여 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자유를 모색할 수 있다. 이에 교육과정에 기술된 자유를 개인적 자유로만 다루지 않고, 일반적 자유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새롭게 기술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기존의 분배정의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세계시민주의에 ‘공평한 관찰자’로 대표되는 열린 공평성 개념을 적용하여 세계시민주의를 더 정교화시키고 당위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세계시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외원조에 대한 여러 관점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분리는 오히려 실천에 대한 시급성과 정당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롤스의 제도주의적 접근이나 싱어의 공리주의적 접근은 모두 세계시민주의로서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셴의 열린 공평성 관점을 교육과정에 명시해야 한다. 열린 공평성은 전 인류의 관점에서 개방적이고 더 합리적인 추론을 추구한다. 이는 공감에만 기초한 이익평등고려의 원칙보다 더 나아간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요어 : 셴의 정의론, 시민교육, 역량 자유, 사회선택이론, 자유주의 패러독스, 열린 공평성

학 번 : 2019-26287

목 차

| | |
|------------------------------------|-----|
| 제 1 장 서론 | 1 |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
| 제 2 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문제 | 6 |
| 제 2 장 쉐 정의론의 예비적 고찰 | 10 |
| 제 1 절 합리적 선택의 관점 | 10 |
| 제 2 절 사회선택이론과 한계 | 18 |
| 제 3 절 공리주의와 결과주의에 대한 해석 | 36 |
| 제 4 절 복지주의에 대한 다양한 입장 | 45 |
| 제 3 장 쉐 정의론의 특징 | 58 |
| 제 1 절 선형적 제도주의 비판과 대안 | 58 |
| 제 2 절 역량으로서의 자유 | 71 |
| 제 3 절 자유의 다면성 : 쉐의 자유주의 패러독스 | 82 |
| 제 4 절 쉐의 민주주의와 기능 | 95 |
| 제 4 장 쉐 정의론에 대한 비판과 대응 | 104 |
| 제 1 절 선형적 제도주의 비판에 대한 비판 | 104 |
| 제 2 절 역량 개념의 한계 | 111 |
| 제 3 절 쉐의 민주주의 방식의 문제점 | 118 |
| 제 5 장 쉐 정의론의 시민교육적 적용 | 123 |
| 제 1 절 자유의 다면성 관점에서 자유의 확장 | 123 |
| 제 2 절 세계시민주의에 열린 공정성 적용 | 133 |
| 제 6 장 결론 | 142 |
| 참고문헌 | 150 |
| Abstract | 163 |

표 목 차

| | |
|-----------------------------------|-----|
| [표 1] 누스바움의 핵심 역량 | 80 |
| [표 2] 정규형 표현 게임 | 87 |
| [표 3] 용의자의 딜레마 | 89 |
| [표 4] 자유주의와 관련된 윤리와 사상 영역 | 124 |
| [표 5] 자유주의와 관련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 124 |
| [표 6] 세계시민주의와 관련된 윤리와 사상 영역 | 134 |
| [표 7] 세계시민주의와 관련된 생활과 윤리 영역 | 135 |

그 립 목 차

| | |
|---------------------------------|----|
| [그림 1] 여러 가지 무차별곡선 | 21 |
| [그림 2] 사회선택이론에 대한 2x2 해석표 | 25 |
| [그림 3] 차등의 원칙의 무차별곡선 | 28 |
| [그림 4] 현금과 현물 비교 무차별곡선 | 31 |
| [그림 5] 전개형 표현 게임 | 88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인도의 경제학자이자 도덕철학자인 아마티아 센(Amartya Kumar Sen)의 정의론¹⁾의 시민교육적 함의를 모색한다. 센은 인류 공통적인 부정의에 대한 강한 지각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Idea of Justice*, 이하 *IJ* xxvii)²⁾ 센의 정의론은 이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고 선형적 제도주의(transcendental institutionalism)와 대조되는 실현중심의 비교접근 방식(realization-focused comparison)을 적용하면서 역량(capability)³⁾을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인 자유 개념을 추구한다는 특성을 띤다. 센의 정의론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 더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론에 바탕을 둔 시민교육에도 함의를 제공한다.

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역량 개념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해왔다(목광수, 2010; 송윤진, 2016; 유성상&이은혜, 2016; 이경은, 2017). 그 외 연구들은 센의 비교접근 방식에도 비중을 두었지만, 이

1) 본래 센은 자신의 정의에 대한 논의들을 ‘정의론(The theory of justice)’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정의의 아이디어(The idea of justice)’로 지칭한다. 이에 센의 정의를 ‘정의론’으로 명명하는 것이 센의 본의와 어긋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관련 학계에서 익숙한 ‘정의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2) Sen(2009), *The Idea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이규원 역(2019), 『정의의 아이디어』, 지식의 날개.

3) capability가 국내에서 competence와 동일하게 번역되면서 정의가 협소해지고 혼동되는 부분을 우려하여 구분하기 위해 ‘토대역량’이라고 기술되기도 한다(유성상 & 이은혜 2016; 이경은, 2017). 본 연구에서는 ‘역량’이 같은 맥락으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바 센의 capability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붙여진다면 간결한 단어로도 충분히 센의 본의가 담겨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존 저서들의 번역대로 ‘역량’ 용어로 통일한다.

역시 셴 정의론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다(김대근, 2010; 김병곤&봉재현, 2014; 목광수, 2011a; 2011b; 2018; 최은광, 2014). 셴의 여러 가지 정의의 아이디어들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면서 보다 사회정의 관점에서 시민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무엇보다 셴 정의론 자체에서도 자신의 정의를 시민교육적으로 연계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나 관련 영역이 부재하다. 그럼에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셴의 정의론을 적용한 구체적인 시민교육 연구 역시 드물다는 사실에서 본 연구의 필요성을 찾는다. 본 연구는 시민교육적인 관점에서 셴 정의론 전반의 전체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셴 정의의 주요 특징과 한계점들을 분석해보고,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셴의 정의론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대척점으로서 선협적 제도주의를 비교대조한다. 이에 선협적 제도주의의 대표격인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에 대한 여러 비판이 논의에 포함된다. 사실 롤스의 정의론이 현대 정치철학과 윤리학에 미친 지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정의에 관한 현대적 논의들은 롤스의 정의론과의 관계를 검토하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때 셴은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관점에서 롤스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셴의 비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롤스의 정의론은 완벽히 공정한 사회에서의 정의로운 제도 마련에 천착하는 선협적이고 제도주의적인 특성을 띠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변화가 정의를 고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결여하고 있다(IJ 76-8). 둘째, 원초적 계약에서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절차적 장치가 대상 그룹의 구성원들에게만 한정되기에 구성원 이외의 타인들을 통한 정밀 조사와 추론을 허용하지 않는, 즉 ‘닫힌 공평성(closed impartiality)’의 한계를 지닌다(IJ 141-4). 셋째, 롤스의 정의론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차등 원칙이 삶의 수단인 기본가치(primary goods)에 대한 분배 문제만을 고려하고 있기에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해주지 못한다(IJ 293-6).

롤스와 같이 완벽히 공정한 제도를 규정하는 것을 정의론의 중심 과제로

삼는 계약론적인 전통과 달리, 센은 실현 중심의 비교접근 방식이라는 대안적 전통을 따른다. 센의 정의론은 제도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제 행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그 외 여러 결정요인들을 다루는 다양한 접근 방식들을 비교 평가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다(IJ xxxvii). 실현 중심의 비교 접근 정의는 다양한 혁신적인 비교론적 접근법을 취한다. 센은 이러한 접근을 아담 스미스(Adam Smith)를 비롯하여 마르퀴 드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메리 울스턴크래프트(Mary Wollstonecraft), 칼 마르크스(Karl Marx),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등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들은 모두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사회 내에 현존하는 명백한 부정의를 제거하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IJ 6-9). 18세기 콩도르세의 작업에서 시작되어 20세기 중반 케네스 애로우(Kenneth Arrow)의 공헌으로 발전한 ‘사회선택이론(social choice theory)’ 역시 이 같은 전통에 속한다.

센은 자신의 정의에 대한 접근 방식(approach to justice)이 경제학자로서 오랫동안 천착하였던 사회선택이론의 방식을 따른다는 점을 강조한다(IJ xiii). 미시경제학 정의에 따르면, 사회선택이론이란 사회 구성원의 선호를 반영하여 선택가능한 다양한 대안들 가운데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김영산 & 왕규호, 2009: 911). 달리 말해, 사회선택이론은 사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를 탐구한다. 이에 기본적으로 사회선택이론은 비교 중심적이면서도 실천적인 특징을 지니게 된다. 센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회선택이론의 비교중심접근이 오늘날의 다원주의적 현실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한다(IJ 27-30). 또한 사회선택이론의 방식은 다양한 정보를 반영한 논의들을 실제 현실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각 나라의 빈곤과 불평등을 연구하면서 기존의 불평등지수 한계를 보완한 센 지수(Sen Index)나 센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가 대표적인 예시들이다.

센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경제학자이면서 도덕철학자인 아담 스미스의 논의를 다수 차용하는데, 특히 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당위와 필요성을 매

우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또한 『도덕 감정론』을 통해 제시된 ‘공평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를 롤스와 대비되는 핵심 개념으로서 적극 주장한다(IJ 139-41).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공평한 관찰자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고려하는 스미스의 관점은 ‘열린 공평성(open impartiality)’의 관점에서 다른 사회의 외부인이 내리는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

제도주의에 대한 비판과 공평한 관찰자 관점은 센의 민주주의론으로 연결된다. 정의의 요건이 공적 추론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공적 추론이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와 관련이 있기에, 정의와 민주주의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담론적 특징을 공유한다(IJ 367).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무기명 투표와 선거라는 절차에만 집중하게 되는 제도적인 해석은 매우 편협하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제도 중심적인 한계와 그 보완점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그 일환으로 공적 추론과 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심의민주주의가 대두되었다. 센의 민주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한다.

센이 기존의 주류 정의론에 대해 비판하는 요지는 바로 이것이다. 왜 여전히 전 세계의 명백한 부정의들이 해결되지 않는가? 여전히 빈곤이나 기아와 같이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들이 만연해 있고, 갈수록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개인 간, 집단 간 불평등 역시 심해지고 있다.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는 복지 문제는 사회정의의 핵심 쟁점이지만, 여전히 경제학적인 계산문제풀이나 개인 책임 및 윤리적 자선 정도의 위상으로밖에 해석되지 못하고 있다. 개인복지나 사회복지의 문제는 여전히 공리주의의 효용이나 선호 개념으로만 다루지고 있다. 그 결과 여전히 만연하는 부정의들에 대해 센은 경제학과 윤리학의 괴리를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는다(Sen, 1987: 23-6). 경제학의 문제가 너무 실증적으로만 접근하여 그 속에 담긴 규범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라면, 윤리학의 문제는 그 반대이다. 게다가 오늘날의 계약론적 정의로는 다원화 속 필연적인 가치 대립에 대해 절차적 정의로서 중립적인 합의만 강조할 수밖에 없다. 센은 윤리학에도 선택적인 사고 과정만이 아니라, 상호 비교하고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때 사회선택이론의 방식이 적극 활용될 수 있다. 사회선택이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더 객관적이고 더

나은 공적 추론이 가능하다(*IJ* 123-5). 셴의 정의론은 바로 이러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넛지(nudge)와 같은 행동경제학으로 대표되는 규범 경제학이나 그 하위 분야로서 사회선택이론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셴의 연구를 활용하고 있다(주병기, 2017). 반면 도덕과에서는 아직까지 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셴 이론을 곧바로 적용하기에 여러 개념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셴의 정의는 롤스의 것처럼 명제 일부부터 백까지 명시되어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논증 구조가 아니다. 셴 역시 자신의 정의가 단일한 이론이라기보다는 포괄하는 접근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IJ* xxix). 여러 주제 분야로 나뉘다 보니 분절적인 측면도 분명 있다.

물론 셴 정의론의 핵심 개념은 역량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역량 개념조차 셴의 의도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롤스의 기본가치나 여타 기능들처럼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셴은 역량접근이란 개개인 이익의 여러 가지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며, 구체적 제시보다는 기회의 측면에서 살피는 일반적인 접근이라고 명시한다(*IJ* 263). 오히려 구체적인 제시는 각 사회의 중요한 역량설정을 위해 요구되는 공적토론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셴의 정의와 그 적용 방식은 정의와 자유에 있어서 새로운 시각과 범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도덕과 시민교육에 함의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셴이 정의를 펼쳐가는 여러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에 주목하면서 이를 특징적인 개념들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셴이 말하고자 했던 일련의 요소들이 상당히 체계적이고 일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 셴의 정의론을 적용한 시민교육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자유 개념과 범위를 셴이 강조하는 자유의 다면성(the plurality of aspect of freedom) 관점에서 확장할 수 있다. 둘째, 세계시민주의에 공평한 관찰자로 대표되는 열린 공평성 개념을 적용하여 세계시민주의를 더 정교화시키고 당위성을 높일 수 있다.

제 2 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문제

1.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센의 정의론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센의 저서들을 중심으로 한 문헌들을 살펴본다. 센의 이론을 하나로 집대성했다는 평을 받는 『정의의 아이디어』(*The Idea of Justice*)를 비롯하여 주요 저서들인 『윤리학과 경제학』(*On Ethics and Economics*), 『불평등의 재검토』(*Inequality Reexamined*),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 등을 주 텍스트로 삼는다. 이외 센의 저작들(Sen, 1970a; 1970b; 1977; 1979; 1982a; 1982b; 1986; 1988; 1996; 2002)이나 강연 자료들을 통해서도 정의에 대한 센의 관점과 방식들을 살펴본다. 센에 대한 2차 연구들도 참고한다. 기존 국내 도덕 연구들은 대부분 역량중심(목광수, 2010; 송윤진, 2016; 유성상 & 이은혜, 2016; 이경은, 2017)이나 비교접근 정의론(김대근, 2010; 김병곤 & 봉재현, 2014; 목광수, 2011a; 2011b; 2018; 최은광, 2014)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는 센 정의론의 분절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주요 테마로 재구성하면서 센 특유의 사회정의론적 관점과 그 전개 방식들에 초점을 맞춘다.

센의 정의론은 경제학과 윤리학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전개되기에 양 방향적 접근에 대한 개념적인 틀이 필요했다. 센이 자신의 주된 문제의식이었던 두 분야의 괴리를 좁히려 했던 만큼 두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센의 정의론을 온전히 해석해서 교육적 함의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점에서 양쪽의 주요 개념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동시에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접점을 찾고자 모색하였다. 이에 철학자 다니엘 하우스만(Daniel M. Hausmann)과 경제학자 마이클 맥퍼슨(Michael S. McPherson)의 공동저작인 『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Economic Analysis, Moral Philosophy and Public Policy*, 이하 **EMP**)⁴⁾을 보조 텍스트로 삼는다. 센의

4) Hausmann, Daniel M. & McPherson, Michael S.(2006), *Economic Analysis, Moral Philosophy, and Public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주동률 역

정의론 전개와 유사한 개념적 접근을 하면서 동시에 셴의 경제적 기반인 사회선택이론 분야에 보다 심화적인 이해를 돕는다.

오늘날 사회선택이론은 규범경제학 속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경제학 연구(주병기, 2017; 최승주, 2015)들을 참고한다. 셴이 비판하는 합리적 선택이론과 관련하여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연구들(김완진, 2005; 이정전, 2004; 2005; 정준표, 2003)도 참고한다. 이외 추가적인 개념 정의와 해석은 김영산과 왕규호의 『미시경제학』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적용사례는 경제학자 사무엘 보울스(Samuel Bowles)의 『도덕 경제학』(*The Moral Economy: why good incentives are no substitute for good citizens*)에서 다루는 다양한 게임실험연구들을 참고한다.

셴이 복지경제학을 연구하는 만큼 그의 정의론은 자연스럽게 복지와 관련된 정치철학 논의로도 이어진다. 특히 전반적으로 롤스의 정의론을 비판하면서 전개되기에 롤스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이하 *TJ*)⁵⁾을 주로 참고하고, 이외 정치철학적 쟁점과 현대적 논의들을 윌 킴리카(Will Kymlicka)의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와 로버트 구딘(Robert E. Goodin)과 필립 페티(Philip Pettit) 편저의 『*A Companion to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를 참고한다.

2장에서는 셴의 정의론을 해석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을 다룬다. 먼저 1절에서는 합리적 선택의 관점에 대해 탐구한다. 기존 합리적 선택이론과의 차이점과 셴이 추구하는 합리성의 여러 특징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이어서 2절에서는 셴의 주 연구 분야인 사회선택이론에 대해 분석한다. 그중 핵심인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셴의 해석을 통해 기존 사회선택이론이 지닌 합리성 조건들의 한계들을 비판한다. 이어서 3절에서는 공리주의와 결과주의에 대한 셴의 해석을 검토한다. 셴은 복지경제학의 원리로서 공리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결과주의에 행위자 상대성(agent relative)을 받아들여 포괄적 결과를

(2010), 『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 나남출판.

5) Rawls, John(1971, 1999),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황경식 역(2003), 『정의론』, 이학사.

주장한다. 4절에서는 개인복지와 사회복지에 대해 해석하는 복지주의(welfarism)의 다양한 입장과 복지의 형식적 이론과 실질적 이론들을 분석한다. 또한 복지를 기준으로 분류되는 여러 평등주의 이론들도 센의 정의와 함께 비교 검토한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센 정의론의 특징들을 재구성한다. 먼저 1절에서는 선형적 제도주의를 비판하면서 센이 추구하는 실현중심의 비교접근 방식의 당위성을 검토한다. 선형적 제도주의로서 롤스를 여러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공평한 관찰자에 대해 논해본다. 이어서 2절에서는 센 정의론의 핵심인 역량에 대해 분석한다. 역량 개념은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추구하기에 기존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과 비교하여 검토해본다. 3절에서는 센이 추구하는 자유의 다면성 관점을 적용하는 실제로서 ‘센의 자유주의 패러독스(The liberal paradox 또는 Sen's paradox)’를 분석한다. 센의 패러독스는 사회선택이론에서 개인적 자유와 일반적 자유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관련된 비판들과 특히 게임이론적 접근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윤리적 대안들과 나아가 사회선택이론의 유용한 가능성들을 모색해본다. 마지막 4절에서는 사회정의의 실현 방식인 센의 민주주의론을 분석한다. 센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특징과 여러 발전 기능들을 분석하고, 센의 정의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4장에서는 센 정의론에 대한 비판들을 제시한다. 1절에서는 센의 선형적 제도주의 비판에 대해 검토한다. 센의 정의에서는 선형적 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이 중요한 흐름인데, 센의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비판들이 제기된다. 이어서 2절에서는 역량 개념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한계들을 검토한다. 역량 개념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실제 부정의를 제거하지 못하고,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간과하여 인정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들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역량 개념과 센이 추구하는 사회선택이론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 3절에서는 센의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센의 정의는 공적 토론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결국 심의민주주의와 궤를 같이하는

데, 이로 인하여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받을 수 있다.

5장에서는 셴의 정의론에 대한 시민교육적 함의를 도출한다. 1절에서는 셴이 주장하는 자유의 다면성 관점에서 기존의 자유 개념과 범위를 확장할 것을 제안한다. 자유의 다면성 관점은 자유지상주의의 결핍성이나 공화주의의 의존성을 배척하지 않고 모두 포괄할 수 있다. 이어서 2절에서는 기존 세계시민주의 내용에 열린 공평성 개념의 적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다. 열린 공평성을 통한 공평한 관찰자의 반영은 기존의 세계시민주의를 개념적으로 더욱 정교화시키고, 실천에 대한 당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첫째, 셴의 정의론의 배경과 특징들은 무엇인가?

둘째, 셴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

셋째, 셴의 정의론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민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제 2 장 센 정의론의 예비적 고찰

제 1 절 합리적 선택의 관점

센의 정의론은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에 기반을 둔 이론이다. 합리성 개념 자체는 관점에 따라 범위가 넓고 논쟁적인데, ‘합리적 선택이론’이라는 분야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센은 기존의 합리적 선택이론과 자신의 이론을 차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IJ* 202). 따라서 센의 주장 이전에 기존의 합리적 선택 입장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합리적 선택이론과 그 한계

대부분의 현대 결과주의자들은 윤리학을 합리성에 연결시켰다. 대표적으로 존 하사니(John Harsanyi)는 윤리학이란 사회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이하 RCT)’이라고 말한다(Harsanyi, 1977: 43).⁶⁾ 이 지점에서 윤리학과 경제학은 밀접해진다. 이때 공통적으로 공리(효용)는 선호대상이 아니라 선호만족(preference satisfaction)의 지수(index)로 간주된다(*EMP* 215-6). 하사니에 의하면 RCT는 세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 행동을 설명하는 전통적인 효용이론이다. 여기서 효용이라는 형이상학적 개념은 선호라는 행동주의적 개념으로 대체된다. 둘째는 불확실성 상황의 행동이론으로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으로도 불린다. 객관적인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위험(risk)이라 부르고, 계산할 수 없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이때 주관적인 확률⁷⁾을 계산하여 기대효용을 극대화

6) 롤스는 정의론이란 합리적 선택이론의 일부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TJ* 51-3).

7) 주관적 확률은 ‘베이저안 확률(Bayesian probability)’로도 불리는데, 선 확률이 다른 정보 증거들의 추가로 인해 사후 확률로 바뀌는 것이다. 단순화하면 조건부 확률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선 확률로는 A보다 B일 가능성이 컸더라도 추가적

할 수 있다. 이를 ‘베이즈(Bayes) 합리성’이라고도 부른다. 기대효용의 극대화
화는 공리주의의 강력한 근거로 제시되며 도덕이론으로 확장된다. 셋째는
게임적인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분석하는 게임이론(Game theory)⁸⁾이다
(김완진, 2005: 27-8). RCT는 80년대 국제관계, 90년대 비교정치, 최근의
역사적 현상까지 적용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소위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라
부르는 흐름이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합리성은 정의(definition)의 문제이
고 현실 속 인간의 불완전한 합리성을 단순화시킨 개념이다. 그럼에도 합리
적 선택이론은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고 다양한 분야의 형식화에 많은 도움
을 준다(정준표, 2003: 434-6).

하사니의 합리적 선택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인은 평균 효용을 극대화
하는 원칙을 선택하는 것이다(Harsanyi, 1955; *EMP* 122). 롤스 역시 정의
론에서 원초적 입장의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는데, 그 채택 근거로서 하사니
가 주장하는 평균효용의 한계를 든다. 롤스는 평균효용 원칙에 대해 고전적
공리주의의 총량 원칙과 달리 원초적 입장에서의 계약론과 유사할 것이라고
말한다. 개인의 기대치가 동일하게 여겨지고, 비슷한 수준의 위험 기피 성
향을 지니고 있다면, 효용의 원칙은 차등의 원칙과 유사해질 수 있다. 다만
롤스는 평균효용이 가진 결함들, 예컨대, 가설적 확률 문제나 적절한 인간
관의 부재가 존재하기에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평균효용의 원칙보다는
정의의 두 원칙을 채택하게 된다. 이때 롤스가 가정하는 인간관은 특정한
고차적 이해 관심을 지닌 합리적인 인간이다(*TJ* 225-43).

나아가 롤스는 합리성(rationality)과 합당성(reasonableness)을 구분한다.
예를 들어 어떤 선호는 정의의 관점에서 합당하지 못하지만, 개인 효용의
관점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Rawls, 1980: 528-530; Kymlicka, 2002:
61-2). 롤스는 합리성에 대해 경제학의 전형적인 의미처럼 주어진 목적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취한다는 뜻으로 최대한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여기에 윤리적 요소의 개입은 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TJ*

정보를 통한 사후 확률로는 B보다 A일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다.

8) 게임이론이란 참가자들 간 상호의존성이 존재하여 전략적 고려(strategic consideration)가 필요한 게임 상황에서 합리적인 참가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김영산 & 왕규호, 2009: 611).

48). 롤스는 최초의 상황에서 당사자인 인간들을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 (mutually disinterested rationality)을 가진 것으로 가정한다. 합리적인 참가자들의 만장일치로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합리적 인간이란 일정한 선호체계를 지니고 있고, 무엇보다 시기심(envy)이 없다고 전제된다. 왜냐하면 시기심은 모든 사람의 처지를 악화시키기에 아무런 이익이 없고, 이것까지 고민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비로소 안정적인 정의론이 될 수 있다(TJ 205). 이후 롤스는 합리성과 달리 상호성을 고려하는 공적이성의 근거로서 합당성을 요구하게 된다.

센은 자신의 정의에서 이러한 구분을 유용하게 사용한다(IJ 72). 다만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롤스가 합리성 자체에는 윤리의 개입 여지를 두지 않는 반면 센은 특유의 윤리적인 입장을 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센의 합리성 개념은 롤스의 합당성 개념과 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센은 자신 역시 합리적 선택을 추구하지만, 기존의 경제학적인 RCT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한다(IJ 202). 기존의 RCT는 복지를 선호만족과 동일시하고, 합리적 선택의 기준은 파레토 효율성⁹⁾에 따르기 때문이다(EMP 136-7). 그러나 효율성에 대한 판단은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실증적이지 않고, 이미 도덕적 관념이 개입되어 있다. 실제 파레토 효율성은 재산권 개념과 긴밀히 연계되어 발전되어 왔고, 나중에는 자유를 옹호하는 중요한 경제 법칙으로서 여겨지게 되었다(EMP 267). 이처럼 RCT의 합리성은 단순 기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규범적이다. 어떤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행위에 대한 당위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

센은 경제학의 합리성을 2가지로 해석한다. 하나는 선택에서 순수한 내적 일관성(consistency)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효용의 극대화(maximization)로 보는 것이다(Sen, 1987: 30). 내적 일관성이란 완전성이거나 이행성과 같은 합리성 조건들을 따지는 형식적 관점이다. 한편 극대화는 예측과 동시에 합리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경제학에서 극대화는

9) 파레토 효율성(pareto efficiency, 같은 의미로 최적(pareto optimality))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Vilfredo Pareto)의 이름을 딴 개념으로 경제학에서 가장 엄밀한 의미의 효율성이다(김영산 & 왕규호, 2009: 779).

자연과학의 극대화와 달리 의식적 선택의 결과다. 즉 ‘추구하고 싶은 것’을 극대화한 결과인 것이다. 보통 RCT는 효용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하는데, 정작 무엇을 선택하고 극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는 말하지 않는다. 여기서 핵심은 효용의 극대화가 자기이익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에서는 효용을 자기이익으로 자의적으로 등치 시켰다(EMP 106-7).

센은 효용의 극대화 선택이 실제 선택을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IJ 197-8). 더 많은 정보를 반영해 예측의 불확실성을 수치로 계산한 기대효용조차 선호의 절차적 일관성을 요구할 뿐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한다. 우리가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 원인 성립의 여부이지 조건부확률이 아니기 때문이다.¹⁰⁾ 게다가 어떤 사람은 미래의 위험에 대해 더 기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이 사람은 불확실한 확률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기대효용은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다. 비슷하게 손실회피성향도 마찬가지다(최승주, 2015: 182-5). 결국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기대효용의 극대화는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합리적 믿음에 관한 이론일 뿐이다(EMP 116-8).

이에 극대화 조건을 완화시키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것이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다(Simon, 1982). 제한된 합리성은 완벽한 합리성을 추구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할뿐더러 시간과 인지적 능력도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모든 대안 중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전략(optimizing)이 아니라, 가능한 소수의 대안 중 가장 만족할만한 것(satisficing)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는 결과보다는 절차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IJ 199-200; EMP 110).

10) 유명한 예시로 노직이 제시한 뉴컴 문제(Newcomb's problem)가 있다. 두 개의 상자 중 투명한 A상자 안에는 천원이 있고, 불투명한 B상자 안에는 얼마가 있는지 모른다. 여기서 선택지는 ‘B만 고르기’와 ‘A,B 모두 고르기’다. 한 오류가 없는 예언자는 모두 고르면 B에는 아무것도 없고, B만 고르면 백만원이 있다고 말한다. 그럼 참가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당연히 B만 선택하는 것이 조건부 확률에 따라 기대효용이 커 보이지만, 이와 무관하게 B상자에 돈이 있을지 여부는 이미 결정되어있다(Nozick, 1969; EMP 114).

2. 센의 합리적 선택의 특징

센의 정의에서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의 특징으로는 지속가능한 이유(sustainable reasons), 커미트먼트(commitment)¹¹⁾, 거부할 수 없는(non rejectability) 합당성, 권력의 책무(obligation of power) 등을 들 수 있다. 기존의 RCT는 효용의 극대화로 합리성을 정의했지만, 실제 현실에서의 맥락과는 괴리가 있었다. 센은 그 근본 원인을 경제학에서 전제하는 좁은 인간관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행위는 이기성 동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센은 합리적 선택 그 자체보다 이유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을 선택한 이유가 마땅한 이유인지를 따지는데, 이는 반성적 추론에 근거한다. 비판적인 검토를 충분히 받고 나서 그 이유가 지속가능할 때 비로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센은 이러한 관점이 비록 RCT의 관점보다 더 엄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이유를 받아들이기엔 더 허용적이라고 말한다. 지속가능한 이유가 여럿일 가능성은 기존의 관점처럼 엄격한 실제 예측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오히려 단순하고 제한적인 예측을 피해야 한다(*IJ* 207).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가정이다. 경제학의 제 1원리는 ‘인간의 이기성’이라고 전제되었지만(*Edgeworth*, 1881; *IJ* 208), 정작 이 가정은 역사에서 오래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이전의 아리스토텔레스나 아퀴나스 같은 사상가들은 경제문제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였다. 인간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윤

11) 다른 문헌에서는 신념이나 책임감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이때 센의 구분을 참고하여 도덕적 신념과 이타적 선호를 구분할 수 있다. 센에 의하면 공감은 이타성과 동일하지 않고, 신념 역시 도덕원칙에 따를 필요는 없다(*Sen*, 1977; *EMP* 185-9). 후술하겠지만 ‘커미트먼트’를 신념 또는 책임감이라고 기술하기에는 그 본의를 나타내기엔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또 다른 문헌에서는 ‘커미트먼트’를 센이 추구하는 사회적 측면을 반영하여 사회적 기여라고도 번역한다. 개인적 자유를 사회적 기여로 간주해야 만연한 자유 박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이 센이 추구하는 접근법이다(*Sen*, 1999: 32). 본 연구는 『정의의 아이디어』의 정식 번역본에 따라 ‘커미트먼트’라고 사용한다.

리적 접근이 필수라고 여겼다.

오늘날 많이 오해받는 아담 스미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해관계로 대표되는 신중(prudence) 외에도 여러 인간 동기들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물론 이기적인 관점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A라는 경향 때문에 A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끌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즉 이기성 전체 자체가 상당히 자의적이고 임의적이라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지속가능한 이유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이익 추구라는 명제를 규범적으로 이끌어 낼 만한 합당한 이유는 없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RCT의 관점은 결국 타인과 분리를 전제한다. 그러나 센은 만약 타인을 도울 때 자기 이익 역시 증가한다면, 이타적인 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지 묻는다. 이에 대해 게리 베커(Gary Becker)는 자기 효용 내에서 타인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Gary, 1996). 이때 센은 공감(sympathy)과 커미트먼트를 구분 짓는다. 여기서 공감과 커미트먼트의 차이는 개인 복지(만족)의 개입 여부다. 예를 들어 타인의 불행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공감이지만, 나의 슬픔과 상관없이(설령 없어도) 타인의 불행 요소를 없애려고 도와주는 것은 커미트먼트다(IJ 213-4). 따라서 게리 베커의 RCT는 공감은 가능하지만, 커미트먼트는 없다. 커미트먼트는 오히려 자신의 복지를 감소시킬 수도 있기에 기존의 합리성 요건을 어긴 셈이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름도 모르는 타인을 돕고 생명을 구하는 숭고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다. 이것은 기존의 합리성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센은 기존의 RCT가 현실에 반영하기에는 너무 제한되고 특히 사람들의 도덕적인 행위 분석에 있어서는 너무 약하다고 지적한다(Sen, 1977; EMP 183).

이에 대안으로 오히려 도덕성을 포함하여 효용함수로 산출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이때 형식적인 문제는 야기되지 않는다. 이기성뿐만 아니라 이타성을 선호 변수로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들이 단순히 이기성 또는 이타성 이분법으로만 나뉘지 않는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둘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으며, 두 행위의 혼합은 집단 충성심의 중요한 특징으로도 볼 수 있다.¹²⁾ 무엇보다 이타성이 도덕 전체를 대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대안적 입장에서는 선호체계 안에 도덕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순위를 매길 수 있다면, 결국 그 도덕성(도덕적 신념)도 자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EMP 182-4). 도덕성을 포함한 나의 선호를 만족시키는 것은 결국 나의 복지에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형식적인 모형만 마련된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모형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 도덕의 역할은 무척 협소한 것일 수밖에 없다.

센은 도덕이 분리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계몽적이라고 말한다. 선택에 있어서 의지의 나약함(weakness of will) 문제들을 도덕이 통제할 수 있고,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Sen, 1977; EMP 185). 도덕적 신념을 나타내는 커미트먼트에 따라 이기적인 선호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신념을 어기고 선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모두 ‘도덕으로 인해’ 갈등하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숙고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도덕만의 특별한 역할이다. 이는 기존의 선호 개념에도 확장될 수 있다. 선호에 관한 선호(meta preference)나 다수 선호(multiple preference), 확장된 선호(extended preference) 같은 개념들은 선호체계에 단순히 도덕적 신념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선호를 숙고한 결과이다. 만약 커미트먼트가 선호들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된다면 결국 도덕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EMP 186-7). 따라서 센의 정의가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은 개인 선호들과 비교 가능한 공감 단계를 넘어서는 도덕적 신념과 책임으로서 커미트먼트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센의 합리적 선택은 범위에 있어서 상당히 관대한 개념이다. 이기주의나 이타주의 모두 배제하지 않는다(IJ 222).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이유들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각자의 합리성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서로 지속가능한 이유가 합당하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때는 또 다른 조건이 요구된다. 기존의 합리성 개념이 자기중심적이

12) 이 혼합의 예시로서 소위 ‘일본적 에토스(Japanese ethos)’가 있다. 이 사회문화는 일본의 가족관계부터 노동조합 같은 사회조직까지 여러 경제활동에서 발견된다(Sen, 1987: 40).

라면, 나아가 관계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타인의 관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요구된다면 더 엄격한 기준이 생긴다(*IJ* 225). 셴은 허용적인 합리성을 인정하는 대신에 더 엄격한 조건으로서 반성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말한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윤리적 역할과 개입을 요구하는 셴이다. 이는 계약론에서 바라보는 상호 합의로서 합리성 개념과 대조된다.

계약론적 접근은 결국 상호 이익에 기초하는 사회를 말하며, 이는 RCT의 관점과도 유사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협력은 본질적으로 호혜성을 담보한다.¹³⁾ 계약론의 정의는 셴의 구분에 따르면 커미트먼트가 아닌 공감만 존재하는 사회인 것이다. 셴은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는다. 같은 계약론 입장에서 토마스 스캔론(Thomas Scanlon)은 ‘타인이 거부할 수 없는 합당성’을 주장한다(Scanlon, 1998). 셴은 두 계약론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지적한다. 롤스가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한 상호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스캔론은 협상 참여자의 범위를 넓게 한다. 셴은 이 접근을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와 비슷하다고 평가한다(*IJ* 225-7).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라도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일리가 있는 선택이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인 셈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셴은 권력의 책무에 대해 이야기한다. 권력의 책무는 협력에서의 상호 의무와 다르다. 현실은 이미 서로 간 비대칭성(asymmetry of power)으로 한쪽은 이미 그 책임을 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지구상 다른 종들에 비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종들을 보호할 수 있고, 또 보호해야 한다. 어른도 아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 책임은 상호 간 협의가 아니라, 사실상 일방적으로 주어진 셈이다. 따라서 셴은 상호 이익만이 합당한 행위의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책무가 오히려 반성적 추론의 좋은 접근이 될 수 있고, 이때 비로소 이익이라는 동기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IJ* 233-5).

13) 다만 방식의 차이가 있다. RCT는 개인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공리주의의 총합효용방식을 생각한다. 이에 대해 롤스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상호 이익은 모두의 이익을 보장해야 효율적인데, 총합 방식은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TJ* 129-32). 이는 당연히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참가자들에 의해 거부될 것이 분명하다.

제 2 절 사회선택이론과 한계

사회선택이론은 센의 정의론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이다. 센이 천착하였던 사회선택이론의 방식은 그의 정의론 전반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사회정의 분야에서 사회선택이론의 적용 역시 그의 주요한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센의 정의론을 이해하기에 앞서 사회선택이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형적 제도주의 계열과 다른 계몽주의 이론가들은 사회적 실현과 관계되는 다양한 비교론적 접근법을 취했다. 센은 아담 스미스, 콩도르세, 벤담, 마르크스, 밀 그리고 애로우 등의 혁신적 사상가들이 다양한 비교론적 사유 형태를 지녔다고 말한다. 각자 세부적인 방식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이미 존재했거나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사회를 비교하면서 그들 세계의 명백한 부정의를 제거하는데 주된 관심이 있었다(IJ 8). 비교적 접근은 18세기 프랑스혁명 시기 콩도르세 및 여타 프랑스 수학자들에 의해 창시된 사회선택이론이라는 분석적(수학적) 학문의 중심이 된다. 이는 다양한 구성원 집단에서 개인적 판단을 집계하는 방법의 연구였다. 당시 지적 풍조는 유럽 계몽주의 특히 새로운 사회질서의 이성적 구축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았는데, 실제로 콩도르세는 프랑스 혁명의 지적 지도자이기도 했다(IJ 104).

초기 사회선택이론은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의 선호와 이익을 반영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틀을 개발하고자 하였지만 대부분 실패하였다. 대표적으로 ‘콩도르세의 역설(Condorcet's paradox)’을 그 예로 들 수 있다(IJ 104). 예를 들어 다수결로 A가 B를 이기고 B가 C를 이기더라도, 다수결로 C가 A를 이길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선택이론은 민주주의에서 투표이론 같은 특정분야를 제외하고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20세기 중반 애로우의 공헌에 의해 다시 주목받는다. 애로우는 명시적으로 검토된 공리를 통해 사회선택이론을 분석하고 구조적인 형태로 제시하면서 현대적인 사회선택이론의 틀을 마련하였다. 애로우는 합리성의 최소조건을 만족시켜서 사회의 적절한 순위와 선택이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그러나 ‘불가능성 정리(Arrow's impossibility theorem)’라는 명칭에도 드러나듯이 합리성의

가벼운 조건들마저 만족시키는 사회복지함수는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Arrow, 1951; 1963). 이는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열기로 가득한 시기에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였다(IJ 105).

그러나 센은 불가능성에서 가능성을 찾는다. 오히려 애로우의 연구가 아니었다면 제기되지 않았을 문제에 초점을 맞췄기에 불가능성은 사회선택이론의 종착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다. 센은 사회선택이론으로부터 사회정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면서 후술할 센의 패러독스를 제시한다. 사회선택이론에서 불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윤리적 접근을 요구해야 하고, 자유의 중요성과 공적 토론의 역할을 역설해야 한다.

1. 선택의 합리성 조건

사회선택이론이란 결국 여러 비교 대안들 중 어떤 선택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묻는 이론이다. 특히 사회선택이론은 개인의 합리성을 넘어 사회적 합리성¹⁴⁾을 전제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한 종류로 간주될 수 있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믿음이나 충동과 같은 광범위한 요인들로 인간의 행위를 해석하는 일종의 통속심리학(folk psychology)으로부터 도출되었다. 경제학에서는 통속심리학적 설명을 다듬어 기존의 욕구(desire)를 비교 속성을 지닌 선호(preference)로 바꾸었다. 선호를 이용하여 모든 인간 행위를 설명하게 된 것이다. 이에 모든 경제학 분석과 예측은 선호의 해석으로부터 시작된다 (EMP 99-100). 즉 합리적 선택은 선호의 합리성으로부터 도출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센의 사회선택이론의 윤리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개인의 합리성 즉, 선호의 합리성에 대한 분석이 선결되어야 한다. 선호의 합리성 조건에는 완전성(completeness), 이행성(transitivity), 연속성(continuity), 독립성 조건(independence condition) 등

14) 센은 용의자의 딜레마와 같은 게임이론을 통해 사회적 합리성 속에는 복잡한 도구적 윤리성이 담겨있다고 말한다. 우연적인 사회상황, 특히 행동, 결과, 가치판단과 관련하여 통용되는 대칭성(혹은 비대칭성) 성질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정식화, 즉 더 많은 매개변수를 가진 정식화를 요구한다(Sen, 1987: 121-4).

이 있다. 이들은 애로우가 말한 최소한의 합리성 조건들이기도 하다.

선호는 어느 것을 더 선호하는지 비교 표현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나는 A보다 B를 더 선호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¹⁵⁾ 만약 A와 B를 같은 정도로 선호한다면 ‘무차별관계’라고 할 수 있다. 선호 관계는 보통 효용함수 (utility function)로 나타낸다. 여기서 효용이란 선호의 순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A \succ B$ 의 선호 관계는 효용함수 형태로 $U(A) > U(B)$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전제 조건은 $A \succ B$ 와 동시에 $B \succ A$ 가 되면 안 된다. 이러한 선호 관계는 효용함수로 나타낼 수 없다. 이러한 조건을 **완전성**이라고 한다. 완전성이 두 개 중 선택 시 일관성을 요구하는 조건이라면, **이행성**은 세 개 중 선택 시 일관성을 요구하는 조건이다. $A \succ B$ 이고 $B \succ C$ 라면, $A \succ C$ 여야 하지 $C \succ A$ 가 되면 안 된다. 선호가 완전하고 이행적이면,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이라고 부른다. 두 조건을 충족하는 선호 관계를 ‘합리적 선호관계(rational preference relation)’라고 부른다(김영산 & 왕규호, 2009: 89-92).

이외 **연속성** 조건이 있다. 연속성 조건은 선호관계가 변화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변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은 효용함수 중 서수적 효용함수(ordinal utility function)와 연계된다. 서수적 효용 함수는 선호의 순서만 나타내기에 구체적인 차이 크기를 나타내는 기수적 효용함수(cardinal utility function)와 구별된다. 기수적 효용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서수적 효용은 서로 우열만 판단하면 되기에 측정이 용이하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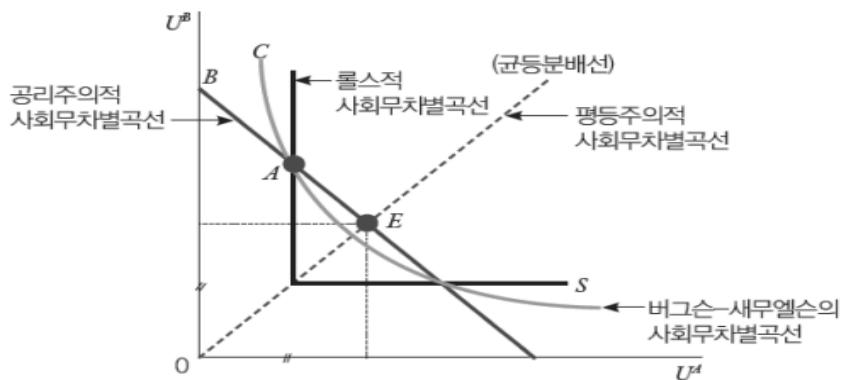
사회선택이론에 대한 연구도 애로우 이전에는 기수적 효용(선호)과 개인 간 효용비교에 의존했다면, 애로우는 서수적 효용에만 의존한다(김영산 & 왕규호, 2009: 911-2). 만약 개인의 선호가 완전하고 이행적이고 연속적이

15) 선호관계는 강도에 따라 약선호(weak preference), 강선호(strick preference), 무차별 관계(indifference)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약선호관계(\succeq)는 A가 B보다 못하지 않다는 뜻이고, 강선호관계(\succ)는 A가 B보다 확실하게 낫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는 약선호, 강선호의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선호로 통일한다.

16) 예를 들어, $U(x)$ 와 $V(x)=3U(x)$ 와 $W(x)=5U(x)-10$ 은 기수적으로는 서로 다른 함수이지만, 서수적으로는 동일한 함수이다. 그 이유는 모든 $x \succ y$ 라면, $U(x) \succ U(y)$, $V(x) \succ V(y)$, $W(x) \succ W(y)$ 로 동일하기 때문이다(김영산 & 왕규호, 2009: 98-100).

라면, 그 선호들은 연속적으로 실숫값을 갖는 서수적 효용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EMP 105). 이는 곧 ‘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후술할 사회정의 관점에서 롤스의 효율성이나 사회선택이론의 합리성 기준으로서 파레토 효율성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무차별곡선을 개괄적으로라도 다룰 필요가 있다. 무차별곡선이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집합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같은 그래프 상의 모든 점(X_n, Y_n)들은 동일한 효용, 즉 무차별하다고 본다. 효용함수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단조성(monotonicity)이 있다. 단조성은 (X, Y) 중 하나라도 늘면 효용이 증가한다는 가정으로 다다익선을 뜻한다.¹⁷⁾ 단조성의 조건아래서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한다. 효용이 무차별하기에 만약 X재가 커지면 Y재는 감소해야 하기 때문이다.¹⁸⁾ 무차별곡선과 관련하여 공리주의, 롤스, 평등주의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여러 가지 무차별곡선¹⁹⁾

17) 단조성을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MU)으로도 설명한다. x재의 한계 효용이란 y재의 소비를 고정시켜놓고, x재의 소비를 한 단위 더 늘릴 때 발생하는 효용의 증가분이다. 단조성은 한계효용이 0보다 크다고 가정하지만, 한계효용은 증가하거나 변하지 않거나 감소할 수 있다(Ibid, 102-6).

18) 이외에도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높은 효용을 나타내고, 무엇보다 무차별곡선끼리는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효용이 개선된(파레토 개선) 무차별곡선의 접점 A가 개선되지 않은 무차별곡선의 임의의 B점과 같은 효용을 뜻하는 모순을 나타내기 때문이다(Ibid, 107-9).

19) 프레젠테이션 ‘재정학 제4장 소득분배이론’의 3절 사회후생함수 그림 참고.

측정이 더 용이한 서수적 효용을 전제하더라도 선호란 일종의 내적 상태이기 때문에 행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쉽게 알 수 없다. 이에 경제학에서는 역으로 선택행위로부터 선호를 규정한다. 이를 ‘현시선호(revealed preference)’라고 부른다. 실제로 경제학에서는 선호라는 말보다는 선택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한다. A를 선택한 이유는 A를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과연 합리적인가? 앞선 내용들을 종합하면, 선호가 완전성, 이행성, 연속성 조건을 갖춰야 비로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선택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당장 미래의 불확실성과 그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요소들을 반영한 것이 바로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이다(EMP 110). 여기서 효용은 불확실성을 확률로 나타내는 기대효용으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사람의 기대는 주관적인 믿음 즉 주관적 확률에 따른다. 어느 축구팀이 승리할지와 같은 일상 속 기대는 주관적 믿음에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의 선택은 얼마나 성공할지에 대한 기대효용을 지니게 된다. 나의 선택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기대효용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따라서 RCT는 불확실한 현실 상황을 포함하면서 확장되는데, 이때 앞선 합리성 조건 외에 또 다른 조건이 요구된다. 이것이 **독립성** 조건이다. 독립성 조건은 선호 체계가 외부적인 다른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EMP 111-3). 예를 들어 A>B의 선호라면 중간에 C가 끼어들어도 이 선호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 즉 B>C>A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립성 조건이 지켜지는 것이 꽤나 어렵다.²⁰⁾

<http://contents.kocw.or.kr/KOCW/document/2014/deagucatholic/parkhoanjae1/04.pdf>.

20) 유명한 예시로 모리스 알레(Maurice Allais)가 만든 문제가 있다. 다음 두 문제 상황에서 한 개의 공을 집었을 때 그 공의 색깔에 따라 정해진 상금을 받는다. 각각 무엇을 선택해야 합리적인지 묻는 문제이다.

| 문제 상황 | 선택 | 붉은 공(1) | 하얀 공(89) | 푸른 공(10) |
|-------|----|---------|----------|----------|
| 1 | A | 백만원 | 백만원 | 백만원 |
| | B | 0 | 백만원 | 오백만원 |
| 2 | C | 백만원 | 0 | 백만원 |
| | D | 0 | 0 | 오백만원 |

2.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와 쉐의 해석

이상 살펴본 조건들은 애로우의 사회복지함수에서 최소한으로 전제하는 합리성 조건들이기도 하다. 개인의 합리성 조건에 비추어 사회적 선호도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복지함수 논쟁이 제기되었다. 사회복지함수를 통해 대안 x, y, z 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면 이것이 사회적 선호가 된다. 공리주의, 롤스, 내쉬 등 다양한 사회복지함수가 제시되었다. 여기서 사회의 의미는 개인과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적인 일반의지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개 개인의 단순 집합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사회적 선호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를 알아내는 방법은 순수절차적이다(이정전, 2004: 47-52). 이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규범적 틀, 원칙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롤스는 공동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리적 원칙을 고안하였다. 롤스의 정의의 원칙도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할 수 있다(TJ 133-140).²¹⁾ 선호가 저절로 드러나게 만드는 대표적인 절차 시스템은 시장 제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적이고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다수결 투표(과반수 투표제)가 널리 쓰인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의 절차적 공정성이다. 애로우는 이 절차적 공정 조건과 사회적 선호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했다(이정전, 2004: 53-7).

애로우의 사회복지함수는 각각의 선호프로필(preference profile)에 대해서 하나의 사회적 선호(R)를 대응시키는 함수이다.²²⁾ 이때 최소 3가지 이상

위 문제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상황1에서는 A를, 문제 상황2에서는 D를 골랐다. 그러나 이 선호들은 독립성 조건을 위배한 것이다. 그 이유는 문제 상황 1과 2의 유일한 차이는 '하얀 공의 상금크기'인데, 이것이 선호체계에 영향을 끼치면 안되기 때문이다. 본래 A를 선택했다면 당연히 C를 선택해야 일관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독립성 조건이 비합리적인지 아니면 인간의 보편적인 선호가 비합리적인지 의문을 제기한다(Allais & Hagen, 1979; EMP 120).

21) 롤스는 절차적 정의를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으로 비교하면서, 순수 절차적 정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제도가 설립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22) 애로우의 사회후생함수: $F(R_1, R_2, \dots, R_n) = R$, 선호프로필이란 사회의 구성원이 n 명일 때, 각 사람들의 선호를 나열한 것을 나타내며 (R_1, \dots, R_n) 으로 표시한다. R

대안과 2명 이상의 구성원들이 존재하는 선택 상황을 전제로 한다. 애로우의 조건은 5가지이다. 첫째, **집단적 합리성 조건**(collective rationality: C)²³⁾이다. 선호프로필에 대응되는 사회적 선호는 모두 완전하고 이행적인, 즉 합리적 선호여야 한다. 둘째, **정의역의 비제한성 조건**(unrestricted domain: U)이다. 완전성과 이행성을 충족하는 모든 개인 선호에 대해서 사회적 선호를 대응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a,b,c라는 3가지 대안이 주어졌을 때, 13^n 개의 모든 선호프로필에 대해 각각 사회적 선호를 대응시켜야 한다.²⁴⁾ 셋째, **파레토원칙 조건(P)**이다. 모든 이가 A를 B보다 선호한다면, A는 B보다 더 낫다. 파레토 최적은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효용이 감소하는 상태, 즉 다른 사람의 피해 없이는 누구도 추가 이득을 볼 수 없는 상태이다. 다시 말하면 A가 선택되지 않는다면 누군가의 선호를 좌절시키게 된다. 넷째, **비독재 조건**(non dictatorship: D)이다. 어떤 특정인의 선호만이 사회적 선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무관한 대안들로부터 독립성 조건**(independence of irrelevant alternatives: I)이다. A가 B보다 나은지 여부는 구성원들의 선호에만 의존해야 하며, 그 외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이 A와 B에 대한 선호(A>B)가 동일하다면, 제3의 대안인 C가 개입되더라도 C에 대한 선호 위치와 무관하게 A와 B의 사회적 선호(A>B)는 바뀌면 안 된다. 이상 5가지 조건들은 충분히 합리적이며 크게 무리없이 적용될만한 조건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사회복지함수는 한 개인의 선호가 결정하는 독재적 함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애로우의 결론이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합리성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독재자를 만드는 것이라는 모순

은 약선호를 나타낸다. 서수적 효용관계이기에 선호관계로 표시한다(김영산 & 왕규호, 2009: 918).

23) 미시경제학 저서에서는 이 조건의 이름이 ‘합리적인 사회적 선호(rational social preference)’로 기술되어 있다(Ibid, 919).

24) 13^n 인 이유는 완전성과 이행성을 충족하는 선호는 모두 13개이기 때문이다. 무차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경우 6가지, 두 개가 무차별한 경우 6가지, 모두가 무차별한 경우 1가지 총 13가지다. 13^n 은 선호프로필(R_1, \dots, R_n)에 각각 13가지가 대응되는 경우의 수이다(Ibid, 919).

적인 결론이 나온다. 증명을 간략히 살펴보면, A,B,C라는 3가지 대안에 대한 철수의 선호가 $A \succ B \succ C$, 영희의 선호가 $B \succ C \succ A$ 라 해보자. 이때 둘을 모두 만족하는(파레토 조건) 사회적 선호는 $B \succ C$ 이다. 그러나 A의 선호 문제가 남아있다. A와 C에 대해서는 서로의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행성 조건이 적용될 수 없다. 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에 이때 파레토 조건을 편의상 $A \succ C$ 라고 가정을 한다. 그 결과 사회적 선호는 철수의 선호로 결정되게 된다. 이때 철수는 독재자다. 만약 $A \prec C$ 라면 반대로 영희가 독재자가 된다. 이를 확장시켜 철수와 영희의 선호를 고정하지 않고 각각 13가지로 본다면 모든 경우의 수는 (13×13) 이 나온다. 이때도 아까와 같이 대립되는 선호(예를 들어 A와 C의 관계)에서 가정된 선호($A \succ C$)에 따르면 모든 경우의 수가 결국 한 사람의 선호를 따르게 된다.

센은 불가능성 정리를 비롯하여 사회선택이론의 해석을 목적에 따라 의사결정(선택)과 평가로 구분하였다(EMP 412). 의사결정과 평가는 서로 다른 조건들을 부과할 수 있다. 평가는 이행성과 같은 합리성의 조건들을 더 반영하는 반면, 의사결정은 다수결이나 기타 합의된 절차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합산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입력 항에는 개인적 특성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반영된다. 하나는 사태에 대한 개인 선호이고, 다른 하나는 사태에 대한 최선의 판단이다. 이를 다음 2x2표로 나타낸다.

Purposes

| <i>Inputs</i> | Evaluation | Decision making |
|---------------|-------------------------------------|---|
| Preferences | Type 1: Preference-based evaluation | Type 2: Preference-driven decision making |
| Judgments | Type 3: Judgment-based evaluation | Type 4: Judgment-driven decision making |

Figure 13.2.1. Interpretations of Social Choice Theories

[그림 2] 사회선택이론에 대한 2x2 해석표(EMP 414)

Type 1은 대표적으로 공리주의적 사회복지함수다.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는 개인 선호의 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개인의 규범적 판단과는 무관하기에 Type 3과 다르다. 이때 공리주의의 사회복지함수는 애로우의 5가지 조건 중 4가지(파레토 원칙, 비독재, 정의역의 비제한성, 집단적 합리성)를 만족한다. 독립성 조건은 위반하는데, 공리주의가 반영하는 A와 B의 총 효용 비교는 서수적 효용만으로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EMP 414). 다시 말해 공리주의는 애로우의 합리성과 달리 ‘개인 간 비교’를 허용한다.

센의 유형에 따라 불가능성 정리는 재해석될 수 있다. 우선 본래 의도대로 선호에 근거한 평가라면(Type 1) 불가능성 결과가 유지된다. 그러나 예를 들어 평가가 아닌 의사결정이라면(Type 2), 효용 외 비선호 데이터에 대한 비교가 허용될 수 있다. 이때 독립성 조건은 위반하는 것이지만, 불가능성 결과는 도출되지 않는다(Sen, 1970a: ch.7,8; EMP 419). 애로우의 조건은 어떤 선호도 부적절한 것으로 배제하지 않았고, 공적토론을 통한 순위 변경도 허용하지 않았다. 만약 애로우의 방식에 약간 수정이 가해진다면 불가능성 결과는 도출되지 않는다.

불가능성 정리에 대한 대부분의 대응 방식은 합리성 조건들을 제한하는 것이다. 먼저 정의역의 비제한성 조건은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선호들도 제한없이 포함시킬 수 있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이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으로 일정한 방향의 사회적 선호의 도출을 더 어렵게 만든다. 대안의 숫자를 2개로 줄이거나 정의역을 다중봉두선호(multi-peaked preference)²⁵⁾가 아닌 단일봉두선호(single-peaked preference)로 제한한다면, 이행성을 충족하여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김영산 & 왕규호, 2009: 929-31). 이는 극단적인 개인의 선호들을 배제하고 유사한 선호 형태를 도출해낸다. 정의역 조건을 완화시키는 연구는 다수결 투표의 합리성 연구로도 발전했다(주병기, 2017: 73-4).²⁶⁾ 비독재 조건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를 너

25) 다중봉두선호란 선호도 그래프에서 선호에 대한 봉우리(peak)가 여러 개임을 뜻한다. 이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관성이 없다.

26) 주병기는 선행연구들과 본인의 연구를 통해 다수결 투표가 다른 투표제에 비해 그래도 가장 합리적인 투표방식이라고 밝힌다. 다수결 투표가 이행성 조건을 위반한다면 다른 방식 역시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무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롤스의 차등의 원칙도 특정인(최소 수혜자)의 독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 독립성 조건이나 파레토 조건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다(EMP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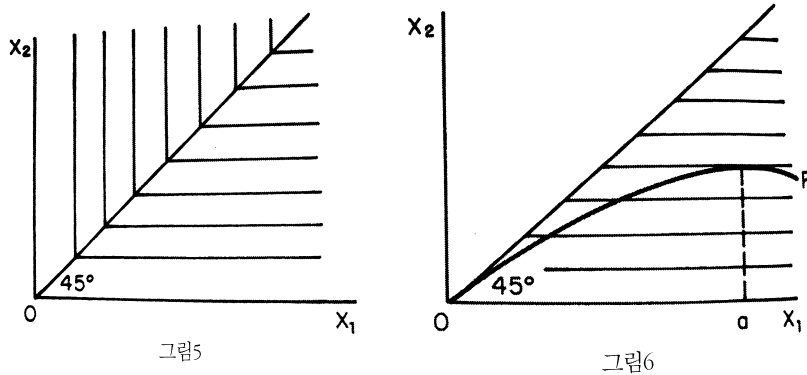
특히 독립성 조건은 서수적 효용에 기초하여 선호관계만 고려하고 개인 효용 간 비교는 허용하지 않기에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 대안을 선호하는 이유가 파레토 효율적(또는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떤 개선된 상태를 전제한 것이기에 이미 그 말 자체만으로도 무관한 대안들과 비교에 의한 것이다. 결국 개인 선호 외에 어떤 우열적 용어나 판단도 허용되지 않는 셈이다. 또한 무관한 대안으로부터 독립성 조건이 과연 실질적으로 적용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센은 다음과 같은 예시를 제시한다. 세 사람이 각각 X, Y에 대한 선호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때 선호 강도를 합산한 결과로서 사회적 선호로는 X가 Y보다 선호되었다. 또 다른 선택지인 Z가 등장하면서 선호 강도는 다소 바뀌었지만 이전과 선호관계는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선호로는 Y가 X보다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예가 충분히 가능하다(Sen, 1970a: ch.7). 다시 말하면 크게 관계없는 대안에 대한 선호 변화가 사회적으로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이정전, 2004: 67).

센은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대체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개인 간 비교’에 관한 정보가 요구된다(IJ 106). 애로우의 한계로 지적받는 개인 간 비교문제는 필연적으로 비교할 대상에 대한 해석과 논쟁을 요구한다. 복잡하고 귀찮은 논쟁은 윤리학의 분야로 넘겨버리고, 경제학은 오로지 서수적 효용에만 의존하게 되면서 굳이 개인 간 비교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안 그래도 효용에만 한정된 정보의 이용이 개인 간 비교 금지로 인하여 더욱더 제한되었다. 누구의 복지가 더 좋은지 알 필요가 없게 되었고, 불평등 같은 부정의의 비교조차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정당하지 판단하는 것은 경제학에서 할 일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바로 파레토 효율성이다.

3. 합리성 조건인 효율성에 대한 비판

효율성 자체가 사회정의 특히 분배정의와도 무척 밀접한 만큼 이는 상당히 논쟁적인 개념이다. 가장 대표적인 효율성이자 사회선택이론의 중요한 합리성 조건인 파레토 효율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레토 효율성은 복지경제학의 첫 번째 정리로서 경제학의 대표적인 합리성 조건이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와 후술할 센의 패러독스에서도 합리성 조건으로 파레토 효율성이 제시된다. 또한 파레토 효율성은 사회정의에서 중요한 분배 문제에 있어서 대안과 동시에 큰 한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롤스는 정의론에서 효율성을 이야기했다. 롤스의 정의는 얼핏 효용의 극대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오히려 롤스는 효율성과 양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TJ* 112-7).²⁷⁾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었을 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 차등의 원칙은 결국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증명한다.



[그림 3] 차등의 원칙의 무차별곡선(*TJ* 124)

위 그림에서 X_1 은 기본구조에서 최대수혜자이고, X_2 는 최소수혜자다.

27) 롤스는 파레토 최적에 대해서 ‘최적’이라는 용어는 더 광범위한 인상을 주기에 ‘효율’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고 말한다(*TJ* 113).

왼쪽 그래프는 차등의 원칙의 무차별곡선이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기여곡선(contribution curve)OP²⁸⁾가 최상의 무차별곡선과 접점을 이룰 때 차등의 원칙이 완전히 만족된다. 다른 이의 효용 감소 없이 어떤 누구도 효용 증가를 이룰 수 없는, 즉 파레토 효율 상태가 된다.²⁹⁾ 결국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득이 연쇄관계(chain connection)로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기에³⁰⁾ 차등의 원칙이 최초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선택될 것이라고 주장한다(TJ 129-33).³¹⁾

파레토 효율은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 상태와 연계된다. 예를 들어 현재 A의 효용을 증가시켰는데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면, 현재는 최상의 상태가 아니기에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 다시 말하면 현재는 누군가의 피해 없이 전체 효용이 증가할 수 있는, 즉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상태이다. ‘다른 점’들이 같다면, 파레토 개선은 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경제학자들은 다른 점들이 같다면 사람들이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최소한의 자선(minimal benevolence: MB) 원칙이다(EMP 135-6).

파레토 효율성은 외부성(externalities)이 없는 완전경쟁 시장³²⁾을 전제한다. 그러나 정작 완전경쟁 시장은 실현 불가능하다. 결국 ‘다른 점’들을 배

28) X1의 기대치 증가가 가져오는 X2의 기대치에 대한 기여도다. 45도보다 아래에 있는 것은 X1이 항상 우월한 처지이기 때문이다.

29) 다만 최소 수혜자의 한계 기여도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다. 기여곡선이 플러스의 영역 안에 있어야 모두가 이익을 보는 호혜적인 정의가 성립될 수 있다(TJ 156).

30) 기여곡선이 우상향하는 지점까지는 최소수혜자가 이득을 본다면 당연히 최대 수혜자도 이익을 볼 것이고, ‘그 사이’도 당연히 이득을 본다. 그 최대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차등의 원칙 정의다.

31) 롤스는 이를 공리주의의 무차별곡선과도 비교한다. 공리주의의 접점은 차등의 원칙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며, 이는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함에도 더 큰 불평등을 허용한다는 점을 지적한다(TJ 125-6).

32) 완전경쟁 시장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람들의 효용함수들 간 상호의존이 없고(독립성),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있고(이에 따라 외부성이 없고), 진입장벽이 전혀 없고, 모든 시장에 충분히 많은 공급자가 존재하여 가격에 배타적 영향을 줄 수 없어야 한다(EMP 138).

제하기 위해 완전경쟁이라는 이상을 의도적으로 설정한 셈이다. 여기서 다른 점들이란 개인의 자유나 권리, 정의 등을 들 수 있다. 자유나 정의를 배제하고서도 완전경쟁이라는 경제적 이상은 윤리적인 권위를 지니게 된다 (EMP 139-41). 게다가 완전경쟁의 실현 여부를 떠나서도 현실 속 파레토 개선은 결코 쉽지 않다. 파레토 개선이 있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가 파레토 비효율인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A와 B에게 그들이 생산한 총량을 남김없이 3:7로 분배하면 파레토 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이라면 어떻게 분배해야 개선이 될 것인가? 그러나 파레토 효율성은 어떤 분배가 옳은지를 말하지 못한다. 3:7의 분배는 이미 상대방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 나의 효용이 증가할 수 없는 평형상태이다. 심지어 1:9와 같은 극단적 배분도 5:5의 배분과 마찬가지로 파레토 효율이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현재의 극심한 불평등도 사실상 파레토 효율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파레토 효율성은 공정이나 형평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에 경제학자들은 현실 문제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분리시킬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경제학에서는 실증적인 방법으로 효율성을 높일 뿐이고, 윤리학에서는 마땅한 분배에 대한 윤리적, 규범적 이유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예시를 보더라도 효율성과 분배의 문제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게다가 현재의 분배 상태가 이미 효율성에 영향을 끼치고, 효율성 역시 현재의 분배 상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설령 경제학자들이 의도한 대로 오직 효율성 측면에서만 판단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필연적으로 자의적인 가치가 들어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윤리가 배제된 효율성은 불가능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예시가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현물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할지(In-kind)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 보통 파레토 효율의 입장에서는 다음의 논증을 통해 현금 지급을 주장한다 (EMP 2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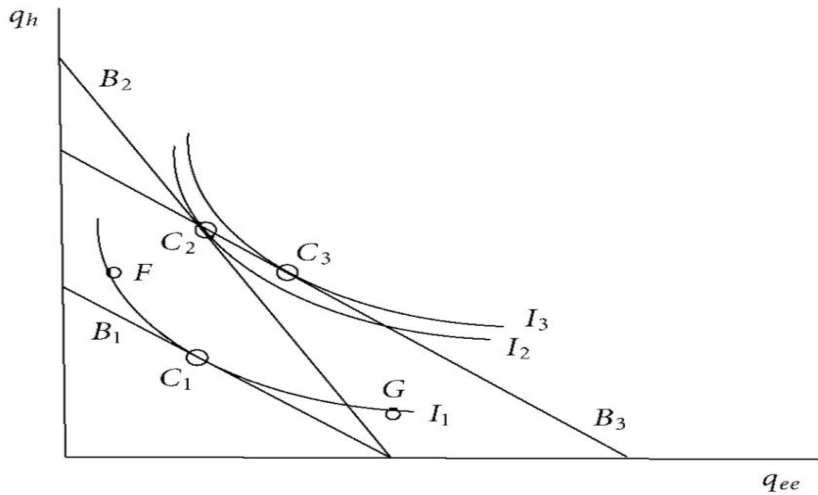


Figure 9.2.1. Cash versus In-Kind Benefits

[그림 4] 현금과 현물 비교 무차별곡선(EMP 270)

위 그림에서 Y축은 보건의료서비스(h)를, X축은 보건의료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것(everything else: ee)을 나타내며 각각 서로 다른 소비재를 뜻한다. I1, I2, I3는 A라는 사람의 무차별곡선이다. 무차별곡선 위의 점들은 서로 무차별하게 선호하며, 우상향할수록 더 많은 재화를 받기에 선호도가 높아진다(파레토 개선). 따라서 F점과 G점의 선호는 같다. 그리고 I3, I2, I1 (마찬가지로 C3, C2, C1) 순으로 선호된다. 직선 B1, B2, B3는 각각 예산을 나타내는 그래프다. 현재 A가 가진 예산은 B1으로 이에 따른 C1을 선택한다.

[가정1] 1) 정부는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한다. 2) 그럼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구하는 비용이 저렴해지기에 B2로 예산이 변경된다.(같은 ee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더라도 더 큰 의료서비스(h)를 구할 수 있게 된다.) 3) 그럼 선택은 C1에서 C2로 좋아진다.

[가정2] 1) 정부는 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이때 현금은 C2만큼 구매할 수 있는 현금이다. 2) 가정1과 달리 상대적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기에 예산은 B1에서 B3로 평행이동한다. 3) 같은 예산의 C2보다 C3를 선택하는 것이 더 좋다.

따라서 현금 지급이 직접 의료서비스 제공보다 파레토 효율적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사자의 복지가 증진했는지 여부는 논쟁거리다. 먼저 보건 의료서비스의 특수한 위급성 문제를 들 수 있다. 당장 긴급한 환자에게는 현금보다 먼저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금 지급이 절대적으로 옳다면 극단적으로 모든 직접 서비스를 중단해도 되는가? 정작 주어진 현금으로도 각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논쟁거리다. 셴이 비판하듯이 현금을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할 역량이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복잡한 의료서비스(또는 의료 보험) 선택 문제에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로서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이 구성원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³³⁾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하더라도 보건 관점에서 의료용도 현금지급과 백신이라는 의료서비스 중 무엇이 더 이득이 되는지는 자명하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하거나 더 아픈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다.

이에 대해 ‘온정적인 간섭주의(paternalistic)’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간섭주의 관점에서는 어떤 좋은 것을 개인에게 강제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옳다고 본다.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에게 술 담배를 끊으라고 처방하는 것조차 간섭주의로 여겨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정작 간섭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반론은 행위자의 복지 감소 때문이 아니라, 행위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고, 무엇보다도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현금지급의 효율성에 대한 옹호로서 자유라는 가치를 붙이는 것은 전혀 비경제적인 근거이다. 즉 자유라는 윤리적 고려없이 효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증인 셈이다.

심지어 현금 지급이라는 결론에 대해서 그래프 상에서 형식적인 비판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위 그래프 상 B3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가능

33) 디폴트 옵션이란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옵션이다. 여러 선택지 중 개인과 사회에 이득이 되는 선택이 있다면 선택 설계자가 그것을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는 것이 낫지다(Thaler & Sunstein, 2008: 22-33). 행동경제학의 선구자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라 불리는 현대인들의 합리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하면서 정책 속 넛지를 통해 개입할 것을 주장한다.

하게 하는 B4(B2의 확장)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B3에 평행하는 B5도 나오겠지만, 또 이에 대한 B6도 나올 수 있다. 일종의 순환 오류에 빠지는 셈이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반드시 현금 지급이 정당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는지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파레토 효율성은 한계가 있고 상당히 제한적이다. 선택 이후가 현 상황보다 파레토 개선인지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의 대안으로 '잠재적인 파레토 개선(potential pareto improvement)'이 등장한다(Hicks, 1939; Kaldor, 1939). X가 Y보다 더 효율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파레토 개선이 아니라, 단지 잠재적인 파레토 개선인지를 파악하면 된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A에게 4가, B에게 6이 주어졌는데, 공급이 증가하여 A에게 7이, B에게 5가 주어졌다. 사실 B에게는 전혀 개선이 아니지만, 전체 공급이 10에서 12로 커졌기에 앞으로 '재분배될 가능성'이 있다. A가 6, B가 6으로 재분배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실제 재분배되기 전 상태(A가 7, B가 5)를 잠재적인 파레토 개선이라 한다. 잠재적인 파레토 개선은 당장 승자(A)와 패자(B)로 나타나기에 '보상'이라는 개념을 쓴다. 그러나 여기서 보상은 실제 보상이 아니라, 지불할 의사(willingness to pay)이다(EMP 276-8).

잠재적 파레토 개선은 결국 전체 파이의 크기를 늘리는 것으로 귀결된다. 전체 크기만 커지면 분배는 언젠가 파레토 개선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시 경제학자는 전체 파이를 키우는 효율성의 측면만 고려하라고 요구한다. 또다시 논쟁적인 분배 문제는 나중의 문제로 정치가나 도덕이론가들의 몫인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파레토 개선 논리는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이론'의 핵심이 된다(Mishan, 1971; 1981; EMP 278). 비용-편익 분석에서는 여러 분배 정책들에 대해 승자에게는 얼마나 많이 지불할 것(A)인지 묻고, 패자에게는 반대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많은 보상(B)을 요구할 것인지 묻는다. 이때 최대한의 순편익(A-B)이 나는 정책이 최선이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어디까지나 지불할 의사라는 점이다. 정작 패자에 대한 실제 보상 여부는 편익 계산에 산입되지 않는다(EMP 278-9). 즉 실제 보상이 없어도 모든 정책들은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 얼마

든지 될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 번째로 잠재적 파레토 개선을 통한 순편익 계산이 하나의 정답만을 도출하지 않는다. 위의 예시에서 A가 7, B가 5인 상황을 잠재적 파레토 개선이라고 했는데, 역인 상황도 마찬가지로 잠재적 파레토 개선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승자와 패자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다. 원론적으로는 서로 입장이 바뀌어도 순편익은 변함없기에 유효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통 협상력의 우열로 인해 더 큰 이득을 보는 승자가 정해져 있고, 또 승자를 위한 정당화 논리로 많이 쓰인다. 두 번째로 비용-편익 분석에서 비교는 어디까지나 지불할 의사라는 점이다. 지불의사는 명백히 소유된 부에 의존한다(Baker, 1975; EMP 284). 만약 빈자가 승자가 되고 부자가 패자가 된다면 빈자의 지불할 의사는 부자가 보상받기에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부의 한계효용은 체감하기에 같은 금액이더라도 부자의 선호만족과 빈자의 선호만족은 다르다. 부자는 상대적으로 선호만족이 감소되고, 빈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만족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부자의 감소된 선호만족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부자가 승자가 된다면 빈자의 선호만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을 만큼 적은 보상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만이다. 부자들의 보상으로 빈자의 선호만족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정만으로는 결코 부자들에게 승자 독식을 주어야 한다는 논리적 정당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역으로 빈자들에게 압도적인 승자 배분을 하면 부자의 감소된 선호만족을 상쇄하고서도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편익이 일어날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만 고려한다면, 잠재적 파레토 개선을 전제하는 재분배가 요구되는 상황 이전에 단순 강제적인 부의 이전만으로도 더 큰 사회적 편익이 나올 수 있다. 이 밖에도 비용-편익 분석의 한계로는 검토되지 않은 선호들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주관적 가정에 근거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파레토 효율성과 마찬가지로 정의의 문제를 무시하기에 결국 관심을 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EMP 286-8).

결론적으로 파레토 효율성을 보완한 잠재적 파레토 개선에 기초한 비용-

편의 분석은 분석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위 예시들을 보았듯이 그 결론이 과연 옳은지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따라서 파레토 효율성은 무엇이 옳은지 전혀 답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는 여전히 파레토 효율성이 전제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도덕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완벽한 모델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사회선택이론의 한 분야인 ‘기제설계이론 (mechanism design)’이다. 잘 짜인 기제설계라면 개개인의 선호를 제한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고, 설령 개개인의 이타성이나 덕성이 없더라도 결과는 충분히 파레토 효율적일 것이라고 가정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애로우의 불가능성과 마찬가지로 난제에 부딪힌다(주병기, 2017: 74-6).³⁴⁾ 다시 말하면 아담 스미스가 의도했던 시장 문화와 달리, 개인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진실한 자기 선호를 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센티브 체제를 만들 수 없었다. 오히려 약간의 이타심이 시장실패를 줄이고 더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자유주의 삼중난제의 해결책은 ‘더 나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다(Bowles, 2016: 265). 결국 선호의 중립적 조건(무제한적 허용)을 제한하면서 바람직한 시민덕성이라는 윤리적 접근이 요구된다.

34) 기제설계이론의 3가지 조건 즉, 파레토 효율성, 참여합리성(individual rationality), 조작불가능성(strategy-proof)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선택함수는 없었다. 참여합리성이란 개인이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선호만족을 보장해야 자발적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조건이다. 조작불가능성은 진실한 선호를 자발적으로 표출할 충분한 유인이 있다는 조건이다. 보울스는 이를 ‘자유주의 삼중난제’라 부른다(Bowles, 2016: 261).

제 3 절 공리주의와 결과주의에 대한 해석

센의 주 연구 분야인 복지경제학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복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학문으로서 판단하는 기준으로 행복을 유일한 지표로 간주해왔다. 예전부터 복지경제학을 지배한 것은 특정한 윤리접근으로, 벤담으로부터 근대적 형태로 시작되어 경제사상가들 중 밀(John Stuart Mill), 프랜시스 에지워스(Francis Edgeworth), 헨리 시지윅(Henry Sidgwick),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등이 지지했던 바로 공리주의였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공리주의는 복지경제학의 공식이론으로서 오늘날에도 복지경제학 대부분의 형식만큼은 여전히 공리주의적이다(IJ 306-7). 벤담, 에지워스, 마셜, 피구와 같은 공리주의자는 개인 복지를 개인의 효용으로 파악하고, 효용은 행복과 동일시했다. 그리고 개인 복지(행복)의 총합에 기초하여 사회적 선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은 공리주의로 인하여 본래 복지경제학이 지니고 있는 유효성이 빈약해졌다고 비판한다(IJ 312-4).³⁵⁾ 이런 점에서 공리주의는 비판하지만, 정작 결과주의에 대해서는 긍정한다. 공리주의와 결과주의는 겹치는 요소가 많지만, 센의 정의는 이 둘을 확실하게 구분 짓는다.

1. 공리주의의 한계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이론으로 널리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간단한 형태의 이면으로 오래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주장(속

35) 그 영향을 받아 소위 신후생경제학은 ‘개인 간 비교’를 완전히 제거한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 오히려 공리주의는 복지경제학과 달리 본래 ‘개인 간 비교’를 전제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총합을 구하거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통된 개념과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경제학자들이 공리주의를 거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여겨지기도 한다(EMP 211). 예를 들어 복지경제학에서 전제하는, 즉 복지가 선호만족이라면 ‘개인 간 비교’는 선호만족도에 대한 비교가 된다. 그러나 선호만족의 비교는 필연적으로 선호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에 대한 해소가 요구될 수밖에 없고, 이는 기존의 복지경제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성)들을 내포하고 있다.³⁶⁾ 그 중 공통적으로 결과주의를 들 수 있다. 롤스 이후 현대 정치철학에서 공리주의는 많은 힘을 잃었지만, 여전히 결과주의적 중요성은 남아 있다. 윌 킴리카(Will Kymlicka) 역시 공리주의의 매력으로 결과주의를 들고 있다(Kymlicka, 2002: 36-8). 공리주의로 인하여 더 이상 신과 같은 형이상학적 실체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고, 실제로 식별할 수 있는 선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의 직관과도 일치한다. 결과로서 개인 복지(welfare) 즉 효용³⁷⁾이 선이라면, 이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킴리카는 공리주의가 각자의 효용에 평등한 비중을 두면서 효용을 극대화 하는 것이 독특한 특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효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리주의는 상당히 달라진다. 소위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슬로건은 효용을 쾌락으로 정의내린 고전적인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복지 쾌락주의(welfare hedonism) 외에 비쾌락주의적인 정신상태의 효용(non-hedonistic mental-state utility), 선호만족(preference satisfaction), 합리적 선호들(informed preferences)³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Kymlicka, 2002: 39-51).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 역시 그 기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크게 평등주의적 공리주의³⁹⁾와 목적론적 공리주의(teleological utilitarianism)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모든 개인의 선호에 평등한 비중을

36) 공리주의는 다음의 여러 주장들의 복잡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주의, 실제적 결과주의, 직접적 결과주의, 평가적 결과주의, 쾌락주의, 극대화 결과주의, 집산적 결과주의, 총계적 결과주의, 보편적 결과주의, 평등한 고려, 행위자 중립성 등이 있다(Sinnott-Armstrong, 2003: 2; 김상범, 2005: 1).

37) 여기서 킴리카는 복지와 효용 두 용어를 비슷한 의미로 뒤섞어서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고전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효용은 곧 개인복지가 된다. 이에 따른 여러 비판이 존재한다. 당장 효용은 복지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38) 해당 본문에서는 informed preferences를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선호’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다른 문헌에서는 ‘합리적’이라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고 본의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 선호’로 통일한다.

39) 이 용어는 본래 킴리카가 ‘이익에 대한 평등한 고려(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라고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김상범(2005)이 새로 명명한 용어 ‘평등주의적 공리주의’가 더 간결하고 의미도 어긋나지 않아서 차용한다.

부여하면 그 부산물로서 효용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후자는 효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 개인을 평등하게 계산할 뿐이다. 이때 공리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태(state of affairs)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 전체 효용인지 평균 효용인지에 따라 전체 공리주의와 평균 공리주의로 나뉜다. 이에 대해 롤스는 공리주의가 개인에 대한 평등한 고려가 아닌 효용 극대화만 고려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이론이라 부른다(TJ 62). 반면 김리카는 후자의 입장이 사람이 목적이 아니기에 본질적으로는 도덕원칙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결국 전자와 후자 두 입장이 동시에 전개되는 것은 공리주의의 특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순이다. 개인을 평등하게 고려하면서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Kymlicka, 2002: 71-8).⁴⁰⁾

공리주의를 전자의 평등주의적 공리주의로만 본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선호의 정당성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외재적 선호나 이기적 선호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제다. 이에 대해 헤어(R. M. Hare)는 평등한 고려를 위해 모든 선호들을 고려하되 사람들의 이익과 나의 이익을 동일시한다면 결국 공리주의적 원칙을 채택할 것이라 주장한다(Hare, 1984: 109-10; Kymlicka, 2002: 82). 그러나 이는 상당히 낙천적인 입장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나와 동일시하는 문제가 단순 가정으로만 처리되었기에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롤스가 지적했듯이 결국 공리주의란 이타주의자들의 도덕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설령 이타주의자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자원배분처럼 서로 상충되는 문제에서는 아무런 해결을 주지 못한다. 무엇보다 모든 선호를 허용한다면 결과주의로서 효용 극대화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한정된 자원배분 상황에서 모두가 극단적인 이기적 선호를 가진다면 이때 선호는 공리주의적으로도 바람직한 것인가?

결국 결과주의적 입장에서는 정의롭지 않은 선호를 제외시켜야 한다. 단지 선호의 결집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평등을 위해서 선호 형성 자체에 개입해야 한다. 비슷하게 공리주의를 본질적으로 의사결정절차

40) 김리카는 롤스를 비롯하여 많은 공리주의 비판자들이 두 입장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비판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한다.

(decision procedure)가 아니라, 옳음의 기준(standard of rightness)으로 봐야한다는 입장도 있다(Brink, 1986: 421-7; Railton, 1984: 140-6; Kymlicka, 2002: 67). 공리주의의 동등한 존중 관점은 계약론적 형태로도 가능하다. 이때 합리적 존재들의 평균 공리주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이때의 선호란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EMP 213). 김리카는 헤어의 의도처럼 평등한 고려를 실천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은 각자에게 공정한 몫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Kymlicka, 2002: 86). 그러나 정작 공리주의는 각자의 공정한 몫이나 권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목적론적 공리주의는 도덕원칙이 될 수 없다는 김리카의 비판과 달리, 김상범은 사태를 본질적인 가치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김리카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존중하는 방식을 혼동하였는데, 사태의 개선으로 충분히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김리카의 비판은 사태로 표현되는 결과주의 자체를 문제삼는 셈이다. 이에 김상범은 사태의 중요성을 통해 결과주의의 타당함과 보완을 제시하고 있다(김상범, 2005: 16).

2. 결과주의와 셴의 포괄적 결과

결과주의에서 옳음이란 결국 좋음의 극대화다. 오늘날 도덕이론에서도 결과의 좋음을 무시하고 옳음만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으로 여겨지기에 어느 정도 결과주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는 도덕이론에서 합리적 선택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다. 셴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실현되는 결과를 아주 중시하였다. 이에 김상범은 롤스의 비결과론적 의무론과 대비하여 셴의 정의를 결과론이라고 평한다. 그러면서 롤스의 공리주의 비판이 결과주의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김상범, 2005: 2-3).⁴¹⁾

롤스의 비판에 대해 김상범은 오히려 차등의 원칙을 수용하여 다양한 결

41) 보통 의무론자로 여겨지는 롤스도 제도와 행위들의 옳음 여부가 결과와 상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모든 윤리설은 옳음을 판단할 때 결과를 고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다(TJ 67-8). 다만 결과의 폭과 범위에 있어서 셴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과주의 특히 객관적인 결과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롤스가 공리주의에 제기하는 가장 큰 비판인 개인의 개별성 문제를 ‘다원주의적 축차적 결과주의(pluralistic lexical consequentialism)’로 해소할 수 있다(Scanlon, 1973: 1054; 김상범, 2005: 50).⁴²⁾ 여기서 다원주의는 현대사회의 다원화된 선을 반영하고, 축차적은 여러 사태 중 최선의 사태를 고려한다. 선 개념을 공리로 지칭하면서 롤스에 빗대어 순수 절차적 공리를 내세운다(김상범, 2005: 30-2). 선호 공리주의와 차이점은 모든 개인 선호가 아니라, 분배정의의 입장에서 기본가치(primary goods)를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때 최소수혜자에 대한 입장도 고려가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객관적 결과주의는 기존의 단일화된 선의 결과주의를 버리면서 도리어 다원화된 현대 관점들을 다루는 데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개념이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객관적 결과주의의 순수 절차적 공리라는 접근 방식은 대비된 의무론의 성질(규칙 공리주의)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엄격하게 말하면 객관적 결과주의는 결과라는 사태에 대한 고려가 적어 일반적인 결과주의라고 말하기 힘들다.

일반적인 결과주의는 실현된 결과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그로 인하여 여러 한계를 지적받는다. 우선 결과주의(쾌락주의)의 역설에 따라 자기 모순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사태를 평가하는 목적론적 공리주의에 비추어보면, 어떤 목적에 따라 한 행위가 반드시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과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후평가를 수반하기에 시간에 따른 불완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내가 이 시점에서 성공이라 평가한 행위가 훗날 실패의 단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과주의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이론이라는 비판도 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라면 개인에게 가해지는 제약들이 너무나 당연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온전성(personal integrity)’을 침해한다. 버나드 윌리엄스(Bernard Williams)에 의하면, 온전성이란 개인이 그 삶의 의미가

42) 스캔런에 의하면 수정된 공리주의 이론은 롤스의 기본가치와 같은 중립적 기준에 의해 측정된 복지 수준에 기초할 것이다. 이를 ‘다원주의적 축차적 결과주의’라고 부른다.

되고 개인 소신과 정체성을 구성하는 기본 계획(ground projects)에 헌신하는 것이다(Smart & Williams, 1991; 김상범, 2005: 34). 결과주의는 개인에게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비개인적 관점의 가치에 엄격히 비례해서 헌신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엄격한 비례성 요구(Strict Proportionality Requirement, 이하 **SPR**)’라 한다(김상범, 2005: 42-7).⁴³⁾

나아가 결과주의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은 ‘행위자의 상대적인 가치(agent relative value)’를 담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결과주의는 항상 행위자 중립성(agent neutrality)을 요구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다. 우리는 먼 곳의 이름 모를 고통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가족의 고통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과주의는 과도하게 허용적이다.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허용될 것이기 때문이다(Nagel, 1972; 1988; 김상범, 2005: 3). 반면 의무론은 위해의 원리와 같은 ‘행위자 중심 제약 (Agent Centered Restriction, 이하 **ACR**)’을 세운다. 이에 따르면 자유나 권리는 최소화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침해해서는 안 된다.⁴⁴⁾

43) 이에 대해 김상범은 모든 결과주의가 SPR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SPR로 인하여 개인의 온전성이 침해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SPR을 사전에 인지하고(롤스의 공지성 조건) 따라야 한다. 도덕적 요구와 도덕적 평가를 구분하는 시즈위크의 관점 즉, 행위 동기가 반드시 목적에 부합해서 나올 필요는 없다는 관점에서 결과주의가 공지성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온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 SPR을 사전에 인지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에 대해 헌신을 다한다면 결과주의적으로 최선의 사태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막연하게 자기 헌신이 결과적으로 더 좋을 것이라는 김상범의 주장은 엄밀하게 결과주의보단 도리어 온전성 이론에 가까워 보인다. 온전성 비판에 대한 더 타당한 반론은 오히려 결과주의의 SPR이 개인의 온전성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44) 그러나 한 명의 자유가 다른 이들의 자유와 상충되는 상황도 존재한다. 의무가 도리어 자유를 제한하는 ACR의 역설인 셈이다. 이에 대해 사무엘 셰플러(Samuel Scheffler)는 ACR의 한계를 ‘행위자 중심 특권(Agent Centered Prerogative, 이하 **ACP**)’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행위자는 항상 최선의 결과를 산출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는 얼마든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특권이 있기에 온전성 문제에도 벗어난다. 이러한 셰플러의 이론은 결과주의적 요소와 비결과주의적 요소를 통합한 종합이론(Hybrid moral theory)으로 불린다(Scheffler, 1994; 김상범, 2005: 75).

오늘날 결과주의는 비결과주의적 요소인 행위자 상대성을 포함시키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직관과 충돌한다고 비판하지만, 결과주의에 행위자 상대성을 포함시키면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일상의 도덕은 주체자로서 나의 위치와 역할이 별도로 요청되고 필연적으로 행위자 상대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인도교 딜레마를 떠올려 본다면 어떤 행위에 있어서 내가 주체로서 직접 관여하는지 여부는 실제 선택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는 의무론과 결과주의(합리성 이론)이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이다. 오히려 특수한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의무론을 비합리적으로 여길 수 있다. 셰플러에 의하면 의무론은 특별히 제한되는 행위(ACR)와 특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ACP)를 정한다(Scheffler, 1994; 김상범, 2005: 73-5). 이는 역으로 말하면 극대화하지 않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고, 극대화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도 있다. 결과를 고려해야 하는 합리성과 충돌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때 결과주의와 의무론의 형식적 화해가 가능한 방법이 바로 행위자 상대성을 대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 A가 사람 B, C를 대신해 죽는 경우를 선호하는 것과 내가 '직접' B, C대신 A를 죽이는 경우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비밀관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두 선호가 무차별하지 않고, 왜 차별을 두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분명 앞서 다룬 합리성 조건에 의하면 전혀 완전하거나 이행적이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센은 사태의 평가는 개인의 위치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말한다(*IJ* 191-2; 250). 따라서 셰플러의 의무론적 제약이 절대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심지어 비개인적이어야 한다고 여겨지는 공공정책 분야에서도 행위자 상대성은 고려될 필요가 있다(*EMP* 223-7).

센 역시 행위자 상대성을 결과주의에 도입하였다. 센은 노직이 제시하는 제약 관점인 권리자격체계의 비결과주의적인 한계를 지적한다. 센의 목표권리체계(goal rights system)는 권리를 목표에 산입하는 일종의 대안적 접근으로서 기본적으로 결과주의이지만 평가에서 권리문제를 고려한다(Sen, 1979; 1982b: 3). 목표권리체계는 다양한 도덕적 입장을 인정하고, 비권리

적 가치들 역시 고려할 수 있다. 목표로서 권리 외에 권리의 도구성 역시 수용하면서 무엇보다 완전 결과주의적일 필요가 없다(Sen, 1988: 199; 김상범, 2005: 58-9). 권리에 결과적 사태를 고려하면서 가치를 부여할 때 상호의존성이라는 불가피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Sen, 1987: 105-6).

게다가 센의 결과주의는 상당히 포괄적이다. 센은 기존의 결과주의를 최종적 결과(culmination outcomes)와 포괄적 결과(comprehensive outcomes)로 구분한다. 최종적 결과란 드러나 있는 단순한 결과인 반면, 포괄적 결과는 이에 덧붙여 관련된 행위 주체와 과정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IJ* 245). 센은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포괄적 결과를 주장하지만, '결과론(consequentialism)'이라는 용어 자체에는 부정적이다. 이는 마치 마르크스가 반대하기 위해 만든 '자본주의' 용어처럼 결과론의 반대자가 창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론이라는 말 자체가 접근 방식을 축소시켜 버려서 사태의 평가가 아니라, 사태 자체에만 매몰되게 하는 시그널링(signalling)의 문제가 초래된다고 본다(*IJ* 247-8). 포괄적 결과로서 사태에 대한 포괄적 이해는 당사자 행위에 대한 책임까지 고려하게 된다. 센은 추론이 결과에 민감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의 개념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공리주의나 복지주의는 이 점을 간과한다. 공리주의적 추론은 크게 3가지 공리인 결과론, 복지주의(welfarism), 총화주의(sumranking)가 혼합된 것이다(Sen, 1979; 1982a; *IJ* 249). 여기서 결과론은 협소한 의미의 최종적 결과이고, 복지주의는 복지 달성에만 주목하고 행위 주체성이나 자유 등은 고려하지 못한다. 또한 총화주의는 사태를 효용의 합산으로만 평가하는데, 이때 불평등과 같은 분배 문제는 고려되지 않기에 문제가 된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좁은 결과론적 시각으로 책임 문제를 결여하고 있다.⁴⁵⁾ 사회적 실현의 관점에서 사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모두가 종합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실현가능성 문제가 제기된다.

45) 이에 대해 센이 비판한 공리주의는 효용 기반의 단순 공리주의일뿐, 밀의 공리주의나 현대의 세련된 공리주의는 오히려 포괄된 결과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류지한, 2019: 119). 공리주의에서 효용이 반드시 선호만족일 필요는 없고, 현대 공리주의에서 효용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센은 모든 개인의 위치, 관점이 다르기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Sen, 1982b; *IJ* 250). 같은 상황에 있더라도 각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센은 행위자 상대성을 적극 반영한 포괄적 결과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제 4 절 복지주의에 대한 다양한 입장

센의 역량 자유는 개인의 복지와 연계된다. 센이 주목하는 빈곤이나 기아와 같은 부정의 사례들도 자유의 박탈로서 복지와 밀접하다. 그러나 개인의 역량이 반드시 개인의 복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복지 개념은 광범위하게 통용되지만, 선호라든지 자유, 평등 개념과 연계되면서 논쟁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해석을 통해 센이 추구하는 자유와 정의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1. 복지와 복지이론의 분류

복지의 개념은 복지경제학이 등장하면서 대두되었다(김나경, 2013: 55). 흔히 통용되는 복지 개념은 경제학의 RCT 관점을 따른다. 경제학과 달리 윤리학에서 복지를 다루는 방식은 좀 더 복잡하다. 센의 역량 역시 복지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복지에 대해 앨런 햄린(Alan Hamlin)은 개인 복지와 사회 복지로 나누고, 이것이 구현되는 복지 정치 형태를 분석하였다. 개인 복지는 보통 효용으로 규정되고, 효용은 개인의 선호가 만족될 때 극대화된다. 따라서 선호만족은 복지와 동일시되는데, 이것이 복지경제학의 선호만족이론(preference satisfaction theory)이다. 이때 복지는 선(good)의 구현이 될 수 있는지, 복지가 선이라면 선호만족이 바로 선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선호를 필요의 만족이나 자유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단순 선호만족이 선이라는 입장에 반대한다. 복지와 선의 동일시 없어도 복지주의와 선호만족이 결합하는 대안적 방식이 가능하다는 반간섭주의적(anti-paternalist)입장도 있다(Dworkin, 1972). 이러한 입장은 어떤 선이 요구되는지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론적(epistemic) 논의로부터 이어진다. 논쟁적인 선을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시도는 간섭주의라고 비판한다(Hamlin, 2009: 853-5).

그러나 분명 어떤 선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개인에 대한 특별한 이해 없이도 알 수 있다. 이때 자유는 선호만족이론과 별개의 것으로 여겨

질 수 있다. 자유의 이익이 그 사람에게 이익이라고 가정한다면, 완벽히 합리적인 선호(fully informed and considered preferences)는 그 이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즉 X가 A에게 좋다면, X가 필요, 자유, 정의, 평등 중 무엇이든 상관없이 A의 완벽히 합리적인 선호이다. 개인의 완벽히 합리적인 것이 무엇인지 쉽게 도출되지 않지만, 각자 개인 선의 여러 요소들 사이의 상충관계를 통해 알아낼 수 있다(Hamlin, 2009: 855-7).⁴⁶⁾

사회 복지는 복지를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바라본다. 우선 윤리적 가치 또는 선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것은 단지 선의 한 측면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고려된 사회 전체의 선을 의미한다. 다른 관점은 사회의 선은 오직 개인 복지에 의존한다는 관점이다. 센은 이것을 복지주의(welfarism)라고 하였다 (Sen, 1979: 463-89). 개인 복지에서 사회 복지 차원으로 이동은 여러 논쟁을 일으켰다. 대표적으로 개인의 복지 합이 적절한 사회적 선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것이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이다. 이는 개인 복지(선호)의 단순 합만으로는 최적이 되는 사회적 선호를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복지주의의 신뢰성은 결국 개인 복지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개인 복지로부터 도출되지 않는 사회 복지의 영역도 존재한다. 사회 복지는 개인 복지가 될 수 있지만, 개인 복지가 모두 사회복지화 되지는 않는다(Hamlin, 2009: 857). 이런 점에서 복지주의는 논쟁적이다.

각 입장에 따라 사회정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진다. 복지국가가 개인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 아니면 사회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46) 관련하여 3가지 대안이 제시된다. 우선 합리적 선호 이론(The informed preference theory)이다. 선호 자체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엄격함을 부여한다. 다른 대안이론으로 필요 기반 이론(A theory based of needs)이 제시된다. 필요는 객관적, 이론적으로 알 수 있다. 필요는 욕구의 하위 단계가 아니고, 필요와 선호는 범주적으로 서로 구별된다. 또 다른 대안 이론은 바로 자유 기반 이론(A theory based on freedom)이다. 복지와 자유(또는 자율성) 사이의 관계는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극단적으로 자유 기반 관점은 복지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 관점에서는 개인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중시하며, 자유는 복지의 수단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로 여겨진다.

지다. 전자의 예로 롤스가 제시될 수 있다. 롤스의 사회정의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롤스는 개인 복지를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찬성하지 않았다. 개인 복지는 어디까지나 개인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사회 복지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 서로의 복지를 비교, 교환하면서 재분배적, 간섭주의자적(interventionist)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 복지가 기준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을 국가가 보장하고, 집단주의가 되지 않으면서 간섭주의나 재분배적 입장을 추구할 수 있다(Hamlin, 2009: 858-9).⁴⁷⁾

앞선 논의들을 반영하여 복지에 관한 이론들은 형식적(formal)이거나 실질적(substantive) 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형식적 이론은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선호만족이론은 형식적인 복지이론이다. 반면 실질적 이론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 직접 말해준다. 쾌락주의(hedonism)가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이 두 방식은 양립될 수도 있다(EMP 232). 우선 경제학자들은 선호만족과 같은 형식적 복지이론에 끌린다. 왜냐하면 선을 둘러싼 논쟁의 부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간섭주의적인 가치를 주장한다. 간섭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도한 바와 달리 형식적 이론들도 윤리적 논쟁을 피할 수 없다. 이미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박을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란 무엇인지에 관한 윤리적 해석이 선결되어야 가능하다. 게다가 이미 복지란 물질적 자기 이익으로 간주하며 매우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물질적 자기 이익이 추구되어야 할 좋은 것으로 간주되면서 결국 실질적 이론이 결합

47) 복지 정치의 형태로 다음 3가지가 제시된다. 우선 단순 극대화(simple maximization)다. 단순극대화는 개인 복지의 극대화다. 이때 A의 복지를 최대화시켜도 B의 것이 감소하지 않아야 하는 상태, 즉 파레토 효율을 만족해야 한다. 이 상태는 더 이상의 개선(파레토 개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다른 형태로 최소제한 극대화(maximization with minimum constraints)다. 이는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개인 후생을 설정하게 된다. 이때 최소 제한의 부과는 빈곤에 대한 사회적 혐오를 형성할 수 있다. 또 다른 형태로 평등 제한 극대화(maximization with equality constraints)다. 이는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개인 간 불평등을 설정한다. 이때 평등 제한의 부과는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혐오를 형성할 수 있다.

된 셈이다.

선호만족이론에 대한 가장 큰 반론은 선호만족이 개인 복지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선호만족이란 당사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타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선호의 경우에는 아닐 수 있다. 만약 치료를 원하지 않는 선호를 가졌다면 이것의 만족이 진정 당사자에게 좋다고 할 수 있을까? 결국 경제학자들은 복지가 행복, 만족과 같은 심리상태라고 가정한다. 효용과 행복을 일치시키지만, 윤리학에서는 이미 쾌락공리주의에 대한 많은 반론이 있다. 대표적으로 노직의 경험기계(The experience machine)다(Nozick, 1974: 41). 이외에도 선호만족을 복지와 동일시하는 것은 여러 한계를 지닌다. 한 예로 선호 순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선호 역전(preference reversal)현상이 있다. 이는 합리성 조건의 완전성과 이행성을 위반하지만, 실제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개인 내에서 선호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선호만족이론은 이런 한계들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 선호 자체에 대해 정당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환경에 적응된 선호(adaptive preference)나 성향에 따라 쉽게 만족되는 선호를 추구할 수도 있다. 이때 복지의 관점에서 이 사람의 선호만족은 충분한가? 무엇보다도 잘못된 믿음에 근거한 선호나 비합리적인 선호들을 포함한 모든 선호가 동일한 가치로 인정될 수 있을까? 선호 개념은 경제적 개념이지만, 윤리적 규범적 의미도 지닌다. 결국 개인의 선호가 어떻게 형성되고 왜곡되는지, 그 선호는 정당한지 문제로 귀결된다. 윤리학에서는 필연적으로 선호의 형성에 대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선호만족에 대한 대안으로 선호에 관한 선호(meta preference), 다수 선호(multiple preference) 등이 제시된다. 관련하여 스캔런은 위급성을 말한다(Scanlon, 1975; EMP 242). 선호 중에서는 생명과 같이 더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조차도 간섭주의적이라고 비판될 수 있다. 이처럼 선호는 상당히 논쟁적 개념으로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하사니는 선호만족이론의 실제 선호(actual preference)에 대비되는 합리적 선호(extended preferences)를 주장했다. 실제 선호는 경제적 개념으로,

합리적 선호는 윤리적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합리적 선호에 비해 실제 선호는 결함적이라고 본다(Harsanyi, 1997: 129-45). 그러나 합리적 선호도 선호만족이론처럼 복지에 관한 형식적 이론이다. 대상이 아닌 선호의 합리성 조건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선 예시들처럼 합리적인 선호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복지 측정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EMP 248-9).

물론 그럼에도 합리적 선호는 실질적 이론과도 부합 가능성이 있다. 합리적 선호는 객관적인 필요나 자유의 측면에서 충분히 다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리카는 합리적 선호의 문제점으로 개인 간 비교가 불가능한 점을 들고 있다. 복수의 합리적 선호들이 충돌할 경우에는 일반 선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지침을 주지 못한다. 합리적 선호들 중에서도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한계의 대안으로 자원주의(resourcism)가 제시된다(Kymlicka, 2002: 49-51).

선호만족 이론과 다르게 복지에 관한 실질적 이론들은 무엇이 좋은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완전주의적(perfectionist) 이론이나 데렉 파핏(Derek Antony Parfit)의 객관적 리스트(objective list) 이론 등을 들 수 있다. 파핏은 자율성의 발휘, 이해의 증진, 우정 가족 등의 인간관계, 미적 향수 등을 객관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다(Parfit, 1984: 499). 롤스의 기본가치나 센의 역량 역시 실질적 이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EMP 251). 롤스는 권리와 자유, 권한과 기회,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존감 등을 사회적 기본가치로 제시했다(TJ 108).

기본가치는 최고로 가치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들의 선택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강, 정력, 지성, 상상력 등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자연적 가치로서 사회가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롤스의 정의는 복지나 분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개인의 복지는 각자의 선택과 노력에 의존하고, 그에 따라 책임질 것을 요구한다. 다만 사회는 개인들이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제도적인 정의를 갖추어야 하며, 기본가치들은 그것을 보장하고 평가하기 위한 도구인 셈이다. 센 역시 롤스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선택의 자

유에 사회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센은 더 폭넓은 관점에서 말한다. 센은 롤스의 기본가치와 대비하여 역량 개념을 주장한다. 센의 역량은 기본가치보다 본질적이고 더 포괄적인 자유개념이다. 그렇지만 센의 역량을 복지의 실질적 이론이라고 분류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센은 역량을 강조하였지만, 정작 역량의 구체화는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역량은 복지의 실질적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센은 결론적으로 역량과 복지를 구분시킨다. 또한 복지를 복지 자유와 복지 달성으로 구분한다. 센은 행위주체성(agency)과 복지(well-being) 그리고 자유와 달성을 구별하면서 4가지 범주로 나눈다. 각각 복지 달성, 복지 자유, 행위주체성 달성, 행위주체성 자유이다(Sen, 1992: 113; *IJ* 323-4). 예를 들어 복지 달성이 기아를 막기 위해 모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복지 자유는 기아를 막되 단식 금지를 강제할 수는 없다. 행위주체성의 달성과 자유 차이도 마찬가지다. 복지에 비해 행위주체성은 개인적 가치다. 둘은 구분되지만 상호 의존적이기도 하다(Sen, 1992: 108). 이점으로 볼 때 센의 복지는 분명 선호만족은 아니다. 오히려 행위주체성 자유와 대비되어 보다 객관적인 측면을 지닌다.

그렇다면 역량은 개인 복지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에 대해 센은 초점이 다르다고 말한다. 행위주체성 자유로서 역량은 복지 달성이거나 복지 자유 관점 모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나의 의지로 금식과 같은 비복지적 행위를 통해 나의 행위주체성을 우선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IJ* 326). 이는 복지에 대한 확장된 시각을 보여준다. 그렇다고 행위주체성 자유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행위주체성과 복지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할 뿐이다. 각자 공간의 다양성에 맞추어 목적 역시 다양할 수 있다.

2. 복지와 평등주의

센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수사법에 현혹되면 오히려 개인별 다양성을 주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결국 인간의 다양성에 따른 다양한 평

등주의 사이의 긴장을 간과하게 된다(Sen, 1992: 65). 각 정의이론이 무엇에 대한 평등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폭넓은 인간의 다양성과 연계된 자유개념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다(Sen, 1992: 33).

현대사회에서 복지는 복지권(welfare rights)⁴⁸⁾으로서 하나의 중요한 권리가 되었다. 최저생활의 보장이나 공공 의료혜택과 같은 필수적인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제2세대 권리⁴⁹⁾가 대두되면서 인권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었다. 복지권은 불안정한 글로벌 의무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혁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명시적이지만 암묵적으로 승인되기도 했다(*IJ* 428-31). 이러한 복지권의 발달은 평등주의를 더욱 환기시켰다.

평등주의에 대해 다음 두 질문이 핵심이다. 왜 평등을 추구하는가? 그리고 무엇의 평등인가? 무엇을 평등하게 하려면 무엇을 위해 평등을 원하는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EMP* 332-3). 이때 복지 개념은 평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의 평등인지를 구분하는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복지가 지닌 결과주의적인 속성 때문이다. 결과로서 개인 복지를 고려하지 않는 정의론은 롤스가 지적했듯이 비합리적이다(*TJ* 67-8). 대표적으로 리처드 아네슨(Richard Arneson)은 결과로서 복지 자체를 평등으로 보는지 아니면 복지에 대한 기회의 평등으로 보는지와 같은 기준으로 정의론들을 분류한다(Arneson, 1989: 77-93; 김동일, 2014: 225-66).⁵⁰⁾

왜 평등을 추구하는지에 대해 센은 대부분의 정의론들이 사실상 평등주의 이론이기에 굳이 평등을 옹호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고 본다(Sen, 1992: 34; *IJ* 327). 센은 흔히 발생하는 자유와 평등의 대립은 범주상의 오류이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유는 평등의 적용 분야이고, 평등

48) 여기서 welfare는 well-being과 유사하면서도 훨씬 더 좁고 구체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복지권은 특히 경제적 사회적인 곤궁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관련된다.

49) 카렐 바사크(Karel Vasak)의 3대 인권이론에 의하면, 1세대 권리는 언론의 자유, 공정한 재판권, 투표권 등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이고, 2세대 권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이다(Vasak, 1977).

50) 아네슨은 복지와 자원을 평등의 대상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기회와 결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토대로 2x2 표(복지의 평등, 자원의 평등, 복지 기회의 평등, 자원 기회의 평등)를 제시한다.

은 자유의 분배유형이다(Sen, 1992: 52). 드워킨과 킴리카 역시 모든 정치 철학 이론들은 평등주의적(egalitarian)이라고 여긴다(Dworkin, 1977: 179-83; Kymlicka, 2002: 24). 롤스는 물론이고 노직 역시 평등을 주장한다. 모든 개인의 효용에 동등한 가중치를 배정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원칙이기도 하다(Hare, 1981: 26; Harsanyi, 1982: 47). 이처럼 누구나 공정을 위해서는 평등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하지만, 평등의 대상에 따라 전개 양상이 달라진다. 불평등은 부정의하지만, 관점에 따라 어떤 불평등은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등을 좋음으로 추구하더라도 크게 3가지 입장이 구별된다. 첫 번째 입장은 평등은 그 자체로 좋다고 보는 입장이다(EMP 334-6). 이때 평등주의의 목적은 비자발적인 불리함(involuntary disadvantage)을 제거하는 것이다(Cohen, 1989: 916). 자신의 잘못 없이 다른 사람보다 안 좋은 상황에 처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Parfit, 1984: 26). 심지어 A라는 사람이 길가다가 우연히 떨어진 나뭇가지에 맞아 불구가 대더라도 이는 불공정하다(Temkin, 2003: 772). 이것은 A의 잘못이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A가 당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⁵¹⁾

두 번째 입장은 평등이 그 자체가 아니라, 수단적으로 좋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정작 분배 자체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파핏의 우선성주의(Prioritarianism)를 들 수 있다. 우선성주의는 평등주의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평등주의와 달리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차원에서 개인 복지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빈층에 복지를 제공하는 것에 더 큰 도덕적 비중을 둔다(EMP 337-8).⁵²⁾ 롤스 역시 최소수혜자의 이득을 최대로 한다

51) 그러나 윤리적 관점 없이 물질적인 불평등이 무조건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윤리적 관점에서 평등은 단순한 재화의 비교가 아니라, 평등하고 자유롭게 상호 간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의존한다(Darwill, 2004: 43).

52) 그렇지만 상대적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격차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최빈층의 처지가 약간이라도 좋아진다면 빈부격차가 더 벌어져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이다. 만약 최빈층이 정한 빈곤 기준을 넘는다면 더 이상 우선성이 작동하지 않아도 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는 원칙을 세운다. 그러나 우선성주의와 다르게 최소수혜자의 기준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이고, 최소수혜자의 이득 역시 극대화시켜야 한다. 다만 롤스 역시 이후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입장은 평등이 다른 도덕적 가치들과 내재적인 연관을 가진다는 입장이다. 이때의 관계는 수단적이면서도 내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EMP* 344-5).⁵³⁾

두 번째 질문이었던 평등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네슨의 기준을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뉜다. 먼저 복지 자체를 평등의 대상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는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결과적인 평등을 의미하기에 거의 옹호되지 못한다.⁵⁴⁾ 둘째는 드워킨이 주장하는 자원의 평등이다. 자원이란 개인의 목적을 추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다. 이때 자원이 평등하다는 의미는 모두의 자원이 동등하다는 뜻이 아니다. 개인의 선호는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가 서로의 자원에 대해 더 이상 요구하는 바가 없을 때, 즉 ‘시기심이 없는 상태(no-envy)’를 자원의 평등이라 본다. 단순화시켜서 모두가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교환을 통해 선망부재(envy freeness) 테스트를 통과한 ‘파레토 최적의 상태’는 공정하다. 이때 개인 간 비교는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EMP* 349).

그러나 선망부재 테스트만으로는 이후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을 경우, 즉 결과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가 어렵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신체나 지적인 능력도 자원으로 볼 것인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개인의 능력도 자원이라면 어떻게 평등을 이룰 것인가? 이때도 자유로운 교환이 평등을 보

53) X가 Y를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면, X는 가치적으로 Y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평등은 공정성, 자기 존중, 평등한 대우, 사회적 연대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 불평등은 타인에 예속되는 문제와 깊게 연결될 수 있다.

54) 반론도 존재한다. 존 로머(John Roemer)는 재능이(Able)와 약한이(Infirm)의 분배상황에서 합리적 조건들(파레토 조건, 토지 단조성(land monotonicity), 기술 단조성(technological monotonicity), 제한된 자기 소유(limited self ownership), 약한이의 보호(protection of infirm))을 만족하려면 둘의 복지를 평등하게 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한다(Roemer, 1988: 160-72; *EMP* 430-2). 이는 통념과 달리 복지의 평등처럼 강한 평등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적용은 사회선택 이론의 광범위한 실효성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장할 것인가? 이에 대해 선망부재 테스트를 배반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2가지 대안이 있다. 첫 번째 대안은 기여의 공정(contribution fair)으로 재능에 의한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다. 더 많이 기여했다면 그만큼 보상을 받는다. 다른 대안은 모든 이의 노동력에 대해 동등한 몫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소득이 평등하게 될 것이기에 소득의 공정(income fair)으로 불린다(EMP 351).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복지의 평등처럼 재능없는 사람에게 과도한 보상을 하게 되고, 재능있는 사람은 노예상태(the slavery of the talented)가 될 것이다(Dworkin, 1981: 322).

롤스의 기본가치도 자원이다. 이때 장애나 불리한 조건과 같은 특별한 필요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다. 롤스의 제도에서는 특별한 필요에 주목할 때 사람들마다 변환 기회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본가치에 의해서 분배할 뿐 자원과 역량 사이의 변환 다양성은 무시한다. 롤스의 정의는 분배 문제에서 기본가치에만 주목한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드워킨 역시 자원의 관점을 이용했지만, ‘가상적 보험체계(hypothetical insurance scheme)’를 통해 변환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했다. 능력이나 장애와 같은 내적 자원의 불평등에 대해 드워킨은 가설적 보험체계를 제시한다(Dworkin, 1981: 292-323). 만약 태어나기 전에 내적자원의 불평등을 해소하기위해 속고한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불운을 보상해줄 보험을 구매할 것이다. 그렇지만 야망이나 선호 등의 차이로 생기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개입해서는 안 된다.

드워킨은 롤스의 동기가 되었던 ‘욕망에 민감하고(ambition-sensitive)’ ‘여건의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endowment-insensitive)’는 목적을 더 정교화 시킨다. 욕망에 따른 선택 문제는 시기심 검증(envy test)을 통한 경매 체계로 해소한다. 그리고 롤스가 거부했던 선천적 불리함에 대한 보상은 보험체계로 해소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여건에 대한 완전한 평준화로서 완벽한 보상은 불가능하다. 가능한 최고의 보상을 시도한다면 이는 재능있는 사람의 노예화가 될 것이다. 드워킨은 욕망 민감성과 여건 평준화는 서로 상충되기에 두 기준을 모두 추구한다면 다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Dworkin, 1981: 327-34; Kymlicka, 2002: 135-48).⁵⁵⁾ 무엇보다도 드워

킨의 가상적 보험시장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선형적인 장치이자 시장기반의 접근이다. 시장에 대한 기대, 즉 서로 자유로운 교류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정보적 한계로 완전 시장이 어려울뿐더러 더 복잡하기에 양쪽을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다(IJ 300-1). 이런 점에서 쉐의 역량 평준화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노력을 포함한 모든 내적 자원들이 비자발적일 수 있다고 전제할 수도 있다. 노력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재능이고, 야망과 같은 성향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 비자발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결국 자원의 평등이 복지의 평등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원주의는 복지의 평등과 다르게 불평등이 주는 인센티브를 인정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EMP 354). 내적자원의 비자발성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의 선호와 능력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평등주의는 비자발적인 불리함을 제거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비자발적인 불리함이고, 어디서부터 개인의 책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매우 논쟁적이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로머는 개인의 행동과 사회 집단의 행동 분포를 비교하고, 이에 따른 보상적 교육(compensatory education)과 평등주의적 기획자(egalitarian planner)를 제안한다(Roemer, 1999: 69-70). 개인 수준에서 여건의 평준화는 어렵지만, 사회적 수준의 여건들(연령, 성별, 인종, 신체적 장애, SES)은 평준화가 가능하다. 유형 내 불평등은 허용하지만, 유형 간 불평등은 평준화시키고자 한다.⁵⁶⁾

55) 김리카는 드워킨이 그나마 현실에 차선의 대응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제안들이 불평등에 대한 사후적 대응이어서 기본소득과 같은 더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제안들을 요구한다. 롤스와 드워킨은 복지에 상당한 정당성을 제공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제안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보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고 비판받는다. 그 근본 이유는 여건 평준화보다는 자유주의 성향에 따라 선택의 민감성에 더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신 우파의 의도를 더욱 강화시켜 주었다. 예를 들어 빈곤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그럴만한 자격이 있게 된 것이다. 이에 자유적 평등주의가 오히려 평등에 대한 잘못된 에토스(ethos)를 조장한다고 보기도 한다(Wolff, 1998; Kymlicka, 2002: 163-70).

56) 김리카는 로머의 제안들이 롤스나 드워킨의 보수적인 정책들을 보완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외에도 반 파리스(Philippe Van Parijs)의 기본소득(basic income)

세 번째 입장은 복지를 위한 기회를 평등의 대상으로 본다. 이 입장에서는 비자발적으로 값비싼 선호를 가진 사람은 장애를 가진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된다(Arneson, 1990: 190). 두 부류는 모두 복지를 위한 기회를 제한받기에 평등하게 접근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때의 복지란 이상적인 합리적 선호만족이다. 객관적인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입장은 능력을 평등의 대상으로 본다. 이 입장에서는 복지라는 결과와 자원이라는 개인 책임 모두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복지와 자원 둘 사이에 있는 ‘어떤 것’에 주목한다(EMP 358-60). 이것은 ‘혜택을 위한 접근 통로(access to advantage)’라고도 할 수 있다(Cohen, 1990: 368). 이 접근 통로를 평등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센의 접근과 유사하다. 다시 말해 센의 정의론은 평등의 대상을 기존의 복지나 자원이 아니라 역량에 둔다.

대부분의 평등주의 이론은 비자발적인 불리함을 제거하기 위해 운(luck)적인 요소를 배제한다. 그러나 비자발적인 불리함과 자발적인 불리함을 구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선택의 민감성에 따른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적 평등주의는 가난한 자들의 배려받을 자격을 따져 경멸적 동정이나 온정주의적 조롱으로 연결될 수 있다(Kymlicka, 2002: 166-7). 모든 우연한 요소들을 선별하여 차단할 주장하는 운 상쇄 평등주의(luck egalitarianism)도 평등주의의 적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엘리자베스 앤더슨(Elizabeth Anderson)은 명백한 개인의 선택 책임도 무시할뿐더러 무엇보다도 평등에 대한 존중과 관심이라는 본질에서 실패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평등주의란 철저한 운적 요소 배제가 아니라, 억압을 종료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Anderson, 1999: 288-9; EMP 361-2). 이런 점에서 역량 접근은 자원접근의 맹점을 뛰어넘을 수 있다.

을 예시로 든다(Kymlicka, 2002: 148-54). 기본소득의 핵심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져야 하고,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소득이나 재산 조사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고, 증명할 필요가 없기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Parijs & Vanderborght, 2017: 21-70). 정작 기본소득은 신자유주의에서도 옹호되는데,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고, 최소 생계를 보장하여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내수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평등주의 이론들은 평등의 대상이 다르며, 이 주요 공간의 차이로 인해 서로 논쟁이 발생한다. 주요 공간의 평등 추구는 이외 다른 공간의 결핍을 용인한다. 불평등이란 주요 공간의 평등 주장으로부터 비롯된 정당화 및 결과다(Sen, 1992: 49). 인정할 수 있는 불평등의 공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립하게 된다.⁵⁷⁾ 센은 각 이론이 무엇의 평등인지 분석하면서 그 차이도 중요하지만 이론들 간 유사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IJ* 330-1). 그래야 비로소 실제 인간의 다양성과 연계된 실질적인 자유를 더 명확히 할 수 있다. 이때 센은 단순히 성취 상태가 아니라, 성취할 수 있는 자유에 따라 특정 공간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방식을 확인하고 개발하는 것을 적극 옹호한다(Sen, 1992: 24).⁵⁸⁾ 이것이 대표적으로 역량인 셈이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정작 역량의 평등만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것은 반대한다.

57) 이에 대해 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는 복합평등(complex equality)을 제시한다. 상이한 사회적 삶의 영역들(spheres)에서 분배적 기준은 모두 다를 수 있다. 만약 한 영역의 불평등이 다른 영역을 종속시키지 않는다면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처럼 사회적 지위나 정치적 권력까지 침범하는 경우는 잘못된 것이다(Walzer, 1983: ch. 12). 이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윤리적 중요성을 암시한다.

58) 센은 평등 개념에서도 집계차원의 고려사항 즉 효율성에 대한 요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등은 더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다(Sen, 1992: 29).

제 3 장 셴 정의론의 특징

제 1 절 선험적 제도주의 비판과 대안

셴은 계몽주의 시대 이래로 제안되어 온 정의에 대한 접근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 하나는 선험적 제도주의(transcendental institutionalism)고, 다른 하나는 실현 중심적 비교(realization-focused comparison)다. 선험적 제도주의는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로부터 존 로크(John Locke),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등에 의해 전개되어 온 계약론과 관련이 있다. 선험적 제도주의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먼저 정의와 부정의의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완벽한 정의를 도출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또한 주로 사회 제도에 초점을 두어 바로잡고자 할뿐 정작 실제 사회에는 직접적인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제도 중심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칸트나 롤스는 인간 행위도 다루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행위에 대한 가정이었다. 셴은 이 밖에도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 데이비드 고티에(David Gauthier),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도 공정한 제도를 다룬다는 점에서 선험적 제도주의자라고 평가한다. 그에 비해 실현 중심적 비교는 인간의 실제 행위에 주목한다. 또한 실현 중심적 비교는 여러 가지 혁신적인 비교 접근법을 취한다. 이는 스미스를 비롯하여 콩도르세, 벤담, 마르크스, 밀, 애로우 등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의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사회적 실현을 위해 명백한 부정의를 제거하고자 하였다(IJ 6-9).

1. 롤스 정의론에 대한 비판

셴의 정의는 후자인 실현 중심적 비교 접근 방식을 따른다. 그 전개과정에서 선험적 제도주의로서 롤스의 정의를 주로 비판한다. 롤스는 기존의 계약론을 고도로 추상화하여 일반화할 수 있는 정의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때 계약은 하나의 가상적 설명 장치(expository device)이다. 계약론에서 자연상태 개념은 역사적이 아닌, 선천적 예측 부재에 대한 도덕적 주장이다. 도덕적 평등을 위한 관념적 모형인 셈이다. 다만 자연상태에서 이미 존재하는 불확실성, 특히 선천적인 유리함은 불공정하기에 교정이 필요하다. 이것이 롤스의 입장과 홉스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계약론 입장이 구별되는 지점이다(Kymlicka, 2002: 112-7).⁵⁹⁾

원초적 입장에서 불공정을 교정하기 위해 만장일치 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차등의 원칙이다. 이는 사회적 기본가치에 대한 최대한 접근을 보장한다. 무지의 장막 속에서 합리적인 자기이익이라는 가정은 이타심(benevolence)과 동일한 목적을 성취한다(TJ 202-10).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합리성 원칙은 1:9 분배와 같은 도박을 하기보다는 최소 몫을 보장받는, 즉 안전을 추구하는 합리성이다. 합리적인 인간들의 만장일치는 롤스만의 특징이 아닌, 본래 도덕철학의 전통 속에 함축되어 온 것이다. 공정으로서 정의의 특징은 만장일치라는 조건이 생겨나게 될 환경을 규정하는 것에 있다. 롤스는 아담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도 마찬가지로 만장일치에 도달할 것이라고 본다(TJ 354-5). 그러나 무지의 장막에서 반드시 결정된다고 여겨지는 정의 원칙은 단지 직관적인 조작일 뿐이기에, 과연 롤스의 맥시민 전략(maximin strategy)이 실제로도 가장 합리적인지 비판이 제기된다(Kymlicka, 2002: 118-22).⁶⁰⁾

센은 선형적 제도주의로서 롤스의 계약론 정의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먼저 유일한 선형적 합의의 실현 가능성 문제다. 예를 들어 어떤 분배 상황에서 한 방식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59) 반면 홉스로부터 고티에까지 이어지는 계약론적 전통은 계약론의 동기가 정의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협상력의 차이가 반영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간주한다.

60) 실제 한 실험에서도 무지의 장막에서 롤스의 맥시민, 공리주의, 평균효용 극대화 모형을 제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평균효용 극대화 모형을 선택하였다는 결과가 있다(Frohlich & Oppenheimer, 1992). 그러나 킴리카는 롤스가 이미 차등원칙이 도출되게끔 사전적으로 조작한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무의미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롤스는 이미 유일한 만장일치 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센은 한 예시를 든다. A, B, C 라는 세 아이와 하나의 피리가 있는데, 이 피리가 누구에게 주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A는 피리를 유일하게 연주할 수 있는 아이고, B는 유일하게 장난감이 없는 가장 가난한 아이이고, C는 유일하게 피리를 만드는 데 참여한 아이이다.⁶¹⁾ 센은 세 주장 모두 자의적이지 않고, 각자 일리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평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완벽히 유일한 사회적 장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IJ* 10-7).

롤스의 정의 원칙 자체에 대한 정당성 비판도 제기된다. 선형적으로 합의될 것이라 여겨지는 차등의 원칙은 내부적인 한계를 가진다. 우선 기본가치에 기초하여 사회적 불평등은 보상하지만, 선천적 장애와 같은 자연적 불평등은 보상하지 않는다. 또한 선택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다. 불평등이 여건의 영향이 아닌 선택의 결과일 때, 오히려 차등의 원칙은 불공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차등의 원칙은 선택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선택으로 인한 불평등을 구분하지 못한다(Kymlicka, 2002: 127-34).

롤스는 모두의 이익이라는 전제 아래 최소수혜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불평등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미 불평등을 상정함으로써 자유에 따른 분배는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자칫 최소 수혜자에 대한 이득만 커진다면 더 큰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더 공정한 사회라면 인센티브가 요구되는 그 상황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제럴드 코헨(Gerald Allen Cohen)은 인센티브로 인한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롤스의 정의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한다(Cohen, 2008: *IJ* 70). 다시 말해 인센티브가 정의에 우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한계가 있는 정의 원칙이 유일한 합의가 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정작 센이 지적했듯이, 롤스도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수많은 형태의 공적 이성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인정하였다(Rawls, 1999: 225-6; *IJ* 13). 즉 다른 합의의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61) 각각의 주장을 순서대로 공리주의자, 평등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로 볼 수 있다. 한편 상대적인 쾌락의 크기가 가장 클 것이기에 B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오히려 공리주의 입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센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해석이 아니라, 어떤 분배정의라도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센이 지적한 또 다른 문제로는 선형적 합의의 불필요성이다. 선형적 합의가 있어야만 정의 판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순간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지만, 이것이 이미 선형적으로 설정된 완벽한 정의에 의존하기 때문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 원칙의 완벽한 축차적 서열을 인지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센은 불완전한 부분 순위(partial ordering)로도 충분히 판별가능하고, 명백한 부정의를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의로운 것이다. 게다가 선형적 제도주의로는 오늘날 세계적인 부정의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센은 『만민법』에서 이전처럼 엄격한 선형적 정의가 제시되지 못하고, 단지 협상에서 인도주의적 일반원칙에 집중하는 매우 빈약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IJ 29).

완벽한 선형적 정의라면 분명 다른 정의들을 비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완벽하기에 그에 못 미치는 다른 정의들은 엄연하게 부정의로 여겨질 수 있다. 여러 가지 부정의가 존재하는 지금 현실은 완벽에 못 미치는 정의들이 진행 중인 셈이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정의들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엄격한 잣대에 따라 완벽에 못 미치는 현실 정의들은 비교조차 의미 없는 한낱 결핍된 부정의로 귀결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센은 당장 굶어죽는 것보다는 A든 B든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말한다. 당장의 현실 정의들 중 불완전하게라도 비교하여 더 나은 것을 구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과연 비교만으로도 선택이 나아지는지, 즉 진보를 전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모든 대안들에 대해 완벽한 비교를 한다면 결국 절대적 정의에 다가가는 것 아닐까? 이 역시 센은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모든 것을 비교해야 기근이나 불평등이 부정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의론은 천편일률적인 전체주의적 형식이 아니라, 불완전성을 허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IJ 115-8). 불안정성의 역설은 완전하지 않기에 지속적으로 반성하며 더 나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센은 불완전성이 불완전한 개인적 평가 및 불일치 때문에 끊임없이 지

속된다고 말한다. 이때 단순히 불완전성의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부분 순위에 대해 지속적인 비교접근을 통한 공적토론을 강조한다.

센은 롤스가 선협적인 정의 외에 제도에 초점을 맞춘 점 역시 비판한다. 물론 롤스는 정의론이 사회 제도에 관한 정의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센은 사회마다 행동패턴이 다르다면, 롤스의 입헌단계에서 사회제도를 수립하는데 동일한 정의 원칙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한다(*IJ* 88). 정의를 사회로 구현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선협적으로는 만장일치였을지라도 필연적인 합의 불이행 문제 역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있다. 롤스는 물론 의도한 측면이 있지만, 제도와 개인행동의 연결을 너무 단정적으로 단순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센은 정의란 결국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IJ* 76-8). 센은 노직이나 고티에와 같은 제도원리주의(*Institutional fundamentalism*)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실제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IJ* 93-5). 제도가 선협적인 합의에 따라 선택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 제도에 위임할 수 있는가?

현대의 대규모 사회에서 제도는 서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장치이다.⁶²⁾ 그러나 문제는 계약(제도)의 완벽을 가정할수록 사회나 시장에 필수적인 신뢰나 호혜성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완벽한 계약 추구는 윤리적 역량 양성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고, 차라리 약간의 불완전한 계약이 신뢰를 키울 수도 있다. 관련하여 한 공공재 실험에서는 하나의 가정을 하였다. 실험 전에는 ‘무지의 베일 조건’을 바로 적용한 집단이 본격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공정성을 더 고려했을 것이라 예상했고, 참가자

62) 롤스는 제도가 배신자를 처벌하고 배신에 대한 동기를 낮춘다고 말한다. 또한 협력적인 사람들은 배신(무임승차)을 당할 가능성이 낮아지기에 더 안심할 수 있다. 한 공공재 게임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협조적인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무임승차자에 대한 혐오가 더 큰 경향을 보였다. 이를 ‘배신 기피(*betrayal aversion*)’라 부른다. 만약 처벌권 도입으로 이들을 처벌한다는 확신이 생긴다면 기꺼이 협력이 이루어진다(Bowles, 2016: 232-40).

들도 실제 자신들이 공정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겪지 않았던(무지의 베일 조건) 사람들보다 더 공정하게 대처했다. 인센티브 조건이나 롤스적 조건을 ‘유인부합 메커니즘 (incentive-compatible mechanism)’이라 부르는데, 이는 사회적 최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설계되었기에 오히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윤리적 요소를 경시하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완벽한 유인부합 메커니즘을 통해 이타주의적 동기라는 희소한 자원을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황이라도 윤리적 근육을 계속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Bowles, 2016: 209-10). 이러한 결과는 제도만으로는 실제 정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제도 자체를 정의의 발현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정의를 증진시킬 수단으로서 고려해야 한다(IJ 95).

물론 센은 롤스의 정의론 전부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롤스의 정의론은 당대 주류였던 공리주의를 제치고 공정이라는 혁신적인 정의관을 도입했다. 이때 이성의 합리성과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높이 세웠다.⁶³⁾ 또한 불평등에 대한 절차적 공정성을 중시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크게 환기시켰다(IJ 71-4). 무엇보다도 자유의 우선성을 강조하면서 그 위상을 끌어올렸다. 롤스는 정치적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을 포함하여 기본적 자유들의 목록을 제시하였다(TJ 106).⁶⁴⁾ 이 목록 안에서 단순히 형식적인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를 행사할 수단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EMP 304). 이 수단이란 곧 기본가치다. 기본가치는 모든 합리적 인간이 원하는 일종의 자원으로 간주된다(Sen, 1992: 148).

63) 센은 롤스를 비롯하여 아담 스미스나 하버마스 모두 서로 다른 논의를 제시했지만, 이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평가한다. 객관성이란 여러 정보에 근거한 다방면의 정밀조사를 견뎌 내는 능력이다. 센 역시 이성에 근거한 다각적인 정밀조사가 객관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사를 견뎌내는 원칙이 꼭 어떤 유일한 조합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IJ 50).

64) 정치적 자유(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와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행 및 절단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인신의 온전성),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다. 이와 같은 자유들은 정의의 1원칙에 의거해서 평등해야 한다.

센은 롤스와 마찬가지로 자유에 대한 중요성을 그 무엇보다 강조한다. 다만 역량과 기본가치를 대비시키면서 기본가치에 의존하는 것은 수단적이라고 비판한다. 어떤 특정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지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본가치를 적게 가져간다. 설령 같은 양의 기본가치를 분배받았더라도 사람마다 자원을 가지고 실제 자유로 전환하는 능력이 다르다. 만약 어떤 사람(집단)이 지속적으로 그런 경향을 가진다면 기본가치의 중립성은 사라진다. 센은 주로 장애인에 대한 예시를 든다. 왜 그런 차이가 보이는지 분석하고 조정하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이다.

물론 롤스는 기본가치가 가장 최고 우선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센은 이것이 단순히 역량과 기본가치의 차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설령 롤스의 정의에서 기본가치를 역량으로 교체한다 하더라도 롤스의 선형적 접근으로 인한 일반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자원 관점과 비교하여 역량 관점이 갖는 장점은 그 타당성과 본질적인 중요성이지, 선형적 정의처럼 모든 대안을 완벽히 비교한다거나 완벽한 순서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IJ* 295-6). 역량 관점은 수단보다 목적을 더 생각하고, 개인의 다양성과 차별 문제에 대해 더 적절히 민감하게 다룰 수 있기에 자원 관점보다 뛰어나다(Anderson, 1999: 109).

2. 대안으로서 공평한 관찰자

센은 롤스의 대안으로서 아담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를 제시한다. 공평한 관찰자식 추론은 선형적 해법이 아닌 상대적인 평가를 하고, 제도와 규칙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현에도 주목한다. 그리고 사회적 평가의 불완전성을 허용하면서 시급한 부정의를 제거하도록 하고, 공동체 밖 사람들의 시각을 고려하여 지역적 편협성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IJ* 80; 151-2). 롤스의 합의는 전적으로 해당 사회의 참여자에 대한 것이다. 이에 비해 공평한 관찰자는 제 3자의 시각에서 그 범위가 비참여자로도 확장된다. 당사자들만이 아닌 사고 범위의 확장을 통해 더 이성적인 객관성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회에서는 합의가능한 정의가 세계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일 수도 있다. 이처럼 세계주의적(cosmopolitan) 입장에서 폐쇄적인 합의는 실질적인 타당성을 갖기 힘들다.

정의란 본질적으로 보편적 범위를 지녀야 한다. 일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그 밖의 사람들은 배제해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합당하고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은 충분히 객관적이다. 사회정의 평가에서 보편성 조건은 정의의 객관성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IJ* 137). 센은 롤스의 원초적 합의는 닫힌 공평성(closed impartiality)인 반면, 공평한 관찰자는 열린 공평성(open impartiality)이라 지칭한다. 센은 롤스의 정의에서 합의 계약의 이전 즉 원초적인 상태에 주목하는데, 이때 참여자들의 개방성 정도를 따진다. 롤스의 접근은 외부인의 관점이 수용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지만, 스미스의 접근은 다른 사회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다(*IJ* 140). 무지의 베일은 해당 참여자들의 다양한 기득권과 편향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인류의 눈을 통한 정밀조사는 배제한다. 센은 정의 평가란 인류의 눈을 통한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IJ* 147). 이를 통해 우리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인과 동질감과 의무를 가질 수 있다. 우리의 합의 선택은 외부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평한 관찰자는 우리 자신의 지역주의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당사자인 롤스는 공평한 관찰자를 다르게 해석한다. 이때 롤스는 아담 스미스를 흠과 같은 고전적 공리주의 입장으로 여기면서, 공평한 관찰자는 단지 타인의 경험에 공감하면서 그에 따른 만족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한다. 흠에 따르면 동정심은 인간의 주요한 심리적 경향이다.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어떤 제도를 인정하고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특수한 쾌락으로서 동정심의 결과다. 공평한 관찰자적 정의는 정당성과 정의의 원칙들에 대한 어떠한 가정도 하지 않는다. 공평한 관찰자는 각자의 처지를 대입 및 고려해보게 되는데, 이를 동정적 동일화(sym pathetic identification)라 부른다. 그 결과 각각의 고통 또는 쾌락의 총체적인 합산으로 최종 평가를 하는 것이다(*TJ* 256-8).

동정을 통해 사회의 만족이 커진다면 완전한 이타주의라 할 수 있다. 롤스가 지적했듯이 결국 완전한 이타주의자들만 고전적 공리주의를 지지할 수

있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도출된다. 정작 완벽한 이타심은 여러 선의 요구가 충돌할 경우 아무런 지침을 주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모든 개인의 욕구를 관찰자의 욕구 체계로 융합시킴으로써 결국 몰개인성(impersonality)으로 나타나게 된다. 공리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몰개인성을 공평성으로 오인한다는 점이다. 반면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동정적이 아니라 상호무관심하다. 롤스는 인류애와 정의감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TJ 259-64). 결국 공평한 관찰자는 고전적 공리주의자와 다름 아니다.

이에 대해 센은 롤스의 해석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반박한다(IJ 153-5). 만약 롤스의 해석대로 아담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를 고전적 공리주의로서 완전한 이타주의자로만 해석한다면, 아담 스미스가 또 다른 저서에서 합리적인 인간상으로 언급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이기주의는 어떻게 해석해야할까? 서로 모순되는 이른바 ‘아담 스미스의 문제(Das Adam Smith Problem)’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상당부분 두 저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고, 실제 두 인간상은 다르지 않다(Coase, 1976: 543; 주병기, 2013: 148). 실제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본의는 완전한 이타주의도, 이기주의도 아닌 것이다. 그 근거로서 아담 스미스를 당시의 배경과 함께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담 스미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센이 자신의 정의론에서 줄곧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담 스미스의 시대는 신중(prudence)으로 대표되는 이해관계의 역할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앨버트 허시먼(Albert O. Hirschman)은 이 시기를 전통적인 두 범주인 정념(passions)과 이성 그리고 제 3의 범주인 이해관계(interests)의 대두로 해석한다. 당시 흠은 이성은 정념의 노예라고 주장하면서 나쁜 정념의 대항은 좋은 정념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종교적 도덕적 방식으로는 인간의 파괴적인 정념을 억제하는 데 점차 한계가 있다고 여겨졌고, 이때 등장한 개념이 무색무취한 용어로서 이해관계다. 이해관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예측이 가능하며, 야망, 권력과 같은 정념을 제어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돈을 버는 행위는 더 이상 대죄인 탐욕이 아니라, 결백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온화한 것이 되었다(Hirschman, 1977: 99-116). 이를 바탕으로 시장과 상업이 중심이 되는,

즉 자본주의가 도래하면 장밋빛 전망이 펼쳐질 것이라 보았다.⁶⁵⁾ 이러한 예측 관점에 대해 정작 아담 스미스는 비판하였고, 단순한 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방임에 의한 시장경제의 폐해 역시 우려하였다. 정념과 이해관계를 둘러싼 솔한 논쟁들은 『국부론』에 의해 종식되어 잊혀졌고, 이후 대중들의 정념은 곧 이해관계와 동치되어 왔다(Hirschman, 1977: 160-75).

정념들이 다양한 귀족상을 대변하는 것이었다면, 이해관계는 평민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의식주가 걱정없는 귀족들만이 자유롭게 무언가 욕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파국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욕망적인 정념과는 달리, 이해관계는 명백하고 누군가에 해를 끼치지 않는 순수한 것이었다. 이해관계를 통한 평민들의 이익은 생존과도 직결되기에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따라서 대중을 고려했던 아담 스미스에게 두 개념의 논쟁과 구분은 큰 의미가 없었다. 『국부론』은 시장 경쟁 속에서 평민들의 자유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일반 대중들에게 이기적인 추구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며 당연한 것이 되었다.

당시 아담 스미스는 왕과 귀족 중심의 일원화된 경제 구조의 폐해를 시장과 분업으로 탈피하고자 했다.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여러 가지 덕 중 이해관계의 덕으로서 신중을 강조한 것이지, 결코 정의나 이타심과 같은 덕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의 기술을 완곡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이기만 추구하는 자유방임주의자로만 보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주병기, 2013: 152-7).⁶⁶⁾ 센 역시 신중으로 대표되는 이기성은 아담

65) 상업의 확장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전망이 몽테스키외와 제임스 스투어트가 유사한 점을 들어 ‘몽테스키외-스튜어트 관점’이라고 지칭한다. 허시먼은 오늘날 관점에서 몽테스키외-스튜어트 관점을 비판하면서도 이 속에 담긴 정념과 이해관계의 관계를 엄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당시 관점에서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장 큰 비판 요소인 인간소외가 오히려 예측 가능했던 일차원적인 인격으로서 의도되었다는 점을 든다(Hirschman, 1977: 200-1). 이에 대해 센은 해당 허시먼 저서에 서문을 쓰면서 오늘날 결코 무해하지 않은 이해관계와 정념들의 깊은 연관성에 공감하면서 당시의 예상과 달리 의도되지 않은 부정의한 현실을 지적한다(Sen, 1996).

66) 주병기는 prudence를 care의 의미가 더 드러난 현려(賢慮)로, benevolence를 인애(仁愛)로 해석한다. 당시에는 국가가 나서서 인애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당

스미스가 주장한 인간의 수많은 동기들 중 하나에 불과하며 다양한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IJ* 211-2).

아담 스미스의 도덕철학 출발은 공감이다. 상상을 통하여 그 사람이 되어 비슷한 경험과 유사한 느낌을 겪는 것을 공감이라고 하였다(Smith, 1982: 4) 이때 공감은 반드시 동정심이나 측은지심만이 아니라,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상적인 도덕이 필요로 하는 덕은 신중, 정의, 이타심, 자율 등이다(Smith, 1982: 215). 아담 스미스의 도덕적인 정당성에 대한 심판은 공평한 관찰자이다. 공평한 관찰자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의 편파적인 입장, 특수한 상황 설정에 따른 편견,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관습적, 민족적 편협성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Smith, 1982: 228; 주병기, 2013: 150-7).

따라서 아담 스미스가 전제하는 인간관은 복합적이다. 당시 아담 스미스가 활동했던, 학문이 분과되기 전 시기에 대해서 정념과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얽힌 관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아담 스미스의 목적이 단순히 정념으로서 이타성도, 이해관계로서 이기성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담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는 이런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자기이익 추구는 이타심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롤스의 인간관은 이기적인 인간관인가? 이에 대해 롤스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롤스에게 합리적인 자기이익이란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추구하는 합리성 조건에 따르는 것이고, 자기 선호만족은 상대방을 고려하는 시기심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철저하게 무관심한 독립적인 합리성이다. 이렇게 제한해야만 소위 원칙이 연역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선형적 가정과 실상은 다르게 적용된다. 실제에서는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고, 이기적인 합리성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일상의 동기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TJ* 202-10). 실제 동기에서는 얼마든지

연하였으나, 아담 스미스는 점차 도시화 분업화 되는 사회에서 본래 친밀한 관계에 국한되는 인애가 잘 드러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때 사회의 존속을 위해 현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그렇다고 기존 사회가 지닌 인애의 역할과 책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놀랍도록 아담 스미스의 이해관계 옹호와 비슷하며, 롤스의 반박 논리를 동일하게 아담 스미스에게 적용할 수 있다. 아담 스미스의 정의 역시 전제와 실제 결과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센의 정의는 이와 같은 아담 스미스의 본의를 해석의 바탕으로 한다. 공평한 관찰자에 대해 롤스처럼 쾌락과 고통으로 환원하는 공리주의적인 해석을 단호히 거부했다. 공평한 관찰자는 단순히 공감만족의 양에 따라 판단하는 접근이 아니다. 공평한 관찰자는 결국 추론의 확장성을 말하는 것이기에, 공리주의든 계약론이든 상관없이 언제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이다(*IJ* 153-5).

센은 공평한 관찰자 관점에서 롤스 정의의 핵심인 원초적 입장을 크게 세 가지로 비판한다. 첫째, 원초적 입장에 참여하는 개인은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오로지 다른 참여자들과 합의를 통해 얻을 이익만을 생각한다. 심지어 상호무관심하기에 참가자들 외 사람들 역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합의가 해당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이를 '배타적 무시(exclusionary neglect)'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한 사회나 국가가 합의한 결과에 주변이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IJ* 158-63). 물론 롤스는 만민법을 통해 국제적인 정의접근을 보완하지만, 이 역시 달한 공평성으로 그룹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공평한 관찰자는 그 합의가 끼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한다.

둘째, 합의 내용으로 인하여 해당 그룹의 규모나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불일치로 인해 '포섭적 모순(inclusionary incoherence)' 문제가 생긴다(*IJ* 164-7). 대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는 그룹 감소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합의의 가정과 달리 시간에 따라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모순이다. 이때 앞선 합의는 지켜져야 할까? 아니면 새롭게 다시 논의되어야 할까? 물론 이미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후손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적하고 있다. 무지의 베일은 자신이 어느 시대에 있더라도 모든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TJ* 199-200).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몇 가지 ‘형식적 제한조건’(일반성, 보편성, 공지성, 서열 관계, 최종성)들을 제시한다. 당사자는 어느 시대 누구라도 결국 똑같은 원칙을 따르게 될 것이고, 합당하게 다른 세대에 대한 의무를 도출할 것이라고 롤스는 믿는다(*TJ* 184-95). 그럼에도 원초적 입장은 폐쇄적인 그룹에서 실행된다고 전제되기에 그룹 가소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이는 전 세계인을 하나의 거대한 계약과정에 포함시키더라도 마찬가지이다(*IJ* 165). 반면 공평한 관찰자는 참가자가 아닌 말 그대로 관찰자이기에 이러한 모순이 생기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원초적 합의 참가자들은 각자의 기득권이나 개인적 목표는 배제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안에서 공유되는 편견이나 선입견 등은 배제하지 못한다. 물론 롤스는 이미 정의의 기본구조가 폐쇄적이고 자족적이며 다른 사회들과 무관하다고 전제했다(Rawls, 1993: 93). 하지만 폐쇄적 성질은 ‘절차적 지역주의(procedural parochialism)’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IJ* 168-71). 앞서 지적했던 세계적 부정의에 대한 부족한 대처와 맞물리는 지점이기도 하다.

제 2 절 역량으로서의 자유

역량은 성취할 수 있는 기능들의 다양한 조합이다. 하나의 기능 조합이 공간에서 한 점이라면 역량은 이런 점들의 집합이다(Sen, 1992: 96). 기능들의 양이나 범위는 수치화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한 개인의 실제 성취를 기능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 역량집합(capability set)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벡터로 이루어진다. 기능 조합이 개인의 실현된 성취를 반영하는 한편, 역량 집합은 성취할 수 있는 자유를 나타낸다(Sen, 1999: 132-4). 따라서 역량은 여러 가지 기능조합을 성취할 실질적인 자유다.

센의 정의는 롤스와 마찬가지로 자유에 기반을 둔 정의다. 그 자유의 범주는 실질적이고 포괄적이다. 실질적인 자유에 기반을 둔 관점은 복지에 대한 공리주의 관점, 선택 과정과 행위 자유에 대한 자유지상주의 관점, 개인의 자유와 함께 실질적인 자유를 위한 자원에 대한 롤스의 관점 모두를 고려할 수 있다(Sen, 1999: 145-7). 자유란 수단과 결과 모두를 신경 써야 하지만, 어느 것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Sen, 1992: 160).

1. 자유의 다양한 관점과 역량

센은 자유가 기회와 과정 두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A는 집에 있기를 원해서 집에 머물러 있다. 반면 B는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집 밖으로 쫓겨났다. 분명 A는 자유를 보장받고, B는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C는 마찬가지로 집에 있기를 원하지만, 혹시라도 나간다면 누군가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C의 자유는 어떻게 판단되어야 할까? 결과적으로는 A와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을 하게 되었지만, C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없었다. 게다가 기회의 측면을 단순히 집에 머무는 기회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로 본다면 이 역시도 분명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기회를 편협하게 본다면 최종적 결과의 기회에 관해서만 정의된다. 그러나 포괄적 결과의 달성에 도달한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

면 기회를 더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IJ* 258-61).

역량접근은 경제학의 효용기반이나 롤스의 자원기반과 달리, 최종적 기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포괄적 기회에 초점을 맞춘다. 역량은 정보적 초점을 이용하는데, 정보의 이용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설계보다는 기회의 측면에서만 판단한다. 역량은 실제 한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도 초점을 맞춘다. 다시 말하면 복지의 실제 달성(achievement)을 넘어서 기회의 측면에 주목한다. 동일한 기능 달성에서도 실제 자유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유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달성된 기능이라는 편협한 관점이 아니라, 역량이라는 더 폭넓은 정보적 관점을 이용해야 한다(Sen, 1992: 100; *IJ* 266-9).

센의 역량 자유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존의 다양한 자유 관점들과 연계되면서 더 정교화 될 수 있다. 이에 대표적인 자유 관점들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센과 롤스의 대비는 이샤야 벌린(Isaiah Berlin)이 제시한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대비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소극적이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극적 자유는 강제와 부재를 강조하며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중시한다. 그 예로 자원주의를 들 수 있다. 반면 적극적이라는 의미는 나 자신의 주인으로서 나의 삶과 결정은 어떤 외부 세력에도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뜻이다. 자율적이면서 자기 결정적인 사람, 즉 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나의 목적과 생각으로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다(Berlin, 1979: 31; Kukathas, 2009: 685).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역량을 강조하며 대표적으로 센이나 누스바움의 입장을 들 수 있다.

벌린은 적극적 자유를 비판하면서 사회정책이 소극적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서 소극적 관념과 적극적 관념을 역사적으로 설명한다. 적극적 자유주의자(positive libertarians)들은 사람이 본성이나 억제되지 않는 열정, 하위 자아(one's lower self)에게 노예가 될 수 있기에 이를 극복해야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정한 본성(real nature)으로 완전하게 올라가려면 엄격하게 단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Berlin, 1979: 132; Kukathas, 2009: 686). 그러나 적극적 자유주의는 사

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을 정당화하여 용이하게 했다. 강제성은 더 높은 자아에 의한 것이고, 이러한 강제성은 자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자유에 의해 요구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자유의 적극성은 자칫 계급논리로 악용되거나 자유 그 자체를 억제시킬 수도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결국 적극적 자유는 행위자로 하여금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요구하는 경향을 지닌다. 이러한 관점에서 셴의 역량은 비슷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정작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의 개념 구분이 쉽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한 예로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소극적 자유)와 그 기회를 이용해야 하는 능력이나 자원(적극적 자유)의 대비를 들 수 있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을 때는 소극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Levin, 1984: 85). 즉 혼재할 수 있다. 별린도 적극적, 소극적 자유의 논리적인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였다(Kukathas, 2009: 686).

제럴드 맥칼럼(Gerald MacCallum)은 별린의 구분에 대해 반대하면서 자유란 언제나 하나이며 세 가지 구성 요소로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즉 자유란 X가 Y로부터 자유롭게 Z를 하는 것(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X는 주체, Y는 제약, 제한, 간섭, Z는 행동이나 성격이나 상황 등을 말한다(MacCallum, 1991: 102; Kukathas, 2009: 686).⁶⁷⁾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그는 소극적 자유는 대개 기회 개념이고, 적극적 자유는 항상 실천 개념이라고 제안한다. 소극적 자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는 홉스나 벤담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실천 개념이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자유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과 자기 삶을 효과적으로 실천해 놓은 정도까지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Taylor, 1979: 176-9; Kukathas, 2009: 687-8). 이런 관점에서 셴의 역량은 두 입장인 기회와 실

67) 맥칼럼의 삼차원 공식이 자유에 대한 모든 것을 담지는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 체계적이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또는 무엇이 제약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Gray, 1984: 326-7; Kukathas, 2009: 687).

천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역량의 핵심인 행위주체성 자유는 적극적 자유 관점의 자율성(autonomy) 또는 자기 결정(self-determination)과 연계된다. 자율성이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역량, 자율성이 가능할 조건, 인격체적 이상(ideal), 또는 도덕적 권능(authority)의 내용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Feinberg, 1986: 28). 자율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선호를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본능적 욕구의 충족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정한 이익(real interests)에 부합해야 한다(EMP 305-6).⁶⁸⁾

한편 역량은 소극적 자유 관점의 권리(a right)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다만 셴이 추구하는 권리체계는 결과적인 측면을 포괄한다. 자유는 권리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데, 자유가 명시되는 것은 대개 권리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롤스가 주장한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도 하나의 권리이다. 법적인 분석에 의하면 권리란 개인의 행동에 관한 허용과 제약의 복합적 다발이다(Hohfeld, 1923; EMP 307-8).⁶⁹⁾ 다시 말하면 권리는 자유의 보장과 동시에 제한을 주는 이중적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시로 경제학에서는 자유로서 권리가 중요하다. 특히 재산권(property rights)은 현대 경제 체제를 이끈 매우 핵심적인 개념이다(EMP 311). 그러나 재산권만 따지더라도 상속이라든지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 쟁점들이 즐비하다. 또한 권리 간 충돌 문제도 있다. 최근에는 복지권이 대두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소극적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는 권리로서 자유를 우선시하지만, 복지권은 부정한다. 나의 재산권은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복지란 강제가 아닌 그저 자선의 형태에서 제공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천부인권처럼 신성시되는 재산권 역시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재산이란 세습되기에 과거의 역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만약 부정의한 재산을

68) 여기서 진정한 이익을 위한 인격체적 이상은 루소의 일반의지(the general will)와 유사하다. 루소는 본능적 욕구에 따르는 것은 노예상태이고, 자기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법에 대한 복종은 자유라고 말했다(Rousseau, 1968 : 64).

69) 호펠트의 권리분석은 다음 네 가지의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시한다. 요구권(claim rights), 자유권(liberty rights) 혹은 특권(privileges), 권능(power), 면책권(immunity rights) 등이 있다.

세습받은 경우라면 결코 이 재산권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이 시비를 가릴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이다. 과연 나는 현재의 재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나아가 과연 현대의 빈부 격차는 정당한 결과인지 비판할 수 있다.

정작 자유지상주의는 경제학과 윤리학의 입장이 대조된다. 경제학적 자유지상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 사회주의를 비판할 때는 언제나 빠짐없이 개인의 자유나 동기부여와 같은 도덕적 가치를 말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다.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는 경제적 번영은 정부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된다고 주장한다(Hayek, 1976).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효율이 떨어진다.⁷⁰⁾ 이는 지극히 결과적인 입장에서 복지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그러나 윤리적 자유지상주의는 결과주의적 견해를 거부한다. 대표적으로 노직은 철저하게 비결과주의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오히려 센의 자유는 경제학적 자유지상주의에서 주장하는 자유의 도구적 가치를 인정하고 반영한다. 자유는 2가지 이유로 발전 과정에서 중심적이다. 하나가 자유 자체에 대한 평가적 이유고, 다른 하나가 효율성의 이유다. 센은 다양한 종류의 자유의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회적, 정치적 부자유가 경제적 부자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제적 부자유도 사회적 부자유를 초래할 수 있다. 몇몇 핵심적인 도구적 자유의 역할과 상호연관성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자유를 이해하고 확장할 수 있다(Sen, 1999: 42-51).⁷¹⁾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자유를 간섭과 제한의 여부로만 판단한다. 그러나 불간섭을 충분히 시행하더라도 어떤 특정 이들에게만 놓여진 장애물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우연성을 제거

70) 많은 경제학자들은 세금이나 배출권이 규제보다 파레토 우월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규제는 자유를 위협한다는 도덕적인 논리를 사용한다. 그러나 파레토효율은 자유를 극대화하지 못한다. 그 근거로서 본 연구의 2장 2절의 효율성 비판에 제시된 현물과 현금 지급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71) 센은 도구적 관점에서 다섯 가지 유형의 자유를 제시한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용이성, 사회적 기회, 투명성 보장, 안전보장이다. 이들은 서로 보완해야 하며,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로서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하는 것은 자유지상주의에서도 충분히 동의되고 지향될 수 있다. 이때 센의 주장처럼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자유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2. 역량 접근을 이용한 평가

유효한 자유로서 역량은 자유의 다면성(the plurality of aspect of freedom)을 인정하기에 평가에 있어서도 유용하다. 역량을 이용한 평가는 효용이나 행복 기반과 달리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인 간 비교를 하려면 공통 단위로 측정해야 하는데, 역량적 관점은 다양한 개인 관심사를 반영하기에 다원적이고 이질적이라는 문제가 있다(Sen, 1999: 135). 평가할 가치 대상이 여러 개 있을 때 서로 경중을 다루는 방식이 크게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상충관계를 검토하여 모든 것을 비교하는 ‘완전한 순서(balanced complete ordering)’이고, 두 번째는 이와 대조되어 ‘불완전한 부분 순위’를 인정한다. 물론 어떤 것이 더 낫다는 우위적 판단은 한다. 두 방식은 모두 일관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는 반대의 우위 판단도 인정하면서 일관되지 않는 판단을 허용한다. 이는 일종의 모순이지만 딜레마 상황에서 위치에 따른 상대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과잉완비적 판단’이다(Sen, 1987: 96). 현실에서는 다양한 선이 존재하고 불분명한 상충관계 때문에 첫 번째 방식인 완전한 순서를 보장할 수 없다. 다원적 평가에서는 대부분 불완전성과 과잉완비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불확실한 행위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대안들의 비교평가에서 체계적인 비일관성이 존재함을 보여주었다(Sen, 1987: 100-1).

대표적으로 복지경제학은 한정된 기준만을 활용한다. 자유를 도구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오로지 개인 복지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다양한 가치에 대한 평가를 단순화한 형태로 만든다. 그러나 가치평가 대상의 서술적 동질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더라도 항상 완전하고 일관된 순서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 예측의 타당성을 위해서도 기존의 합리성에 대한

통념과 조건들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때 사회선택이론에서 발전된 분석들은 규범적인 접근을 포함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다원적 평가를 다루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시로 ‘불평등 평가’를 들 수 있다. 역량 접근은 기존의 불평등 평가 기준을 전환시킨다. 불평등을 판단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첫 번째는 윤리학과 정치철학에서 주로 논의되는 ‘정의기반 불평등 평가(justice-based inequality evaluation)’다. 롤스의 공정으로서 정의가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소득 벡터를 사회복지함수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복지기반 불평등평가(welfare-based inequality evaluation)’라 부른다(Sen, 1992: 173). 이하에서는 후자에 대한 불평등 평가를 다룬다.

불평등을 평가하는 문제는 평등을 평가하는 공간을 선택하는 문제다(Sen, 1992: 161). 이때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소극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적극적인 판단이란 개인의 성취수준에 비추어 불평등을 판단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판단이란 어떤 설정된 수준에 얼마나 부족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보통 복지경제학에서는 후자인 부족분 평등기준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앤서니 앳킨슨(Anthony Barnes Atkinson)의 불평등평가는 사회복지의 부족분과 똑같은 소득을 찾는다. 앳킨슨은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대등소득(equivalent income)의 부족분으로 측정한다. 다시 말해 모두가 100% 동일한 분배가 된다면 전체 총소득이 줄어들어도 그 이전의 불평등 상황과 효용이 비슷하다고 가정한다. 균등하게 분배된 대등소득의 수준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앳킨슨의 불평등지수’다(Atkinson, 1970; Sen, 1992: 174-5). 부족분 평등은 모든 사람을 임의적으로 평균화하여 누구나 똑같은 가능성을 갖는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롤스의 최소극대화 역시 부족분 평등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두가 각자 다양한 전환가능성을 지닌다. 센은 성과평등의 입장에서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판단한다(Sen, 1992: 163-70).

역량 접근의 관점에서 센은 소극적인 앳킨슨의 불평등 지수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첫째, 한계효용의 문제다.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소

득이 커질수록 효용이 줄어들 것을 가정한다. 그러나 한계효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제 소득과 같다. 소득 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한 총 효용 손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계효용함수의 오목성에 따라서도 예측과 반대되는 상황이 도출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불평등 수준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불평등지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 둘째, 소득을 복지로 전환시키는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별로 전환율에 차이를 보인다면 평등한 소득 분배는 전체적인 효용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센은 앳킨슨의 불평등지수가 개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제한된 관점에서는 조건부로 유용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소득 외에도 자유와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불평등과 분배 왜곡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Sen, 1992: 177-82).

일반적인 불평등 분석은 개인보다는 집단별 차이에 중점을 둔다. 이때 대부분 경제적 계급으로 분류한다. 계급기반 분류방식은 누가 무엇을 생산하는지 소유 문제를 따지는데, 현대 경제에서는 모두가 상호의존적이라 정확히 선을 긋는 것이 쉽지 않다. 센은 소유기반 불평등이 모두 제거되더라도 다양성에 비롯한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Sen, 1992: 210). 센이 말하는 마르크스 비판의 핵심은 인간을 특정 관점으로만 보는 오류 즉, 인간을 노동자로만 이해하고 다른 측면을 모두 무시한다는 오류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사실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였고, 이것이 각자 능력껏 일하고 원하는 만큼 분배받자는 구호로 이어졌다. 센은 소득기반뿐만 아니라, 마르크스가 인정했듯 경제적 계급도 뛰어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 분배와 소유 측면의 불평등은 그 자체만으로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일 뿐이다(Sen, 1992: 215-6). 오늘날에는 사회문화적으로 가정 내 불평등이나 성 불평등 역시 대두되고 있다. 역량 접근은 소득과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개인과 사회의 다양성 측면에서 더 폭넓게 불평등을 다룰 수 있다.

역량 접근의 다원적 평가를 위해서는 '통약가능성(commensurability)'이 요구된다. 통약가능성이란 서로 다른 대상이 공통의 단위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역량적인 평가는 다원적이고 광범위해 통약불가능

하기에 부분 순위 및 제한된 합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모든 가치들을 하나의 동질적인 단위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뿐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개인들은 더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복수의 정체성에 자유를 맞추기 위해서는 완벽한 순위나 합의가 아니라, 부분적이고 다원적인 역량 접근이 필요하다(*IJ* 279).

평가에서 오직 하나의 기준만 요구하는 것은 추론의 범위를 심하게 제한한다. 그렇다고 모두 다 동등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문제해결이 아니다. 여러 기능들 중에서 어떻게 가중치를 설정할 것인지 더 심도 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반성적 평가는 단순 집계가 아니라,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추론을 요구한다. 가중치들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폭넓은 공적 토론의 범위는 명백하고 시급한 부정의를 가려낼 수 있다. 모든 가능한 비교가 아니라, 제한되더라도 올바른 비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IJ* 275).

실제 역량 평가에 있어서 역량의 구체화가 요구될 수 있다. 누스바움은 센과 공동 연구를 토대로 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에 있어서 역량을 핵심 가치로 두었다. 그러나 센과 다른 측면이 있다. 우선 누스바움의 역량은 본래 센의 복지경제학적인 측면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철학에 더 근거를 두고 있다. 게다가 누스바움은 센과 달리 역량의 구체적 목록을 작성했다(*EMP* 253-6). 이에 역량 목록의 상대적 경중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센은 이런 측면에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누스바움은 상당한 비교문화적인 조사를 거쳤고, 좋은 삶의 기준이 비록 다를지라도 이 목록은 핵심적이고 헌법적인 보장의 도덕적 기초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Nussbaum, 2000: 74).

다음은 누스바움이 제시한 10가지 핵심적인 역량들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생명, 신체적 건강, 신체적 통합성, 감각, 상상력과 사고, 정서, 실천 이성, 인간과 연합, 다른 생물과 관계, 유희, 환경 통제력 등이다(Nussbaum, 2001: 416-8).

| |
|--|
| <p>1. 생명(Life): 정상적 기간의 인간적 삶이 종료될 때까지 생존.</p> <p>2. 신체적 건강(Bodily Health): 좋은 건강과 생식, 적절한 영양 섭취와 적절한 거처.</p> <p>3. 신체적 통합성(Bodily Integrity):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자유로운 이동, 성적 폭행과 가정 내 폭력을 포함하여 폭력적 공격으로부터 안전, 생식과 성적 만족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p> <p>4. 감각, 상상력과 사고(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감각을 사용하여 상상하고,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추리(적절한 교육에 의해 길러지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예술적 발언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호.</p> <p>5. 정서(Emotions): 외부 사물과 사람들에 대한 애착, 자신을 사랑하고 염려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슬픔.</p> <p>6 실천 이성(Practical Reason): 선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고, 자기 삶을 계획하는 비판적 숙고(양심과 종교적 계율을 따를 자유의 보호).</p> <p>7. 인간과 연합(Affili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에 대한 인정,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 b 자기 존중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사회적 기초(인종, 성별, 성적 취향, 민족적 배경, 사회적 계급, 종교,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의 보장). <p>8. 다른 생물과 관계(Other Species): 동물, 식물, 그리고 자연세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계 맺기.</p> <p>9. 유희(Play): 웃을 수 있고, 오락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p> <p>10. 환경 통제력(Control over One's Environ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정치적(Political): 정치적 선택에 효과적으로 참여,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가지고, 발언과 연합의 자유의 보장. b 물질적(Material):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누구나 대등한 재산권, 인간으로서 노동할 수 있고, 다른 노동자들과 상호 인정을 통해 의미있는 관계 형성. |
|--|

[표 1] 누스바움의 핵심 역량(EMP 254)

반면 센은 역량의 구체화에 반대한다. 역량접근이란 구체적인 방식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보들을 활용하여 개인 자유를 기회의 측면에서 판단하는 일반적인 접근일 뿐이다. 이 데이터들의 활용법은 서로 다를 수 있다(IJ 263).

결과적으로 셴의 역량은 정보적 초점에 맞추어 실질적인 기회를 다루는 유효한 자유이고, 개인 간 비교를 통한 다원적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평가에 역량을 활용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역량을 동일하게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IJ 263). 셴은 역량을 강조하지만, 가장 우선하여 역량의 평등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에는 반대한다. 역량이란 실질적 자유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기회적 요소를 평가할 수 있는 반면, 공정한 절차와 같은 과정적 요소는 다루지 못한다(IJ 332). 평등이란 단지 하나의 관점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평등을 평가하는 데 자유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분배적 판단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분배적 이득은 없더라도 역량의 평등이 나아지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역량은 복지 자유와 행위주체성 자유 구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기에 단일한 하나의 관점만 제시하기 어렵다. 역량의 중요한 역할과 동시에 역량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IJ 334-5).

제 3 절 자유의 다면성 : 셴의 자유주의 패러독스

셴의 정의에서 핵심인 역량으로서의 자유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자유의 다면성(the plurality of aspect of freedom)에 대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이것이 어떻게 셴의 사회선택이론과 또 그 외의 사회선택이론(게임형식)들과 연결되는지, 그리고 셴이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은 셴만이 전개할 수 있는 독특한 방식이자 정의관이기도 하다.

1. 자유의 다면성 관점에서 셴의 패러독스 해석

역량은 개인이 선택한 것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자유다. 자유가 결과를 달성할 힘이라면, 그 선택에 대해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평가할 기회가 있었는지 여부가 자유의 본질적 이해에 중요한 부분이다(*IJ* 338). 이때 선택에 대한 선호가 유효한지에 대해서 기존과 다른 방식이 논의될 수 있다. 대개 직접 통제가 자유의 유효한 조건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자급자족하는 사회가 아니기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나 전문 기구들에 통제를 어느 정도 위임할 수 있다. 나의 건강 복지는 의사의 간접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통제로서 자유가 제한되어도 나의 유효한 자유는 보장될 수 있다. 도구적인 관점에서 통제 수단에만 집중하는 것은 자유를 평가하는데 적절하지 않다(Sen, 1992: 121-4; *IJ* 339).

이러한 관점은 자유의 의존 문제로 연계된다. 셴은 개인적인 자유(liberty)와 일반적인 자유(freedom)를 구분한다. 개인적 자유를 우선시하는 롤스의 정의는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것을 자유로 여긴다.⁷²⁾ 이에 비

72) 셴은 롤스의 기본가치가 개인적 자유를 높이는데 역량보다 더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IJ* 336-7). 그러면서 개인적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자유를 사회적인 기여인 커미트먼트로 간주해야 한다(Sen, 1999: 32).

해 공화주의적 관점에서는 간섭이 실제로 행해지지 않아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권력의 존재만으로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여긴다. 셴의 역량 자유 역시 의존적인 것을 허용하기에 오히려 예속될 수 있다(Pettit, 2001: 6). 예를 들어 장애인이 타인의 호의나 도움에 의존하여 무언가 성취하는 경우는 공화주의적 관점에서 완전한 자유가 아니다(IJ 343).⁷³⁾

그러나 역량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효과적인 자유로 인정할 수 있다. 누군가의 복지에 도움을 줄 때 직접 통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넛지와 같은 간접적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다. 현실 속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간섭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아니라, 간섭의 실제 행사 여부다. 간접 통제조차 자유의 간섭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자유의 다면성을 인정하고 자유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허용된다. 셴은 공화주의적 관점이 틀린 것이 아니라, 자유의 서로 다른 측면이기에 같이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유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역량을 비롯하여 의존의 결핍, 간섭의 결핍 등 여러 관점을 수용해야 한다(IJ 346-7). 정의를 구성하는 요소의 복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곧 자유(freedom)의 다면성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은 자유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때 결과에 대한 해석은 최종적 결과가 아닌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결과다. 사회선택이론에서 자유의 결과지향적인 관점은 특히 주목받는다. 사회선택이론에서 논의되었던 개인적 자유와 일반적 자유에 관한 많은 문제들은 이런 틀에서 이루어졌다. 사회선택이론에서 자유의 역할을 적극 반영한 학자가 바로 셴이다. 셴은 자유의 결과지향적 틀 속에 개인적 자유와 일반적 자유의 문제를 정리했다. 그 결과 ‘셴의 자유주의 패러독스(Sen's paradox 또는 The liberal paradox)’가 탄생했다. 셴의 자유주의 패러독스는 개인적 자유의 최소한의 요구와 파레토 효율의 형식적 요구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IJ 348-9). 파레토 효율성은 아

73) 이에 대해 셴이 공화주의적 관점을 잘못 이해했다는 지적이 있다. 공화주의적 관점에서는 법적 근거에 따른 간섭이나 도움은 충분히 가능하다. 페티트는 셴의 역량이 공화주의적인 방향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Pettit, 2001). 물론 셴이 비판한 지점은 호의에 의존적인 역량은 실질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페티트의 견해다.

담 스미스의 이론을 뒤늦게 형식화시킨 것으로 사익과 공익을 연결짓는 사회선택이론에서 불문율과 같은 공식이다. 그러나 센의 패러독스는 파레토 효율성이 당연히 개인 자유를 보존할 것이라는 전제를 무너뜨렸다.

사회선택이론에서는 개인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 공익으로서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양립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왔다. 개인 자유를 경제학적 언어로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에 센은 자유주의 공리를 ‘최소 자유주의(minimal liberalism)’로 정의한다(Sen, 1970b; 주병기, 2017: 79). 이는 최소 2개 이상의 선택지에 대해 결정권을 지닌 사람이 최소한 두 명 이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나의 결정권에 상대방의 결정권이 관여하지 못한다. 즉 독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자유주의는 사회선택이론에서 자유주의를 반영하기 위한 조건이다. 센은 패러독스를 통해 최소자유주의를 포함한 4가지 조건⁷⁴⁾이 모두 만족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Sen, 1970b; EMP 420).

센의 패러독스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있다(IJ 349-50). 루드(Lewd)와 프루드(Prude)가 있다. 루드는 한 음란한 책⁷⁵⁾을 좋아하지만, 프루드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때 루드는 자신이 읽는 것보다는 한번도 그 책을 보지 않았던 프루드가 읽기를 선호한다. 한편 프루드는 아무도 그 책을 읽지 않았으면 하지만 누군가 읽어야 한다면 루드가 읽을 바에 차라리 프루드 자신이 읽는 것을 선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에 대해 총 4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모두가 읽지 않거나, 루드 또는 프루드가 읽거나, 모두가 읽는 경우다. 첫째, 아무도 읽지 말아야 한다면, 이는 개인적 자유에 어긋난다. 루드는 분명 읽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프루드가 그 책을 읽어야 한다면, 이 역시 개인적 자유에 어긋난다. 프루드는 그 책을 읽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마찬가지로 모두가 읽는 것도 거부된다. 마지막으로 루드가 그 책을 읽는 경우다. 그러나 이 역시도 어긋나는데, 왜냐하면 프루드와 루드 둘 다 루드보다는 프루드가 읽는 것을 선

74) 최소자유주의와 파레토 원칙, 정의역의 비제한성, 수정된 형태의 집단적 합리성 등이다. 앞선 애로우의 합리성 조건들과 유사하다.

75) 센의 본문에서는 로렌스(D. H. Lawrence)의 소설 『채털리 부인의 연인』으로 제시된다.

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루드가 읽는 것은 파레토 조건에 어긋난다. 이를 종합하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결국 최소한의 자유 조건과 파레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⁷⁶⁾

센의 패러독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제시된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공모 계약에 의한 해결(solution by collusion)이다. 이는 개인 자유와 파레토 원칙이 양립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파레토적 개선을 위한 계약으로 이끈다. 그러나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 먼저 파레토적 개선을 위한 계약은 파레토 비효율적 상황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과연 프루드와 루드에게 주어진 상황을 파레토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설령 프루드의 읽기를 통해 파레토 개선을 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프루드는 읽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IJ* 350). 이는 후술할 내쉬균형(Nash equilibrium)과도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센은 오히려 계약을 통해 프루드에게 주어지는 곤란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계약이 자유주의의 이름으로 시행될 수 있는 위험함을 경고한다. 왜 프루드와 루드가 그러한 계약을 맺을 것인가? 왜 굳이 타인을 향한 사회 계약을 맞아야 하고, 그러한 계약을 유지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계약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것은 논점을 피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계약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의 타당성이다. 좋은 자유주의의 실천이란 이상한 계약을 거부하고 각자가 좋아하는 것을 읽도록 하는 것이다. 무조건 계약을 통한 해결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아니다(*IJ* 351-2).

센의 결론이 권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비롯되었다는 입장도 있다(Nozick, 1974; Gibbard, 1974; *EMP* 422). 노직은 센의 패러독스의 문제가 개인의 권리를 사회적 순위 내에서 결정할 권리로 취급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권리란 사회적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선택이 이루어지는 제약을 설정하는 것이다(Nozick, 1974: 210). 반면 센은 권리를 결정권(decisiveness)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루드와 프루드의 권리가 파레토 원칙과 충돌된다고 본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자발적인 합의에

76) 두 조건을 억지로 일치시키더라도 선호에 순환이 생겨서 이행성을 포함하는 집단적 합리성 조건이 위반된다.

도달하여 프루드가 책을 읽기로 하였다면 아무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다 (*EMP* 422-3). 이처럼 합의를 통한 권리의 양도가능성이 제시된다.

그러나 셴은 그러한 해결의 전제가 이미 파레토 효율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합의에 의해 해결된다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셴이 패러독스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파레토 효율성을 우선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직이 주장하는 권리는 자유에 대한 과정지향적인 관점으로 결과에 대한 보장은 하지 않는다. 셴은 이러한 관점이 타인과 분리된 채 자유의 상호의존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IJ* 354-5). 타인에 끼치는 결과에 대한 고려없이 개인적 자유만을 주장할 수 있을까? 권리는 결국 명시적으로 언급된 결과와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다. 셴의 자유는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적극 반영한다.

2. 자유주의 패러독스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자유에 대한 과정지향적 접근은 타인과 분리되는 노직의 관점을 버리고, 상호의존성을 반영하여 게임이론에서 차용된 개념인 게임형식⁷⁷⁾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때 자유의 요건으로서 권리는 허용되는 전략 행위나 선택에 부과되는 제약으로 명시된다(*IJ* 355). 그러나 게임형식을 통한 해결은 기존의 게임이론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그대로 답습한다. 무엇보다도 셴의 패러독스처럼 권리와 파레토 원칙이 충돌하는 게임에서는 파레토 효율의 결과가 내쉬균형이 아닐 수 있다. 이는 루드와 프루드는 합의를 위반할 동기(인센티브)를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내쉬균형이란 각 참여자가 독자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이탈할 유인이 없는 상태이다.⁷⁸⁾

내쉬균형은 게임이론에서 합리적인 선택으로 여겨진다. 게임 상황⁷⁹⁾에서

77) 게임이란 참가자, 전략, 보상, 지식 등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때 보상이란 물질적인 상품이나 돈이 아니라, 참가자의 선호(효용)다. 또한 게임은 완벽하고 완전한 정보를 동반한 게임이다. 이는 모두에게 공통지식이다. 합리적인 참가자는 기대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EMP* 437-40).

78) 존 내쉬(John Forbes Nash)는 전략집합(Si)과 보수함수(ui)가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내쉬균형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Nash, 1951).

는 단순히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호와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그에 알맞은 나의 선택도 역으로 고민하게 만든다. 일종의 객관화로서 또 다른 관점의 합리성 기준이다. 성대결게임이나 치킨게임처럼 아예 상대방의 선택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도 존재한다. 이때 존 내쉬는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지 묻는 대신에 어떤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이 균형은 상대방의 선택과 전략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자신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오는 전략들이 서로 합치될 때 이루어진다.

센의 패러독스에서 파레토 효율이었던 프루드만 책을 읽는 것은 내쉬균형이 아니다. 프루드가 책을 읽는 선택을 하였을 때 루드 자신도 읽는다면 더 최고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쉬균형이 아닐 때는 상태가 불안정하고 내쉬균형을 향하여 유동적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약속 집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내쉬균형은 프루드가 책을 읽지 않고 루드만 읽는 것이다 (EMP 423-4).

그러나 내쉬균형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 게임을 예시로 들어본다. A가 up 또는 down을 선택할 때, B는 left 또는 right를 선택할 수 있다. 이때 상금과 효용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각각 정규형 표와 전개형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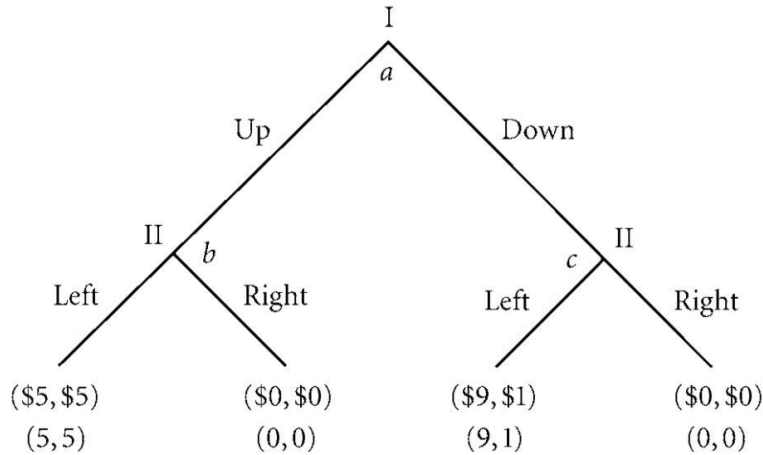
| | Lu Ld | Lu Rd | Ru Ld | Ru Rd |
|------|-------|-------|-------|-------|
| Up | 5,5 | 5,5* | 0,0 | 0,0 |
| Down | 9,1* | 0,0 | 9,1* | 0,0 |

[표 2] 정규형 표현 게임(EMP 460)

위 표에서 Lu Ld란 전략 표현으로, 상대방이 up으로 가면 나는 왼쪽, 상

79) 게임 상황은 크게 협조적 게임과 비협조적 게임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협조적 게임만을 다룬다. 비협조적 게임은 정규형 게임(normal form game)과 전개형 게임(extensive form game)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정규형게임은 서로 상대방의 전략선택을 모르는 상태에서 '동시에' 전략 선택을 하고 그 결과 각자의 보수가 정해진다. 반면 전개형 게임은 '순차적으로' 상대방의 선택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김완진, 2005: 29).

대방이 down으로 가면 나는 왼쪽이라는 뜻이다. (9,1)은 A가 상금으로 9, B가 상금으로 5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림 5] 전개형 표현 게임(EMP 461)

여기서 총 3개의 내쉬균형(*)이 존재한다.⁸⁰⁾ 그러나 이 중 하나는 비합리적이다. 바로 up(Lu Rd)인데, A의 down에 대한 B의 오른쪽 대응은 믿을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non credible threats). 전개형으로 보면 A의 down에 대해 B가 1달러라도 받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가야 한다. 굳이 오른쪽으로 가서 0달러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down(Lu Ld), (Ru Ld))가 유일하게 합리적이다. 이를 ‘하위게임 완전균형(subgame perfect)’이라 부른다(EMP 462).

그렇다면 하위게임 완전균형이야말로 예측가능한 완벽히 합리적인 선택일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후술하겠지만 실제에서는 못 미더운 ‘공허한 위협’이 곧잘 벌어진다. 하위게임 완전균형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방법은 신뢰할 수 없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 전개형을 역으로 대응하는 역진귀납법(backward induction)이다. 그러나 역진귀납을 이용한 합리적 선택은 정작

80) up(Lu Rd)와 같은 효용인 up(Lu Ld)은 내쉬균형이 아니다. 그 이유는 B가 무조건 왼쪽이라는 전략에 대한 A의 최상의 대응은 up이 아니라 down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 유명한 용의자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통해 그 예를 들 수 있다.⁸¹⁾

| | | |
|-----------|----------|-----------|
| | 용의자2의 자백 | 용의자2의 묵비권 |
| 용의자1의 자백 | 3년, 3년 | 무죄, 10년 |
| 용의자1의 묵비권 | 10년, 무죄 | 1년, 1년 |

[표 3] 용의자의 딜레마

모든 게임은 조건에 따라 우월전략(dominant strategy)이 존재할 수 있다. 우월전략이란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상관없이, 어떤 선택이 다른 모든 선택보다 나은 경우 우월전략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용의자2의 입장에서 보면, 용의자1의 자백에 대해 자백을 택했을 때(3년형)가 묵비권을 택했을 때(10년형)보다 효용이 더 낮다. 용의자1의 묵비권에 대해서도 자백을 택했을 때(무죄)가 묵비권을 택했을 때(1년형)보다 낮다. 따라서 용의자2의 우월전략은 자백하는 것이다. 같은 논리로 용의자1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둘 다 자백을 택한다면 3년형이지만,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1년형만 받을 수 있다. 모든 정보를 알고 있음에도 선뜻 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딜레마 상황이 벌어진다. 이 게임의 본질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약속으로부터 이탈할 유인이 있다는 상황 때문에 결국 서로에게 손해가 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김영산 & 왕규호, 2009: 612-5). 이는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한계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⁸²⁾ 그러나 예측대로

81) 물론 용의자의 딜레마는 우월전략이 존재하기에 내쉬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쉬균형(완전균형)에 대한 정확한 반례는 아니지만, 게임이론에서 합리적 선택을 도출해내는 형식에 대한 반례로서 제시한다.

82) 보통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이기적 행위는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자기중심적 복지(self-centred welfare), 자기복지 목표화(self-welfare goals), 자기목표 선택(self-goal choice)이다(Sen, 1987: 114-7). 자기목표 선택의 대표적인 예가 용의자의 딜레마이다. 실제 게임이론에 대한 실험 연구들은 자기목표 선택으로 인한 실패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셴이 제시한 관련 연구들(Laver, 1962; Rapoport & Chammah, 1965; Axelrod, 1984)을 참고.

실제로도 우월전략인 자백이 이루어졌을까?

용의자의 딜레마 게임은 일회성을 전제로 한다. 정작 현실은 일회성이 아닌 상호작용의 연속이다. 따라서 상호작용이 반복된다면 딜레마가 해소될 수 있다. 반복적인 용의자의 딜레마에서는 묵비권을 유도할 수 있기에 자백이 더 이상 우월전략이 아니다(EMP 453). 이때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따라하기(tit-for-tat)같은 단순한 전략이 진화적으로 안정적인(evolutionary stable) 전략이 될 수 있다.⁸³⁾ 용의자의 게임에서 자백은 배신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집단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제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협력은 진화론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행위인 셈이다.

그러나 오히려 반복성이 협력을 도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역진귀납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용의자의 딜레마를 100번 반복한다 가정한다면 마지막 100번째에서는 그 이후가 없기 때문에 굳이 협력(묵비권)할 유인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100번째에서는 배신(자백)이 우월전략이다. 100번째의 배신이 합리적인 것으로 정해졌기에 99번째에서도 협력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역진귀납 방식에서 모든 선택의 가장 합리적인 전략은 배신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EMP 458).

하지만 용의자의 딜레마를 실제로 한 실험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참가자 반 이상이 협력을 선택했다(Fehr & Fischbacher, 2002: C16). 합리성 예측이 실패한 것이다. 의사소통의 기회가 주어지면 협력의 빈도가 더 높았다. 심지어 선택과 무관한 주제에 관해서도 서로 대화할 기회를 가질 때 협력할 가능성이 더 컸다(Bicchieri, 2002; EMP 466). 설령 배신을 했더라도 보수

83) 이를 진화론적 게임(evolutionary game theory)이라 부른다. 이 게임이론은 참가자가 성공적인 전략을 위해 전체의 평균 보상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전략을 갱신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수의 참가자를 가정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반복되는 상황을 논의하는데, 이때 각자의 보상은 후손의 수로 나타난다. 진화적으로 안정적인 전략은 보편적으로 침입자(돌연변이)에 저항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때 안정적 전략은 파레토 최적이나 내쉬균형이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상호 협력이 안정적일 수 있다. 여기서 상호 협력은 조건부적인 호혜성을 지닌다. 따라하기 전략도 조건부적 호혜협력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EMP 455-7, 역자 주동률의 주석 119 참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협력했을 때 상대방이 배신하는 상황을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실제 횡수가 반복되었을 때는 앞선 상대방 전략을 따라하기도 했다(Bowles, 2016: 85-6). 이는 협력에는 협력으로 보답하고, 배신에는 배신으로 갚아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참가자들은 자신이 호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크게 신경 썼다.⁸⁴⁾ 따라서 용의자의 딜레마에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계속된 배신 전략은 해당 참가자의 도태를 이끌게 된다. 결국 기존의 이기적 전략이나 합리성만으로는 현실 대응이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러한 관점에서 장기 이익의 추구로서 윤리적 행위(협력)의 정당성을 모색하기도 한다. 실제 게임에서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은 각자의 우월전략을 버리고, 협조와 같은 특정한 사회적 행위를 따르도록 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협력 행위가 이익 추구에 따른 도구적 행위일 뿐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다.⁸⁵⁾

이에 대해 센은 사회적 행위를 내재적인 도덕적 우월성 때문만이 아니라, 개인 목표를 위한 일종의 도구로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현실에서는 사회적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완전하지 않고 이행적이지 않지만, 불완전성은 비합리적인 결함이 아니다. 만약에 용의자의 딜레마에서 나의 배신에도 상대방이 계속 협력을 택한다면, 이때 나의 심정 변화는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게임이론의 합리성 가정은 이러한 변수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 아담 스미스가 사회적 행위의 도구적 중요성을 강조했듯이 사회적 도덕성에는 복잡한 도구적 윤리도 담겨있다. 센이 추구하는 사회적 합리성은 가치판단과 관련한 여러 성질들을 더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방식, 즉 더 많은 변수를 가진 정식화를 요구한다(Sen, 1987: 123-4).

다시 [그림 5]의 예시 문제로 돌아가 보자. 하위게임 완전균형과 같은 계

84) 이를 정체성 동기라고 한다. 사람들의 행동 동기에는 인센티브에 대한 획득 동기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정체성 동기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인센티브를 적용할 때는 이 둘을 구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Bowles, 2016: 293-5).

85) 용의자의 딜레마의 맹점은 협력하는 팀과 배신하는 팀을 비교해 본다면 무조건 협력하는 팀의 효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협력을 유도하는 동기가 클 수밖에 없다.

임이론의 합리적 선택의 또 다른 문제로는 위 예시의 up(Lu Rd)와 같은 ‘신뢰할 수 없는 위협’이 실제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다. 최후통첩게임(ultimatum game)이 좋은 예다. 한 쌍에게 10달러가 주어진다. 한 명만 상대방에게 분배를 제안할 수 있고, 상대방은 그 제안을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제안을 수용하면 그대로 나눠 가지지만, 거절하면 모두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이 게임은 많은 내쉬균형과 하위게임 완전균형이 존재한다. 어쨌든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다는 1달러라도 받는 것이 보통은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이 알려졌듯이 실제로는 대부분 제안들이 50:50에 근접하고, 그 외 불평등한 제안들은 대부분 거절되었다(EMP 463). 참가자들에게는 인센티브 외에도 공정성 같은 도덕적 관념들이 큰 영향을 주었다.⁸⁶⁾

게임이론은 각자의 전략으로 합리적 선택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선택이론이다. 또한 게임이론에서 다루는 상호작용은 도덕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호작용 속 작동하는 패턴들은 인센티브나 규범의 역할에 대해 확장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게임이론은 단순히 선호만이 아니라 전략, 결과 등을 고려하기에 엄격한 의미에서 (경제학적인)복지주의는 아닐 수 있지만, 평가적 측면에서는 도덕적인 요소가 고려되지 못하기에 기존의 복지주의와 유사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최후통첩의 예를 보더라도 실제 사람들의 선택은 단순히 선호나 개인 복지(이익)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또한 상호작용에는 풍습이나 문화와 같은 집단적인 관점이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 게임이론을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왜 실제로는 합리적으로 예측된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지 분석해보고, 개인적 동기와 더

86) 반면 최후통첩 게임을 단순히 교환 과정으로 바꾸고 참가자 역시 판매자와 구매자로 바꾸었더니(프레이밍) 실제 제안 금액도 낮아졌고 거부하는 비율도 낮아졌다. 서바이벌 조건을 추가했을 때도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 낮은 보수를 받은 사람들은 다음 회차에 탈락한다는 조건이 있었을 때 대부분 낮은 제안 금액을 제시하였고 수락을 하였다. 이는 인센티브도 동기부여효과(crowding in)를 내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시장문화는 경쟁이 없었다면 정당화되기 힘든 행동들을 정당화시킨다고 비판하기도 한다(Bowles, 2016: 157-60). 그러나 오히려 시장문화에 많이 노출된 지역일수록 최후통첩에서 더 관대한 제안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Bowles, 2016: 212-28).

불어 도덕적 신념을 이해해야 한다(EMP 465-6).

종합하면 센의 자유주의 패러독스의 대안으로 자유의 과정지향적 접근은 게임형식으로 해결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개인적 자유의 게임 형식적 접근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앞선 예시들에서도 보았듯이 사람들은 항상 강요나 인센티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에 반하더라도 개인적 자유를 추구할 수 있었다. 센은 개인적 자유의 합리적 선택이 단순히 이득이나 선호에만 근거하여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EMP 424-5).

무엇보다 게임형식의 권리로서 선택 행위는 과정지향적 접근과 별개로 결과에 대한 고려가 선결될 수밖에 없다. 게임형식의 정식화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에서 시작하여 이 결과들을 위한 전략 조합으로 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적 자유와 일반적 자유는 개인의 선택만이 아니라, 여러 선택들이 합쳐졌을 때 벌어지는 결과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결국 과정지향적인 게임형식은 포괄적 결과로서 사회적 실현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유의 다면성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결과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IJ 356-7).

센의 패러독스를 유발하는 핵심은 다른 사람의 사적 영역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참견하기 좋아하는(meddlesome) 선호를 갖지 않는다면 모순은 발생하지 않는다(Blau, 1975). 그러나 현실처럼 상대방에 대한 선호가 포함될 경우에는 개인적 선호에만 근거하는 파레토 조건을 맥락과 무관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센은 파레토 조건에만 근거하여 기계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선택이론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EMP 422-4). 설령 만장일치의 선호라도 그 이면의 추론은 다를 수 있다. 선호의 적절성 비판을 통해 사회선택이론에 자유주의를 통합하는 적절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IJ 124). 센은 사회선택이론에 대입되는 정보는 개인 선호들 이상으로 더 풍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 선호는 판단되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며 선호 이외 권리나 자유, 역량과 같은 정보들도 필요하다(EMP 425).

한편 센의 패러독스는 애로의 정리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없었다면 제기되지 않았을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적 토론에 공헌했다. 이에 대한 해

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논쟁적이다. 관련 문제를 더 명확히 하고 공적 토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회선택이론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자 센이 추구하는 정의론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IJ* 353). 센은 사회선택의 문제와 논쟁들이 사회 내 상이한 개인들의 이익, 선호, 판단들을 합산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말한다(Sen, 1986: 214; *EMP* 415). 이익이나 선호를 합산하면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의 본질은 윤리학이다. 따라서 사회선택이론의 상당 부분은 윤리학 기반인 셈이고, 결국 윤리학으로 확장해야 한다.

센이 주장하듯이 사회선택이론의 정보기반을 선호와 판단 너머로 확장한다면 더욱 활용가능성이 크다. 사회선택이론의 방법들은 형식적이고 공리에 기반을 두며 정리들을 증명하는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선호나 판단들의 사회적 합산에 관한 정리들의 증명과 해석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목적에서 무엇이 합산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다. 그 합리적 조건들이 합당한 것인지, 합산 메커니즘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나아가 도출되는 결론 역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있고 합당한지도 함께 따져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센의 정의론은 사회선택이론의 다음 7가지 주요 공헌을 주장한다(*IJ* 119-25). 먼저 선형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이때 그 배후에 있는 현실적인 이유에 더 집중해야 한다. 둘째, 서로 상충되는 원칙들의 불가피한 복수성을 인식시킨다. 지속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정의론에서 중요하다. 셋째, 언제든지 정의 원칙의 재검토를 용인한다. 처음에는 그럴듯한 도덕 원칙들도 수많은 사례를 적용하면 예측을 못하거나 모순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넷째, 완전한 해결이 아니더라도 부분적인 해결을 허용한다. 이는 마찬가지로 재검토와 확장의 여지를 마련한다. 다섯째, 단순히 선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정보를 투입한다. 이때 아담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 역할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형식적으로 명확한 표현과 추론을 강조한다. 이는 철저한 논증의 역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공적추론을 더욱 활성화시킨다. 형식적으로 단정적인 불가능성의 결과도 개인 선호나 자유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추론 및 재검토 등을 불러일으켜 다양한 공적 토론에 기여할 수 있다.

제 4 절 셴의 민주주의와 기능

셴이 사회선택이론을 통해 강조한 공적추론의 역할은 셴의 민주주의론으로 이어진다. 셴의 민주주의는 전통적인 민주주의와 비교되면서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 더 적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해석을 요구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도구적 기능 역시 중시하면서 이를 통해 국가 발전으로서 실질적 자유 증진을 더욱 모색한다. 이는 셴이 추구하는 정의의 실천 방식과도 연계된다.

1. 제도 중심의 민주주의 비판

민주주의는 간단히 인민에 의한 통치(rule by people)로 여겨지지만, 대부분의 현대 정치체제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결합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는 인민에 의한 통치의 정당화다(Gutmann, 2009: 528). 다시 말해, 민주주의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단지 다수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다. 만약 단지 다수결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선택도 다수결이라는 이유 아래 정당화될 수 있는 위험을 안게 된다. 게다가 다수결이라는 집계는 상황에 따라 개인 선호들을 본의대로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 대표적으로 콩도르세의 역설이다. 실제로는 제 3의 선택 개입으로 인하여 기존의 선호체계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합리적 선택이라는 관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사회는 이상적인 자유의지가 아니라, 단지 집적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사회선택이론의 활용은 집적적인 투표제도와 연관성을 지니며 긴밀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애로우의 정리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 선호의 단순 집합이라는 형식적 제도만으로는 결코 이행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개인 선호의 무제한적 허용(정의역의 무제한성 조건)을 제한하면서 극단적인 선호를 배제시키면, 선호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닐 수 있어 비교적 합리적인 도출이 가능하다. 또한 독립성 조건을 완화시

키면,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더 다양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되어 더욱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IJ* 106-7). 이는 기존 사회선택이론의 단순 집적적인 모형에 더 많은 정보가 허용되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민주주의를 단순히 제도로만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대의제 민주주의로서 선호 집합적 민주주의는 거대한 현대 사회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분명 다수결 원칙은 민주주의가 실현됨에 있어서 필연적이다. 셴은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소수자 인권의 보호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소수자 인권의 보호는 특히 다원화된 민주주의에서 필연적인 관용과 연계된다. 셴의 사회선택이론인 자유주의적 패러독스의 교훈 중 하나는 자유와 다수결 원칙을 정합할 수 있는 ‘상호 관용적인 선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IJ* 379). 민주주의가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용적 가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셴은 민주주의의 성공이 가장 완벽한 제도를 구성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IJ* 399).

민주주의의 관용적인 접근은 현대 다문화 시대에서 요구되는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와 연계된다. 인정의 정치는 기존의 권리 중심적인 시민권 개념을 넘어서 더 포괄적이고 허용적인 시민권을 추구한다(Kymlicka, 2002: 525-8). 셴은 인권의 윤리적 요구가 지니는 불가피한 모호성이 법과 제도에서 요구하는 명확성과 대비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권 개념에 모호성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타당성과 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셴은 칸트의 논의를 빌려 완전한 의무와 불완전한 의무를 제시한다(*IJ* 420-4). 예를 들어, 방관된 살인 사건에 대해 가해자는 살해해서는 안 되는 완전한 의무를 위배했다. 반면 방관인들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할 불완전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방관인들은 법적으로는 처벌받지는 않지만, 윤리적으로는 충분히 비난 받을 수 있다. 셴은 이러한 모호성으로부터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책임을 말한다. 불완전한 의무는 완전한 의무와 공존할 수 있다.

셴은 제도 자체를 정의의 발현이라고 여기는 제도원리주의를 비판하면서

실제 사회적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순수 제도적 정의관은 예측과 결과의 일치를 보장하지 않으며,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IJ* 93-5). 그럼에도 여전히 민주주의를 절차와 제도적으로만 이해하려는 서구적 전통이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민주주의는 언제나 고대 아테네에서만 시작된 지극히 서구적 전통으로 여겨진다. 센은 민주주의의 전통이 제도적인 것인지와 별개로, 이것이 철저히 서구적인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IJ* 370). 오늘날 세계의 민주주의 양상을 볼 때 서구중심 민주주의 개념은 해석에 따라 문명 간 갈등 요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서구 전통화는 또 다른 주류적 선입견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센은 인도를 비롯한 고대 아시아나 중동의 무슬림 역사에서도 참여형 공적 토론의 역사가 있기에 민주주의의 역사를 비제도적인 관점에서 더 넓게 볼 것을 요구한다(*IJ* 372-6).

설령 민주주의를 단지 제도로만 보더라도 참여자의 역량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이다. 제도란 참여자에 의해서 실현되기에 결국 참여자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접근은 제도중심의 소극적 자유의 해석을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해석하게 한다. 이는 수단적인 권리나 자원이 아니라, 적극적인 책임과 행위주체성의 자유로서 역량을 요구한다. 여기서 요구되는 역량이란 실제 공적 행사에 참여하는 여러 기능과 연계된다.

센은 민주주의의 중요성으로 다음 3가지를 든다. 첫째, 민주주의 자체가 지닌 내재적인 중요성, 둘째, 발전에 대한 민주주의의 도구적인 기여,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구성적인 역할이다. 특히 마지막 역할로서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가 허용하는 공적 토론은 민주주의 가치 형성에서 매우 중요하다(Sen, 1999: 239-41). 현대 정치철학에서도 민주주의를 단순 공적 투표의 요구뿐만 아니라, 공적 추론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토론에 의한 통치(government by discussion) 관점이 넓게 지지받고 있다(Kymlicka, 2002: 460-2; *IJ* 367). 이러한 민주주의 해석의 변화는 특히 롤스와 하버마스의 공헌이 컸다. 롤스는 민주주의에서 공공이성(public reason)을 중시했고, 하버마스가 공적추론을 다루는 방식(public sphere)은 민주주의에 더 직접적인 절차를 부여했다(*IJ* 364-6).⁸⁷⁾ 이는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가 발달하는 토대가 된다.

오늘날 심의민주주의는 제도중심의 선호집약적인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델로 대두되고 있다(Dryzek, 2002: 1; 서요련, 2021: 119). 심의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전제하며 직접민주주의로서 참여민주주의 등과 비교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원규는 심의민주주의가 엘리트주의와 실적주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루소적 전통을 계승하여 참정권의 확대를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주장한다(정원규, 2005: 320-4). 반면, 김주성은 참여민주주의의 폐해로서 포퓰리즘을 지적한다. 현실적인 제약없이 완전한 참여민주주의가 보장되더라도 이는 결국 선호집약적 민주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수의 참여만으로는 합리적 선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의제 대표의 실패로 참여민주주의가 주목받지만, 이 실패는 본질적으로 심의의 실패임을 주장한다. 집합된 선호를 넘어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의제를 보완하는 심의 기능이 필요하다(김주성, 2008: 23-30).

심의민주주의는 셴이 추구하는 공적추론 중심의 민주주의와 유사하지만, 민주주의 실천 방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심의민주주의는 심의 그 자체에 중점을 두며 심의 방식의 질과 효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단순 참여적인 집단행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셴이 강조하고자 하는 활발한 공공캠페인이나 실천적이고 참여적인 측면과는 다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셴의 공적추론은 심의민주주의에서 전제하는 제도적인 성격과 다르다. 셴은 공적추론에서 진실성이나 엄밀성과 같은 어떤 구체적인 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 조차도 각 사회의 공적추론 대상 영역인 것이다.

무엇보다 셴의 공적추론을 통한 합의 또는 타협은 기존의 합리성 전제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의 실제 선호 순위가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IJ* 451). 셴은 공적추론의 범위가 참가자들에게만 한정되는 해당 국

87) 하버마스는 공적 추론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절차-숙의적 관점을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관점들과 대비시켰다. 셴은 하버마스의 공적추론 범위가 롤스보다 더 폭넓은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정치적 담론에서 정의의 도덕적 물음과 권력 및 강제 의 수단적 물음이 이중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혀냈다(Habermas, 1994; 1996; *IJ* 366).

가나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을 것을 요구한다. 전 인류의 눈으로서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는 열린 공평성이 필요하다. 열린 공평성을 통해 지역주의와 편협성을 타파한다면, 전 세계의 부정의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2. 민주주의와 발전 기능

센은 발전이란 궁극적으로 부자유의 원인을 제거하고, 실질적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en, 1999: 41-2). 자유의 확장은 발전의 주된 목표일뿐만 아니라 핵심적 수단이 된다. 이를 각각 목표라는 구성적 측면과 수단이라는 도구적 측면으로 구분한다. 구성적 측면에서는 자유의 평가적 역할을 고려하는데, 이때 주로 평가하고자 하는 핵심요소로서 기존의 효용이나 자원이 아닌 역량을 강조한다. 도구적 측면에서는 실제로 발전하는 데 자유가 지닌 여러 가지 효과적인 역할들을 제시한다. 센은 크게 5가지의 ‘도구적 자유’를 주장한다. 정치적 자유, 경제적 용이성, 사회적 기회, 투명성보장, 안전보장 등이다. 이러한 도구적 자유들은 실질적 자유로서 역량을 향상시킨다(Sen, 1999: 103-4).

센은 민주주의와 발전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발전이 민주주의에 크게 의존한다고 주장한다(*IJ* 390-2). 보통 민주주의나 정치적 자유에 비해 가난과 빈곤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여겨지기 쉽다. 이에 대해 센은 기본적 역량으로서 정치적 자유가 오히려 경제적인 자유를 증진시킨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적 요건들이 더욱 경제발전을 일으킬 수 있다. 단적으로 국가 경제는 국가의 필요에 대한 요구와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필요와 선택의 적절성과 타당성은 전적으로 공적인 토론과 시민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Sen, 1999: 240).

민주주의가 발전과 연계되는 대표적인 예로 기근이 있다. 전 세계의 기근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히 식량과 인구의 기계적인 균형 관점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잠재적인 기근 희생자가 전 인구의 10%라고 한다면,⁸⁸⁾ 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총소득은 통상 GNP

의 3%를 넘지 않는다. 식량 소비량도 전체의 4-5%수준이다. 게다가 실제로는 그들이 이미 약간이나마 자원을 가지고 있기에 순수하게 필요한 자원은 더 적어진다(Sen, 1999: 254-5). 이렇게 단순 수치상으로는 기근방지가 어렵지 않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센은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국가에서는 설령 전체적으로 가난하더라도 큰 기근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한 예시로 보츠와나와 짐바브웨를 들고 있다. 1979-81년과 83-4년 사이 보츠와나에서는 식량 생산량이 17%줄었고, 짐바브웨에서는 38%가 줄었지만, 같은 시기 수단과 에티오피아에서는 11-2%밖에 줄지 않았다. 그러나 수단과 에티오피아가 대기근에 시달린 반면, 보츠와나와 짐바브웨에서는 기근이 없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적절하고 광범위한 기근 정책이 있었기 때문이다(Sen, 1999: 266-7).

기근은 부작위의 자연환경 영향이나 식습관, 생활패턴, 무능력 같은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센은 앞선 예시들처럼 생산 총량이나 가난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해당 정부의 책임을 지적한다. 심지어 생산 총량이 줄지 않아도 사회구조 등의 변화로 획득권한과 같은 기본적 자유의 부족으로도 충분히 기근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구매력의 약화는 불안에 따른 투기적 수요와 동시에 공급의 왜곡을 가져와 악순환을 더 증폭시킨다. 그 예시로 1840년대 아일랜드를 초토화시킨 대기근을 든다. 센은 원인에 대해 보통 지적하는 식량(감자)의 역수출문제가 아니라, 당시 감자마름병 흉작으로 인한 '획득권한의 상실문제'로 보고 있다. 시장에 따라 가격을 더 받는 곳으로 갔을 뿐, 전체적으로는 충분했던 식량을 구매할 여력을 주었다면 역수출은 일어나지 않았다. 센은 이에 대한 대처로 시장거래 금지가 아니라, 경제적인 역량을 위한 정부의 공공 고용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요구한다(Sen, 1999: 256-62).

정작 기근은 수백만 목숨을 앗아가지만, 권력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센은 선거도 없고, 야당도 없고, 비판하는 언론의 자유도 없다면, 권력자들이 책임을 질 이유가 사라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예시로 1958-61년에 발생

88) 센은 예시일 뿐 실제로는 훨씬 적은 비율이라고 말한다. 실제 인구의 5-10% 이상 영향을 주는 기근은 찾기 어렵다.

한 중국의 대기근을 든다. 당시 중국은 인도보다 경제발전을 이루어졌고 평균수명도 더 높았다. 그러나 인도와 달리 대기근을 겪었다. 정치, 언론 탄압으로 정보가 소통되지 않아 문제점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후 중국은 민주주의의 정보적인 역할을 인정했다. 중국의 민주주의 옹호는 꽤 제한적으로, 오직 정보적 측면의 경제적 인센티브만을 중시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인센티브로서 민주주의의 내재적이고 구성적인 중요성은 무시했다 (Sen, 1999: 269-71). 잘 작동하는 민주주의에서 권력자는 항상 비판과 사회적 요구에 맞닥뜨리게 되고, 이 때문에 기근을 막아야 하는 정치적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민주주의의 재난방지 기능은 센이 주장하는 도구적 자유로서 안전보장의 요구와 일치한다. 센은 실제 재난사태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은 가장 가난한 계층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한국으로 들고 있다. 8-90년대 한국은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덕분에 민주주의적 역할과 필요성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후반에 급작스런 재난 상황인 금융위기가 오고 나서야 비로소 민주주의적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더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 센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민주주의의 역할로서 도구적 자유는 투명성 보장이다. 한국의 경제 체계가 투명하지 않아 비판적인 의사소통과 공적추론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물론 센의 경제관이 여실히 담겨져 있는 시각이기도 하다. 센은 상당히 시장을 중시하고 신자유주의적인 자유무역을 옹호하기 때문이다.⁸⁹⁾ 센은 당시의 5-10% GNP하락은 매년 그 정도로 성장해왔던 측면이 있기에 심각한 재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하락의 부담이 균등하지 않고,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집중되었기에 더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Sen, 1999: 274-5).

결국 단순한 경제성장만으로는 빈곤이라는 부정의를 막을 수 없다. 센은

89) 그렇지만 센이 우파경제학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센은 자신 특유의 경제적 시각을 고수하려고 노력했고, 좌우 경제학 모두에서 비판받기도 했다. 그에 대한 복합적인 평가는 민경국의 한국경제신문 경제사상사 기고글 '잘못된 분배가 빈곤 낳아...개발독재 리관유와 열띤 논쟁'(빈곤의 경제학 선구자 아마르티아 센)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2785831?sid=101>.

빈곤을 단순히 낮은 소득이 아니라, 기본적 역량의 박탈로 규정한다(Sen, 1999: 151). 그러면서 기존의 빈곤 측정 방식의 문제점들을 비판한다. 보통 빈곤은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선(poverty line)이라는 경계선이 설정된다. 집계는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계산하는 방식(H)으로 이루어진다. 이 방식은 가난한 사람들 중 가장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빈곤선 이하의 수를 가장 쉽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집계방법으로는 소득격차를 계산하는 방식(I)이 있다. 모든 가난한 사람을 빈곤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추가 소득'을 계산한다. 다시 말해, 빈곤을 모두 제거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을 1인당으로 환산한다. 센은 두 방식(H, I) 모두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소득 분배'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두 지수가 같더라도 극빈층은 더 가난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기준은 빈곤에 대해 다른 측면을 다루기에 서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센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소득분배 척도를 D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H, I, D)를 모두 고려하여 총 빈곤척도가 구성된다(Sen, 1992: 183-6). 센은 빈곤측정에 소득만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늘날 빈곤척도는 반드시 분배민감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en, 1992: 189).

빈곤을 표면적으로는 결핍으로 파악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실현가능성으로서의 빈곤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센은 빈곤을 욕구 충족의 실패라기보다는 역량의 실패로 이해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말한다. 개인별 특성과 무관한 저소득이 아니라, 최소 역량에 대한 인과적인 요구로서 필요한 소득을 판단해야 한다(Sen, 1992: 196-200). 관련하여 센은 부유한 나라의 빈곤을 대표적인 예시로 든다. 선진국의 빈곤은 보통 과소평가된다. 선진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데, 이러한 소득 이용장애는 낮은 소득 획득능력을 더 심화시킨다. 미국처럼 최고 수준의 부유한 나라에서도 역량결핍수준이 아주 높을 수 있다. 저소득은 단지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인들 중 하나일 뿐이다. 게다가 소득의 상대적인 결핍은 역량의 절대적 결핍으로도 이어진다. 똑같은 공동체 생활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득이 아닌 역량에 초점을 맞추면 부유한 나라의 빈곤이라는 역설이 설

명 가능해진다(Sen, 1992: 203-8).

빈곤을 역량 박탈로 보는 관점은 정의의 분배가치로서 자원이라는 수단이 아니라, 역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센의 구체적인 빈곤 측정법은 단편적인 판단이 아니라, 많은 정보를 반영한 다원적 평가를 구성한다. 이는 사회선택이론의 비교접근방식을 활용한 예이기도 하다. 센의 발전 개념 역시 마찬가지다. 발전이란 민주주의와 상보적 관계이고, 결국 실질적인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센은 다양한 발전 관련 지수들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기존의 소득중심 불평등지수를 보완한 센 지수나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지수(HDI)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적추론은 민주주의의 역할에 필연적이기에 결국 정의는 민주주의와 같은 방식을 공유한다. 앞선 기근이나 빈곤과 같은 부정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도 도구적으로도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들은 센이 추구하는, 실질적 자유를 위한 정의의 실천방식이다.

제 4 장 센 정의론에 대한 비판과 대응

제 1 절 선행적 제도주의 비판에 대한 비판

센은 기존의 정의론으로서 선행적 제도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정의론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정작 센의 정의가 기존의 정의론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 비판이 존재한다. 첫째, 센이 선행적 정의에 대해 잘못 해석했다는 비판이다. 둘째, 센이 제도주의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제도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다.

첫 번째 비판과 관련하여 센이 선행적 정의로서 롤스를 잘못 해석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라일리(Evan Riley)는 센이 롤스에 대하여 단순히 초월주의, 제도주의라고 하는 것은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Riley, 2010: 139). 레이만(Jeffrey Reiman)은 센이 정의의 범위를 크게 확장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의 자체에 대해 엄밀하지 못한 이론으로 평가한다. 센의 비판과는 다르게 기존의 계약론적 정의론이 선행적인 사회제도뿐만이 아니라 개인 행위도 충분히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Reiman, 2011: 23; 김병곤 & 봉재현, 2014: 33-4). 목광수 역시 롤스의 선행적 정의가 단순히 제도 중심적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심리학적 분석으로 개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한다. 이를 통해 센이 비판한 주된 요지인 실천성마저 담보했다고 본다(목광수, 2011a: 169). 또한 롤스의 정의론은 단지 선행적인 이상론뿐만이 아니라 비이상론(부분 준수)의 단계도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목광수, 2011b: 219).

센의 정의가 결국 롤스의 선행적 정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보는 비판도 있다. 비교 중심 방식의 비이상론은 결국 상대주의로도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지주의적 관점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그 토대가 될 이상론을 보완으로 삼는다. 결국 센은 롤스의 연장선일 수 있다(최은광, 2014: 95). 목광수는 이상론 없이 현실적 문제들을 접근하는 센의 방식에 우려를

표한다. 특히 민주주의 개념에 대해 너무 가볍게 해석한다면 과연 공적 추론 단계에서 실천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목광수, 2011a: 152). 실천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무엇이라도 요구되는 셈이다.

그러나 롤스의 정의론이 선행적 정의뿐만 아니라 개인행위나 사회실현에 대해서도 다루기에 센이 그것을 잘못 해석했다는 비판은 반박의 여지가 있다. 롤스의 정의는 어쨌든 초두에 사회제도 정의에 한해서 기술한다고 명시되어 있을뿐더러 상당히 선행적인 과정으로서 원초적 계약을 사고하여 논증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원문에 근거하는 센의 해석은 통용될 수 있고 보편적인 측면도 크다. 다시 말해 롤스의 정의가 선행적이고 사회제도를 위주로 다루고 있다는 센의 해석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물론 앞선 지적대로 롤스의 정의론이 비선행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해 센은 단지 두 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비이상론에 대한 실질적 지침을 제공하는 통합적 정의관(conglomerate theory)이라는 해석은 부인한다(IJ 110).

또한 센이 추구하는 비선행적 정의는 상대주의로 빠질 것이기에 선행적 정의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 역시 너무나 비약이다. 오히려 센은 선행적 접근이 충분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고 말한다(IJ 111-5). 부정의의 판단에 있어서 모든 정의 원칙을 완벽하게 파악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센의 정의란 일괄 적용되는 전체주의적 형식이 아니라, 불완전성을 통한 지속적인 비교접근을 허용한다. 무엇보다 센은 객관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명백한 부정의라는 말 자체에 이미 엄밀한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이다. 센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능력으로서 이성을 말하고 있다. 이는 센이 인정했듯이 롤스와 결코 다르지 않은 관점이다(IJ 48). 센은 롤스의 정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만이 유일하다는 주장을 거부할 뿐이다(IJ 50).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공적추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는 결국 롤스의 계약론적 접근과도 유사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접근의 차이가 있는데, 롤스가 하향식(top-down)이라면 센은 상향식(bottom-up)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다. 센은 이를 제도주의와 실현 중심의

비제도주의로 구분짓고 있다.

두 번째 비판과 관련하여 센이 제도주의를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작 제도 자체의 중요성마저 놓쳐버려 한계가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센은 선형적 제도주의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다양한 정의를 반영할 수 있는 비교정의론을 내세운다. 이에 대해 오스마니(Siddiqur Osmani)는 센의 이분법이 제도주의와 센의 비교정의론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Osmani, 2010: 599). 뮐렌도르프(Darrel Moellendorf)도 센의 비교방법론적 정의가 제도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한다. 센의 정의의 출발점이 되는 정의론의 이분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한다. 센이 강조하는 글로벌 정의는 결국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제도를 목표해야 한다는 것이다(Moellendorf, 2013: 162; 김병곤 & 봉재현, 2014: 34).

무엇보다도 센은 부정의의 선제적 해결을 요청하였지만, 정작 부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데눌린(S  verine Deneulin)은 센의 정의론이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개인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부정의의 구조적 성격을 논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자체가 실패할 수 있다(Deneulin, 2011: 787; 김병곤 & 봉재현, 2014: 33). 제도주의의 이상과 현실 문제와의 괴리를 말했지만, 부정의 자체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 문제는 간과한 셈이다. 부정의가 사회구조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구조적인 모순을 발견해야 하지만 센은 이러한 논의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센이 기존의 제도주의와 구분 짓고 비판하는 관점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롤스를 비롯한 제도중심정의를 제도의 영향력에 따라 강한 해석과 약한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강한 해석을 한다면 전 세계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정의 제도가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고, 약한 해석을 한다면 비제도적인 부정의에 대해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제도중심정의를 두 해석 모두에서 한계를 보이기에 센의 비판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목광수, 2018: 171-96). 그러나 결코 센이 제도가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센에 대한 비판으로서 제도의 필요성을

말하지만, 셴은 정의에서 제도만 강조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셴은 제도뿐만 아니라 그로 파생되는 실제 사회적 실현과 포괄적 결과를 중시한다. 정의란 결국 사람들의 실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해야 한다(*IJ* 78).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반드시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 자체가 정의의 발현이 아니라 정의를 증진시킬 수단으로서 고려해야 한다(*IJ* 95).

또한 셴의 정의는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간과하기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인 접근으로서 해소할 수 있다. 물론 부정의는 사회구조적인 모순이 포함될 수 있고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셴의 정의는 분명 부정의에 대한 즉각적인 해소를 바라기에, 기존처럼 더 나은 제도를 모색하기 위해 방치하기보다는 선제적인 해결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이 구조적 부정의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구조적 부정의에 대해 제도적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셴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의 열린 공적토론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더 포괄적인 대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셴에 대한 앞선 두 비판은 반박될 수 있다.

그렇지만 셴의 정의가 더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적한 선형적 제도주의의 한계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셴은 선형적 제도주의적 접근이 현실성과 실천성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셴의 정의는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 규범들, 문화, 암묵적 인식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접근한다. 그러나 셴의 비교 접근법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요구해야 하기에 도리어 실천성에 대한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이상적인 정의 제도에 집착하지 말고 명백한 부정의를 해소해야 하지만, 부정의를 명백하게 판별해야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누구나 인지가능한 명백한 부정의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절대 선의 존재를 인정하는 셈이기도 하다. 이는 셴이 거부했던 유일한 이상론을 결국 전제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 점에서 비판의 여지를 남긴다. 롤스의 선형적 정의가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시급한 부정의를 해소하지 못한다는 비판 논리가 셴의 불가피한 이상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셴 정의론의 핵심적인 실천성 문제로도 연결된다. 셴의 정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백한 부정의를 인지하여 해소할 것인가? 그것을 실천

할 수 있는 동인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앞선 문제점에 대해 개인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의 상호 통합적 구조로 접근하면 실천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이때 셴에 대한 보완으로서 통합적인 접근을 셴이 선형적 제도주의로서 비판했던 롤스에게서 찾는다.⁹⁰⁾ 이러한 관점에서는 역량의 행위주체성 개념을 도덕심리학적 토대에서 동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목광수, 2011a: 162-9).⁹¹⁾ 보통 민주주의 실천에 대한 요구는 민주주의를 유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정의가치 목록이나 시민덕성, 최소한의 역량 등을 전제해야 한다. 그러나 셴은 그러한 구체적 요구들이 오히려 해당 사회의 공적토론을 방해할 수 있기에 거부한다. 결국 셴의 민주주의 요구는 비교적 약한 편이고, 이러한 약한 추론 능력으로는 정의의 실천이 어려워진다. 그러나 이때 행위주체성을 활용한다면 나선형 구조처럼 역량이 점차 발달하면서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행위주체성을 가진 개인들은 구성원들과의 공적 추론을 통해 더욱 부정의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부정의를 자기실현적인 방식으로 점차 제거해 나갈 수 있다. 여기서 자기실현적 접근(self-realization approach)이란 ‘실천적 정체성(practical identity)’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을 보존하고 강화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책무, 규범을 자신에게 부여하게 된다(Korsgaard, 1996: 170-1). 따라서 셴의 정의론이 실천적인 정의론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역할과 책무를 중시하는 도덕심리학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개인의 합리성과 합당성의 발달이 사회 제도와 순환하면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로 셴의 행위주체성 개념도 사회 제도 속

90)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 기본구조를 정의의 제 1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셴의 주장처럼 분명 제도 중심적인 정의이다. 그러나 개인적 차원과 도덕 심리학 논의를 담고 있는 3부 목적론 역시 정의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롤스는 이 부분이 없으면 정의론 전체가 오해될 수 있다고 말한다(TJ 27).

91) 데이비드 크락커(David Crocker)는 셴이 역량 개념을 보충하기 위해 행위주체성(agency)개념과 공적 토론 개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 셴의 행위주체성은 자기 결정, 추론과 숙고, 행위, 사회에 대한 영향력 행사라는 요소들로 구성된다. 행위주체성은 본질적으로 가치있을 뿐만 아니라, 도구적 가치와 구성적 가치도 갖는다(Crocker, 2008: 283; Crocker & Robeyns, 2009: 81-3).

에서 서로 상응하면서 발달한다면 셴의 정의론은 더 큰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다(목광수, 2018: 188-9).⁹²⁾

그러나 셴 정의론의 실천문제에 대한 도덕심리학적 접근은 일견 타당하지만,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물론 셴의 거시적인 정의 접근을 세밀한 관점에서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다. 이를 셴이 비판했던 롤스의 정의에서 차용한다. 셴의 비판과 달리 롤스는 개인의 선관을 발달시키면서 실천력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롤스의 체계적인 제도조차 개인의 동인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셴의 정의든 롤스의 정의든 결국 개인이 ‘어떻게 그것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필연적이다. 그렇다면 과연 롤스와 목광수의 접근처럼 개인의 선관 개념으로 실천력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사회 제도와 나선형 구조식 순환이 이루어지면, 자기실현적 정체성과 행위주체성이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인가? 실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인의 동기 요소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윤리 관점을 전제 요구할 수밖에 없다.

사실 셴의 역량 개념은 그 자체로도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행위주체성을 담보하고 있다. 역량은 반드시 성취 달성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분명 그것을 할 수 있는 행위 자유와 포괄적인 결과를 포함한다. 또한 역량은 그 자체로도 수단이 아니라 본질적 가치를 지니기에 이미 상당한 정도의 자유와 주체성을 지닌 셈이다. 역량 개념과 별개로 셴의 정의에서 실천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결국 셴 정의론의 실천성 비판에 대한 본질은 ‘역량에 대한 한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덕심리학적 관점에서 역량의 행위주체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실천으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낙관적인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셴의 정의에 대한 실천성 비판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으나, 그것을 해결하는 본질은 방법 문제가 아니라

92) 코스가드(Christine M. Korsgaard)는 개인이 자기반성을 통해 규범성(normativity)을 제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고 실현한다고 본다. 목광수는 코스가드의 관점이 셴이 제시하는 공적 추론 과정을 통해 부정의를 제거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고 본다. 또한 코스가드의 정체성 강조는 롤스가 자존감(self-respect)에 대해 강조했던 것과 유사하다. 롤스는 자존감이라는 기본가치가 중심적 위치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TJ 108).

다른 관점이 요구된다. 관련하여 역량 개념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비판들은 후속 절에서 다루고자 한다.

제 2 절 역량 개념의 한계

역량은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기능들의 여러 가지 조합이다. 센은 역량을 통해 자유의 범위를 확장하여 실질적인 자유를 의도하였다. 그러나 역량 접근에 대해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역량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를 추구한다는 비판이다. 둘째, 역량 접근은 사회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비판이다. 셋째, 구체성이 부족하여 실제적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다.

첫 번째 비판과 관련하여 역량 접근은 결국 방법론적 개인주의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방법론적 개인주의는 모든 현상을 사회와 분리하여 개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역량은 보통 공동체나 집단의 것이 아닌 개인 속성으로 간주된다. 이에 대해 센은 역량 접근이 그러한 분리를 가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IJ* 275-7). 오히려 역량은 공동체의 삶을 요구할 수 있고,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역량도 고려할 수 있다. 이미 개인은 다수의 소속, 정체성을 지니고 있고, 여러 종류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역량이다.

물론 역량의 핵심은 행위주체적인 자유를 나타내기에 개인주의적인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다. 센의 정의는 개인적 자유의 중요성을 자유주의 패러독스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센이 지적하는 지점은 역량은 개인적 자유를 추구하지만 결코 사회와 분리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각 개인은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더욱 사회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때 사회를 개인에 대한 단순 추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오늘날 개인에게는 한정된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들이 얽혀있고 다양한 정체성과 역할 범위를 지닐 수 있기에 복잡성을 인지하고 더 폭넓게 접근을 해야 한다(*IJ* 279).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역량이다. 따라서 역량 접근이 사회와 분리된 방법론적 개인주의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 비판으로서 역량 접근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잘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특히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구조 문제로서 인정(recognition)의 문제와 관련된다. 토마스 포기(Thomas Pogge)는 센의 역

량 정의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인정의 문제를 수용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Pogge, 2002: 205; 목광수, 2010: 224). 여기서 인정이란 기존의 소극적인 권리 위주의 시민권(citizenship as rights)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기존의 시민권은 크게 두 입장에서 비판받는다. 하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시민덕성을 중시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 다원주의에 맞추어 공통적인 시민권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이 중 후자는 차이(difference)의 정치, 정체성(identity) 정치, 인정(recognition)의 정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논의되었다. 인정의 운동을 추구하는 집단은 대부분 소수자들이기에 스펙트럼이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Kymlicka, 2002: 515). 시민권은 결국 어떤 정체성과 어떤 이익을 추구해야 할지를 요구하게 된다. 현대에는 전통적인 시민권에 사회적 권리를 포함하면서 복지국가의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근본적으로는 단일한 국민 형성(nation building)의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정치를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재분배의 정치(politics of redistribution)’라고 하였다. 재분배 정치의 특징은 경제적 분배에만 초점을 맞춘다. 반면 ‘인정의 정치(politics of recognition)’는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지배, 불인정, 경멸 등에 초점을 맞춘다(Fraser, 2000). 한 예시로 아랍계 또는 일본계 미국인, 카탈로니아인, 퀘벡인 등과 같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만, 문화적인 위계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도 있다. 인정의 정치는 더 포용적인 시민의 개념으로서 집단의 차이를 인정하는 ‘차별적 시민권(differentiated citizenship)’을 요구하게 된다(Kymlicka, 2002: 516-27).⁹³⁾

인정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을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다. 그러나 역량은 자연적 우연에 기초한 차이도 서열화 된 등급으로 간주할 수 있기에 수혜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수혜자의 자존감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해당 개인은 선별되기 위해 자신의 열등감을 입증해야하는 난처한 상황이 된다. 실제 쉐의 역량은 UN의 국제적인 개발 논의로도

93) 한편 차별적 시민권은 모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정도로 개인 자유에 대한 급진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 체제 거부나 공동 책임에 있어서 무임승차를 용인할 수 있는지, 집단 간 차이 인정을 요구한다면 집단 내 차이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반영되는데, 그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은 능동적 존재가 아닌 불인정한 존재로 여겨지게 된다. 앤더슨은 분배정의로서 수혜자를 선별하기 위한 ‘이상적인 운 평등주의’에 대한 집착이 현실 정치에서는 오히려 동정과 조롱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한다(Anderson, 1999, Kymlicka, 2002: 167).⁹⁴⁾ 이로 인하여 자신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난점이 생긴 것이다. 이는 오히려 시민성과 연대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역량의 적용에 있어서 개념을 너무 단순화시킨 탓이다. 역량 개념을 단순한 분배적,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본질적인 자유로 해석하여 적용한다면 오히려 앞선 한계들을 충분히 해소가능하다. 역량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는 등급화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문화적 관습에서 열등하다고 평가되는 자연적 우연성을 역량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제한할 필요도 있다(목광수, 2010: 235). 실제 센은 각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 증진을 위하여 차별적인 가치들을 명백한 부정의로서 철저히 배제한다. 이는 역량 접근이 인정의 문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인정의 문제에서 역량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분배적 측면에서만 역량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결국 센이 비판했던 수단으로서 자원주의와 다름 아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역량 정의는 궁극적으로 역량의 평등을 추구하는 개념이 아니다. 역량이란 자유의 한 속성일 뿐이고, 과정보다는 기회에 더 초점을 맞추는 개념이기에 실제 적용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 비판에서 제기되는 인정의 문제에 대한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역량이 구조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느냐다. 센과 달리 프레이저는 인정의 문제를 명백한 구조적인 부정의로 인식한다. 다문화 사회 속 인정의 문제는 집단주의로 변질할 수 있는 집단 간, 집단 내 정체성 정치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social status)의 평등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Fraser, 2001: 21-42).⁹⁵⁾ ‘잘못 설정된 틀(misframing)’에 의해 배제된 사람들은 사회적 종속

94) 다만 앤더슨은 기존의 보상 규칙(compensation rule)이 아닌 최소치 규칙(sufficientarian rule)에 따라 역량이 최소치 이상이 되도록 분배하면 수혜자의 자존감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어떤 기준에서 부족하다는 것이지 열등하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목광수, 2010: 231-2).

(social subordination)되어 정의를 요구할 실질적 기회를 상실한다(김병곤 & 봉재현, 2014: 38). 기득권의 정의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자선이나 박애의 대상일 뿐 더 이상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역량은 인정의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기에 구조적인 보완을 요구한다. 그 일환으로서 프레이저의 ‘잘못 설정된 틀’과 ‘종속된 사람의 원칙(all-subjected principle)’을 제시할 수 있다(Fraser, 2008: 40-1; 김병곤 & 봉재현, 2014: 41). 이와 관련하여 심의민주주의에서 다루는 공론장(public sphere)의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legitimacy)과 정치적 유효성(political efficacy)이 중요하다. 그러나 규범적 정당성 측면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정치적 유효성 측면에서는 공론이 실질적인 유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Fraser, 2007: 11-2). 소수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얻기 위해서 ‘종속된 사람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김병곤 & 봉재현, 2014: 42-3). ‘종속된 사람의 원칙’이란 거버넌스에 종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조적 제도와 관계 속에서 정의의 주체로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 것을 말한다. 거버넌스라는 실질적인 사회관계에 주목하기 때문에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인 구성원 참여를 보장할 수 있다(Fraser, 2008: 117-20).

그러나 인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인 보완 접근은 사실 기존 센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센은 역량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공적토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그런 측면에서 심의민주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된 보완 장치들은 역량의 본질적 가치로서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각 개인 소수자들이 소외받지 않고 제도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관계에 주목하는 것은 센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정의 접근이기도 하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역량 접근보다 구체적인 방법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결과적으로 역량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적용한다면 인정의 문제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비판

95) 사회적 지위란 제도화된 문화 패턴이 모든 행위자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상호작용을 보장하여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이다. 비인정 문제는 사회에 동등한 참여를 방해하기에 사회적 종속이 된다.

은 성립하기 어렵다.

세 번째 비판으로서 역량 접근은 실천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된다. 누스바움은 역량의 목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다면 실제 적용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센은 역량 기능의 구체적 명시를 거부하였다. 구체적인 제시는 역량의 본질적인 가치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각 사회의 공적추론을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스바움은 좋음의 기준이 다를 순 있지만,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통일된 몇몇 기능들이 충분히 도덕적 기초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로 10가지 핵심 역량들을 제시하였다(Nussbaum, 2001: 416-8). 누스바움의 주장은 분명 센의 본의와 어긋나지 않으면서 충분히 핵심 역량으로서 가치가 있다. 이 점에서 센의 비구체적인 역량 접근은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사실 센의 정의에서 실천성 문제는 큰 쟁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판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목적으로서 센의 역량 개념과 센이 추구하는 비교접근 방식(사회선택이론)의 초점이 명확히 다르다는 데 있다. 그로 인하여 결국 실질적인 역량의 평가가 모호해져버리는 문제가 생겼다. 센이 주장하는 역량 자유는 복지(성취)를 담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과연 역량 평가는 어떤 성취된 기준으로 내려야 하는가? 역량 자유를 평가해야 한다면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약가능한 하위 요소(기준)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식화가 사회선택이론에서 추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센은 역량이 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피한다. 이에 드워킨은 역량접근이 실제로는 복지 평등이거나 아니라면 자원 평등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한다(IJ 297-8). 결국 역량은 측정,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롤스의 기본가치 같은 구체적인 자원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센은 역량이 자원과 같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이야기한다. 오히려 센은 왜 자원평등을 역량평등을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없는지 묻는다(IJ 299). 센은 자원주의의 대표적인 한계로서 빈곤이 단순히 자원이란 수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센은 자원이 풍요로운 나라에서도 역량의 박탈로서 빈곤이 만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Sen, 1992:

205).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 목적으로서 역량의 모호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역량이 기능의 집합이라면 결국 역량은 기능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고, 차라리 기능의 실제 달성에 주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Streeten, 1981; Stewart, 1985; *IJ* 266). 이에 대해 센은 동일한 기능 달성이더라도 도달하는 방식과 자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반박한다.

역량은 상당히 관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센이 주장하는 의도는 역량이라는 관점만 제시할 뿐 이 내용을 정하는 것은 각 사회의 몫이다. 그러나 각 사회마다 역량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본질적인 요소들은 존재해야 한다. 아니라면 굳이 역량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지칭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어느 사회 집단의 역량은 다른 집단의 것이 비해 수준이 낮을 수도 있다. 심지어 센이 역량으로 부르기 꺼려하는 기능 목록일 수도 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이 될 것이다. 센은 선형적 정의를 반대하면서도 합리적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성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주변의 부정의를 먼저 제거하자는 주장 속에는 누구나 부정의라고 판별할 수 있는 인류의 보편성이 전제되어 있다. 이것이 역량의 전제인 셈이다.

센의 역량이 지닌 상당히 포괄적인 속성에 비해, 사회선택이론의 비교접근 방식은 본래 구체적이고 수단적이며 결과주의적이다. 굳이 두 접근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단일한 선형적 접근이 요구되지 않고, 투입되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제약없이 관대할 뿐이다. 센은 이런 식으로 둘을 융합하려고 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역량의 행위주체성 자유가 사회선택이론의 결과주의적 속성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센의 역량이 실천적인 문제로 자주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제시나 해결이 어렵고, 사회선택이론 접근을 통한 공적토론 활성화라는 방법론적인 주장만 하게 된다. 결국 다시 실천성 비판이 제기되고, 대안으로 다시 공적토론만 반복하게 되는 순환에 빠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센의 역량 정의는 세 번째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 근본 원인은 역량과 사회선택이론이라는 두 주요 개념이 실제 적용에 있어서 모

순되어 부딪히는 데 있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결론내린 문제의 본질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또 다른 이상론이 되어 도리어 공적추론을 막을 것이라는 셴의 우려는 너무 비약이다. 오히려 역량이 정의로서 지침적인 성격을 지니려면 구체적인 필요가 있고, 제시된 기능목록 역시 절대적이 아니라 언제든지 비판받고 수정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열린 공평성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셴이 추구하는 실질적인 정의와도 충분히 일치할뿐더러 이를 통해 역량 자유와 사회선택이론 두 접근의 본질적인 충돌도 해소 가능하다.

제 3 절 쉐의 민주주의 방식의 문제점

쉐는 제도보다는 심의과정인 공적토론을 통해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실천 가능하다고 말한다(*IJ* 369). 활발한 공공캠페인, 시사, 공개토론 등을 통한 참여의 강화는 세계적인 국가없이 세계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좋은 방법이다(*IJ* 463). 그러나 쉐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으로서 공적토론 강조는 막연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첫째, 공적토론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특히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처가 어렵다. 둘째, 단순히 공적토론의 강조만으로는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쉐의 방식은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한계들을 지적받을 수 있다. 우선 심의란 재분배 정치의 성격으로 차이의 인정보다는 결국 국민 형성의 과정일 뿐이다. 또한 심의는 매개 언어의 한계로 사회문화적 역학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인 제도 적용이 어렵다.

첫 번째 비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제도적 고려없이 단순히 토론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Ackerman, 1992: 5-24; 김병곤 & 봉재현, 2014: 37). 쉐이 대안으로 주장하는 토론에 의한 정치는 관용의 미덕, 적극적 참여, 언론의 역할만 강조할 뿐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부족하다. 실제로도 쉐는 공적토론 자체에 대해서는 방법이나 절차 등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토론을 수없이 강조하였지만, 정작 참여의 정치적 측면을 간과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를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는 결국 다문화 사회 정의에서 중요한 인정의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쉐의 심의민주주의는 고통을 받는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기에 기존의 지배집단을 보수적으로 더 강화할 수 있다(Mouffe, 2000: 80-107). 결국 토론의 활성화만으로 부정의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은 모두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할 수 없기에 비현실적이다(김병곤 & 봉재현, 2014: 37-9). 이미 공적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권력이나 자격, 능력 차이로 인하여 권력에 의한 부정의는 결코 해소되지 않는다. 오

히려 공적추론을 하는 집단 속에 사회문화적으로 고착화된 부정의가 정당화 될 위험도 있다(목광수, 2011a: 159). 이러한 점에서 셴의 공적토론 방식은 비판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여 세심한 설정이 요구된다.

두 번째 비판과 관련하여 셴이 주장하는 공적토론 중심의 민주주의 방식은 심의민주주의와 유사한 한계를 지적받을 수 있다. 셴의 공적토론 강조는 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가 더욱 요구되지만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로 인해 셴의 민주주의는 심의민주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셴의 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의 유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개인 이익과 선호를 바탕으로 하는 투표 중심의 집약적인 형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심의민주주의는 기존의 민주주의에 대한 한계로 제시된다. 심의민주주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보이는데, 하나는 롤스와 같은 자유주의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하버마스와 같은 비판이론의 전통이다. 이에 대해 셴은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의 주장대로라면 셴의 심의민주주의는 롤스와 하버마스 모두를 포괄할 수 있다(*IJ* 366-7). 이는 앞서 다룬 자유의 다면성과 유사하게, 셴이 다른 관점들을 포괄하면서 폭넓고 실질적인 공적토론을 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심의민주주의에는 필연적으로 심의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덕성이 요구된다. 과거의 시민권이 수동적이고 권리들을 가질 권리였다면, 오늘날에는 능동적인 덕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나 시민덕성(citizenship) 없이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운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Habermas, 1992: 7; Kymlicka, 2002: 452). 여기서 시민덕성이란 두 가지 측면을 지닐 수 있다.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적 공화주의에서 주장하는 공적 삶으로서의 덕성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처럼 본질이라기보다는 수단적인 덕성이다. 김리카는 시민덕성 주장들이 기존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요구들을 통합하려는 시도이지만, 정의에 관한 주장보다는 전략적인 후퇴라고 본다. 현대에 들어 시민덕성은 본질적인 것이 아닌 수단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선에 대한 복잡한 논란들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

다가 아리스토텔레스적 공화주의가 주장하는 공적 삶(시민덕성)에 비해, 사적 삶은 더 순수하고 자유로운 연합과 시민사회를 보장할 수 있다.⁹⁶⁾ 결국 자유로운 사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시민덕성에 대한 수단적이고 도구적인 관심이 필요하다(Kymlicka, 2002: 473-9).⁹⁷⁾ 따라서 심의에 요구되는 시민덕성은 사적이면서도 수단적인 성질을 지닌다.

현대의 다문화 사회에는 시민덕성으로서 공적 담론에 참여할 능력과 의지가 더욱 강조된다. 기존의 집적적인 투표중심의 민주주의에서 대화중심으로 전환되는 데, 이를 ‘심의적 전환(deliberative turn)’이라고도 부른다(Dryzek, 2002).⁹⁸⁾ 따라서 심의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시민덕성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깊이 연계된다.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은 공적 합당성(public reasonableness)으로도 불리는데, 설득의 정치 기제로서 일종의 타협을 제안한다. 또한 심의한다는 경험의 공유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더 많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Kymlicka, 2002: 459-61).

센의 공적토론 역시 단순 집적적인 과정이 아니고,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으로서 공적합당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센은 심의과정 자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세가지의 한계를 비판받을 수 있다. 우선 심의를 통한 의견의 일치가 심의민주주의의 진정한 목표인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의견의 일치하는 차이를 제거하는 것과 다르다. 차이란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차이를 인정하기 위해 심의가 제시되었지만 아이러

96) 이러한 주장은 앞서 3장 1절에서 다룬, 허시먼이 말한 자본주의 초창기 정념과 이해관계의 대비와 연결하는 논리적 맥락이 같다. 사적 삶과 공적 삶의 대비와 연결은 현대 정치철학 논의의 주요 포인트이기도 하다.

97) 그러나 김리카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관점에서는 시민덕성이 각자의 정의에 따라 해석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예를 들어 좌파들은 불평등이 능동적 시민덕성을 잠식하는 것을 우려하지만, 우파는 도리어 복지 정책이 능동적 시민덕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Kymlicka, 2002: 505-6).

98) 다만 집적 개념에서 심의 개념으로 전환에 대해 논쟁이 있고, 모두가 심의(deliberative) 용어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는다. 드라이젝과 영은 심의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반대하고, 각각 담론적(discursive), 의사소통적(communicative) 용어를 선호한다(Kymlicka, 2002: 462).

니하게도 차이의 인정은 의견의 일치를 쉽지 않게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심의민주주의는 너무 낙관적이다. 보편적으로 심의민주주의는 사적인 전략적 행위를 지양하고 공적인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추구하지만, 항상 공적인 관점에서 이타적인 행위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 이는 오히려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이미 심의과정은 무지의 베일처럼 참여자의 배경이 관여하지 않는 구조가 아니기에 협상력 격차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심의과정이 왜 반드시 공적인 관점에서 상호 이해를 추구해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왜 굳이 사적인 행위를 지양하고 모두를 위한 공동의 복지를 고려해야 하는가? 따라서 심의민주주의는 인정의 정치 측면보다는 통합의 기제로서 국민형성과 더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다(Kymlicka, 2002: 501). 결국 심의의 본질은 이질적인 개인들의 통일된 국민 형성을 위한 과정인 셈이다.

심의의 또 다른 한계로는 언어를 들 수 있다. 국민 형성의 관점에서든 중요한 것이 언어다. 무엇보다 심의민주주의는 상호 공유된 언어와 일정 수준의 언어력이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심의민주주의는 언어가 상당히 중요한 맹점으로 작용한다(Kymlicka, 2002: 496). 단적으로 심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언어를 구사하지 못한다면 이미 심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언어 유창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저에 깔려있는 주류와 비주류의 문화적 역학관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를 간과한다면 주류 언어 집단의 협상력은 유리할 수밖에 없고, 소수자에 대한 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위험 요인이 된다. 이에 공통된 언어를 서로 맞추고자 하는데, 오히려 인위적인 언어의 통일은 소수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기존의 주류 문화에 대한 강제적인 형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심의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 조건이 오히려 다양한 차이의 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하게 된다. 이는 심의민주주의가 비판받는 대표적인 한계인 엘리트 민주주의와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심의에 참여하는 각 개인에 요구되는 자격이나 역량, 규칙들은 이미 그 절차만으로도 진입장벽인 셈이다.

마지막 한계로서 심의민주주의의 절차 제도는 국제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 전 세계적인 민주적 심의를 위해서 세계적인 단일 체계가 필요하다. 그

러나 세계적인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킴리카 역시 세계시민주의적(cosmopolitan) 또는 초국가적(transnational) 민주주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비록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있지만 어디까지나 국민국가 기반일 뿐 개개인의 민주성은 결핍되어 있다. 게다가 초국가적 제도들에 대한 정치이론이나 모델 역시 부재한다. 현재의 민주주의가 대부분 국가 시민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초국가적 접근이 개개인의 민주적 시민권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초국가적 차원에서 심의민주주의와 대중 참여의 형태를 확립하기가 어렵기에 결국 기존의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세계시민주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민주주의 발전은 각 국민국가의 민주주의 성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능동적인 시민덕성과 심의민주주의를 국민형성 방식으로서 자유적 민족주의와 연결시키는 것은 결국 다시 세계시민론적인 반론에 부딪히게 된다(Kymlicka, 2002: 496-501). 세계시민론적 관점은 셴이 비판했던 주요 요인 중 하나인데, 도리어 셴의 민주주의 방식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셴은 열린 공평성의 관점에서 공적토론의 필요성만 다시 반복 강조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셴의 민주주의는 앞선 한계들에 대해 단순히 공적토론을 문제해결의 열쇠로서 낙관적으로만 다루는 측면이 있다. 공적토론은 셴이 자신의 정의를 실제에 적용하는 방식인 만큼 셴의 정의론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한계를 보완하고 더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공적토론이란 결국 실천방안이기에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심의의 성격 역시 단순히 의견 일치만이 목표가 아니기에 인정의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심한 설정이 필요하다. 덧붙여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의 구조적인 한계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기회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보완한다면 셴의 민주주의가 지닌 좋은 함의로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유의 보장을 더욱 실현시켜 나갈 수 있다.

제 5 장 셴 정의론의 시민교육적 적용

제 1 절 자유의 다면성 관점에서 자유의 확장

자유는 다면성 관점은 기존 도덕과 시민교육에서 자유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좋은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다면성이라는 용어에 드러나듯이 셴에게 자유는 상당히 복합적인 개념이다. 선택하는 기회로서 자유뿐만 아니라, 선택하는 과정으로서 자유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IJ* 258-9). 또한 셴은 개인적인 자유(liberty)와 일반적인 자유(freedom)를 구분한다. 이때 자유는 롤스가 강조하는 개인적인 측면과 공화주의에서 강조하는 일반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IJ* 342). 셴은 이러한 구분 관점을 사회선택이론으로 다루어 형식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적 자유가 파레토 효율로 표현되는 사회의 선호체계와 대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것이 셴의 패러독스다. 여기서 일반적 자유는 개인적 자유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합쳐졌을 때 드러나는 사회적 실현과도 연관된다(*IJ* 355).

결국 자유(freedom)의 다면성이 시사하는 점은 자유를 단순 개인 선호라는 한정된 정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 많은 정보를 반영해야 실질적인 자유를 평가할 수 있다. 실질적인 자유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량 외에도 의존의 결핍이나 간섭의 결핍 등 여러 관점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IJ* 346-7). 어떤 특정 관점은 틀린 것이 아니라 자유의 서로 다른 측면이기에 같이 공존할 수 있다. 따라서 셴이 추구하는 자유는 다양한 관점의 자유들을 인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도덕과 시민교육에서 다루는 자유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비판할 수 있다. 첫째, 자유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의 문제점이다. 둘째, 자유주의 자유에 대한 단편적인 해석과 적용의 문제점이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자유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자유 개념과 자유주의에 대해 다루는 영역은 ‘윤리와 사상’의 사회사상이다. 여기에서 시민을 주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 있다.

| 영역 | 일반화된 지식 | 내용요소 |
|------|--|--|
| 사회사상 |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자율적 연대를 통해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한다. | 3. 시민 : 개체적 존재인가? 사회적 존재인가? ①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 ②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 |

[표 4] 자유주의와 관련된 윤리와 사상 영역

관련하여 중단원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 | |
|------|---|---|
| 성취기준 |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 | |
| 평가기준 | 상 |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근거를 들어 분별할 수 있으며,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조사하고 종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립할 수 있다. |
| | 중 |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입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으며,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조사하고 종합할 수 있다. |
| | 하 |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 자유의 의미와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입장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위한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

[표 5] 자유주의와 관련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이에 따라 교육과정에서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각각 개인선과 공동선

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상호 대비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한다. 이에 자유주의에서는 정치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공동선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 등 개인선의 추구를 중시한다...(중략)...반면 공화주의는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와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공화주의는 개인적 자유와 권리의 실현이 정치 공동체의 존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화주의는 개인선 뿐만 아니라 정치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실현되는 공동선도 중시한다(미래엔, 윤리와 사상: 184).⁹⁹⁾

이러한 서술은 첫 번째 비판점과 연관된다. 다시 말해, 자유를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있다. 교과서에 서술된 대비는 셴이 반영했던 개인적 자유와 일반적 자유의 구분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셴은 자유주의의 자유나 공화주의의 자유를 대비되는 양 축으로 두지 않는다. 두 관점은 모두 일리가 있지만 하나의 속성에만 집중하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되어버리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각각의 관점은 자유의 여러 측면들 중 하나일 뿐이며 결국 상호보완적이다. 셴의 패러독스를 통해 보았듯이 일반적 자유는 개인적 선호 자유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 셴은 더 많은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자유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대입한다. 이것이 자유의 다면성이다.

성취기준의 대비와 다르게 오히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게 어렵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그 이유는 둘 다 자유를 강조하고 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Kukathas, 2009: 695-6).¹⁰⁰⁾ 물론 교과서에서도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유사한 점을

99) 해당 출판사를 주로 발췌한 이유는 김인정 채택율 1위라고 홍보되고 있고, 현장에서 높은 점유율로 활용되기에 충분히 대표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본 연구는 여러 교과서 비교 분석에 목적이 있지 않기에 해당 교과서에서도 최대한 성취기준에 맞는 공통적인 서술 위주로만 발췌하였다.

100) 다만 정치적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해 차이가 있다. 공화주의는 공공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정치 기구를 주장하지만, 자유주의는 공공영역을 넓히는

들어 양립 가능성을 제시하며 결말을 짓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두 관점이 서로 반대되는 것으로 완벽하게 대비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유주의가 공동체와 공동선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공화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등의 개인선을 경시하지는 않는다...(중략)...자유주의는 개인이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인정하며, 공화주의 또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개인의 집합체로서의 공동체를 중시한다. 결국 자유주의적 시민성은 공동선이나 공익을 경시하지 않으며, 공화주의의 공동체주의적 시민성 또한 개인선이나 사익을 경시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양립하며 조화를 이룰 수 있다(미래엔, 윤리와 사상: 185).

두 번째 비판으로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자유주의 자유는 단편적으로만 해석되어 적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자유주의 자유는 자유지상주의의 것과 구분될 필요가 있다. 사실 자유 개념 자체는 오랜 시간 다양한 이데올로기들과 걸쳐있어서 복잡한 요소가 많다. 자유주의를 하나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소위 자유주의자들의 정치적 관심이 계속 변해왔고, 이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유의 다면성의 배경에는 자유 개념의 복잡성과 이를 둘러싼 숭한 논쟁들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자유주의는 시대에 따라 고전적 자유주의와 현대적 자유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로크, 아담 스미스, 토크빌, 하이에크 등과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주로 작은 정부, 법치주의, 임의적 권한 반대, 사유 재산 존중, 자유 계약, 자기 책임 등을 중시한다. 게다가 인간의 경제적 능력은 옹호하지만, 도덕적 능력에는 비관적이다. 반면 현대적 자유주의자들은 밀의 견해에 따라 인간을 진보적으로 바라보면서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을 중시한다. 이때 국가가 경제적으로 비인간적이지 않은 환경을 보장하면서 자유를 확장시키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큰 정부를 옹호할 수 있다(Ryan, 2009: 360-4).

것이 대중들을 약하게 하여 도리어 국가권력 견제를 실패할 것을 우려한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자유 유지에 필요한 것은 개인의 책임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지 억지로 공공의 미덕을 만들려고 하는 기관이 아니다.

물론 교과서의 서술이 혼용되는 것처럼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둘 다 개인적 자유의 증진과 사유 재산에 대해 매우 옹호한다. 그러나 현대의 자유지상주의자는 고전적 자유주의로 지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다르다. 대표적으로 노직은 매춘, 마약, 비합법적 성행위 등 피해자 없는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지만, 로크나 아담 스미스는 그러지 않았다. 무엇보다 자유지상주의는 정부 자체를 필요악이 아니라, 불필요한 악이라고 여긴다 (Ryan, 2009: 365). 이처럼 자유는 그 안에서도 관점이 다양한 개념인데, 교과서에 서술된 자유의 맥락은 단편적이어서 자칫 자유에 대한 오해가 생길 우려도 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다루는 허용 범위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다음 서술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잘 드러난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스스로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러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미래엔, 윤리와 사상: 181).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보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근거를 자연권 사상에 두고 있다...(중략)...자유주의는 자유를 최상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로 삼으며,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체제와 제도에 반대한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존립 목적이 구성원들이 스스로 선택한 신념에 따라 자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다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 외에는 공권력과 법이 개인의 행동을 제약할 수 없다고 본다. 즉 법의 간섭은 최소한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미래엔, 윤리와 사상: 182).

자유주의에서는 정치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므로 공동선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 등 개인선의 추구**를 중시한다(미래엔, 윤리와 사상: 184).

본문에서 자유란 단지 개인적 자유로서만 표현되고, 공동선과 대비되는 것으로 기술된다. 이 과정에서 자유는 사익을 보장한다. 자유가 곧 사익 추구에 대한 전제이다. 그러나 자유가 사익을 대변한다고 해서 자유가 사익과

불가분의 관계로 여겨지거나 동치되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자칫 자유가 사익을 추구해야만 온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자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사익이 있어야 자유가 존재한다고 여기는 역전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자유주의의 이면에는 분명 이데올로기적인 측면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다. 이 과정에서 사익추구의 도덕적 정당화마저 자연스럽게 성립된다. 이런 상황에서 사익과 공익의 대립은 더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해결은 더욱 요원해진다. 이는 결국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라는 커다란 사상 간 대립으로만 귀결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각자의 도덕적 입장은 이미 견고하기에 어떤 선택이든 충분히 정당화된다. 사익 추구는 자유주의의 실질적인 대변이 되며, 그것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반자유주의로서 도덕적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자유의 핵심으로서 사익추구가 두드러지는 것은 자유의 범위를 무척 협소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에 대해 센은 자유가 사익추구와 동치되는 것을 거부한다. 보통 효율성과 극대화를 합리적 선택으로 여기는 경제적 관점에서는 철저히 사익 추구를 옹호한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통용되는 것이 시장경제체제이다. 정작 센은 시장경제를 적극 옹호하지만, 사익추구만이 그 원리이자 본질이라는 것에는 결코 반대한다(Sen, 1999: 190). 경제적 관점의 자유에 대한 가장 큰 반례는 사익 추구를 통한 경제적 이점이 반드시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센은 아무리 풍족한 자원이더라도 이것을 실질적인 자유로 변환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한다(IJ 292-3). 또한 사익 추구의 보장은 필지언정 정치적 자유나 언론의 자유 등은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분명 온전한 자유라고 할 수 없다.

앞선 두 비판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다면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비판점 중 하나로서 단편적인 자유 해석은 혼하게 자유와 평등 대립으로도 나타난다. 자유주의는 성장 중심이고, 평등은 분배 중심이 된다.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은 개인의 자유와 본질적으로 갈등을 일으킨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센은 자유와 평등 대립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는 양자택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유는 평등이 적용되는 분야이고, 평등

은 자유가 분배되는 유형이다(Sen, 1992: 52). 대부분의 정치철학들이 사실상 평등이론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유를 중시한다. 롤스를 비롯하여 자유지상주의나 공화주의 등 여러 정치철학 이론들은 모두 자유를 중요시했지만, 자유에 대한 해석과 초점이 달랐다.

센은 자유를 중요시하는 각 관점이 판단하는 정보적 기초에 모두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Sen, 1999: 109). 대표적으로 롤스의 자유는 기본가치라는 자원 수단만 고려했기에 실질적 자유로의 변환가능성을 다루지 못했다. 역량이 이를 보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센은 자유에서 역량만 강조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역량으로서 자유가 자유의 과정적 요소를 다루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한다(*IJ* 332). 개인적 자유 역시 기회 측면만을 강조하게 된다. 이는 곧 최종적 결과에 대한 기회이다. 그러나 센은 같은 결과에도 그 과정에 대한 자유가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한다. 포괄적 결과의 관점에서 달성에 이른 방식의 정당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IJ* 260-1). 이처럼 자유의 관점들은 각자 한계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센은 자유가 하나의 관념만을 고려한다면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비판한다. 각 관점은 경쟁적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다. 한 예로 공화주의의 자유가 잠재적 간섭을 다룬다면, 역량은 실제적 간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관점은 역량 기반 관점의 타당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넓힐 수 있다. 센은 역량뿐만 아니라 자유지상주의의 비간섭 자유나 신공화주의의 비지배 자유 모두 자유의 다양한 측면으로서 수용 가능하다고 주장한다(*IJ* 346-7).

결론적으로 앞선 비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기술된 자유를 개인적 자유로만 다루지 않고, 일반적 자유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일반적 자유는 개인적 자유들이 합쳐지는 결과와도 연계된다. 기존의 관점에서는 개인선과 공동선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기에 양보해야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타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유의 다면성 관점에서는 개인선이든 공동선이든 모두 자유의 틀 안에서 더 많은 관점과 정보를 반영하여 더 나은 합리적인 선을 모색할 수 있다. 반드시 공동선과 대립되는 자유가 아니라, 더욱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자유인 셈이다.

이를 적용하여 관련 성취기준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자유 의 의미에 대한 자유주의와 자유지상주의, 공화주의의 입장 등을 비교하면서 자유의 다양한 관점 속에서 개인적 자유가 공동선과 대립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자유**를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은 자유의 의미가 단지 자유주의의 개인적 자유와 공화주의의 일반적 자유로만 이분법적으로만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영한다. 이분법적 서술을 피해야 비로소 자유의 다면성 관점과도 연계될 수 있다. 자유의 다면성 관점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요소들은 서로 대립되지 않고, 모두 실질적인 자유를 위한 하나의 필요조건이 된다.

이에 따른 교과서의 기존 서술 역시 보완할 수 있다. 교과서에 제시된 자유 개념이 단편적으로 사의 추구로만 표현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보완 서술이 필요하다.

개인 자유의 추구는 **실질적인 자유의 증진**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추구하는 과정과 나타나는 결과까지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 자유와 공동선은 **상호의존**하며 **보완**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은 개인 자유가 단편적이지 않을뿐더러 반드시 공동선과 대립을 전제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개인 자유의 추구가 반드시 실질적인 자유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을 제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선택이론의 불가능성 정리나 쉐의 패러독스를 예시로 들 수 있다. 또한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인하여 우리 전체의 일반적 자유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실제 사례로서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쉐가 주장했듯이 개인 자유를 단순히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개인 선호로만 반영해서는 안 된다. 서로 간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 선호 외에 다양한 정보들을 반영하여야 하고, 이를 반영

한 개인 자유는 결코 단편적인 사익추구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익과 공익 모두를 고려하여 포괄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자유의 다면성 관점이 추구하는 실질적인 자유의 증진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교과서 서술의 흐름과 근거들을 편찬 및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반영할 필요도 있다.

자유의 다면성 관점을 반영하는 또 다른 예시로서 기존 자유 내용에 추가적으로 역량 기반의 자유 개념도 기술할 수 있다.

역량이란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기회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 기존의 자유주의 자유가 비간접 자유이고, 공화주의 자유가 비지배 자유라면, 역량 기반의 자유는 **실제 행해진 간섭**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 이는 잠재적인 간섭과 간섭할 수 있는 힘으로서 지배와 구별된다. 각각의 관점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자유라는 개념 속에 간섭, 의존, 역량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각 관점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다.

역량으로서 자유 개념은 분배정의에도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의 ‘생활과 윤리’에서는 사회정의로서 분배정의를 다루고 있다. 분배정의에서 능력, 업적과 같은 특정 기준은 논쟁의 여지가 많기에 절차적 공정성을 추구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롤스와 노직이다.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부터 도출된 정의의 원칙을 따를 때 공정한 분배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은 무지의 베일을 쓰고 지위나 계층, 능력 등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우연적인 조건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갖고, 가장 불우한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는 분배 방식에 합의하게 된다.

반면 노직은 재화의 취득과 이전의 절차나 과정이 정당하면 그 과정을 통해 얻은 소유물에 관해서는 개인이 절대적 소유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그는 국가가 강압, 절도, 사기, 강제 계약의 발생을 막는 일 이상의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재화의 분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보다 최대한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미래엔, 생활과 윤리: 92).

위 제시된 롤스의 분배정의에서 쟁점은 가장 불우한 처지의 판단과 최대한의 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롤스는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본가치를 제시한다. 그러나 센은 기본가치가 충분히 개인의 자유를 판단하거나 보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기본가치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수단일 뿐이다. 기본가치라는 수단을 제대로 변환시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없으면 기본가치의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센은 자유가 수단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 연관된다고 말한다(Sen, 1992: 160). 따라서 새로운 분배기준으로서 실질적 자유의 관점을 반영한 역량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센은 새로운 분배기준으로서 역량을 제시한다. 역량이란 자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자유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은 똑같은 자원을 배분 받더라도 이것을 실제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일반인들에 비해 힘들 수 있다. 자원이란 무엇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역량을 고려해야 더욱 공정한 분배가 된다.

이와 같은 서술은 노직과 롤스로만 대표되는, 기존의 단편적인 자유와 평등 대비를 넘어서는 확장된 자유 관점을 나타낸다. 역량은 실제 결과를 고려하는데 이는 노직의 과정 중심적 자유 접근을 보완할 수 있다. 노직의 분배 접근은 타인과 분리되는데, 역량은 개인 간 비교를 전제한다. 또한 롤스의 평등주의적 관점 역시 보완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는 기본가치에 근거하는 사회적 불평등일 뿐 선천적 장애와 같은 자연적 불평등은 고려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기본가치라는 자원만으로는 분배정의라는 결과를 보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인센티브로 용인되는 불평등을 정당화 시킬 위험도 있다. 이때 역량은 개개인이 기본가치를 더욱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보다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 이러한 관점들을 모두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센이 의도하는 자유의 다면성 관점이다.

제 2 절 세계시민주의에 열린 공평성 적용

공평한 관찰자로서 열린 공평성 개념은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에 더 나은 이론적 타당성과 정교화를 제공할 수 있다. 셴은 정의란 일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모두에게 공평할 때 비로소 정의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IJ 137). 이런 점에서 셴은 롤스의 정의를 ‘닫힌 공평성’이라고 부르면서 그 대안인 ‘열린 공평성’으로서 아담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를 내세운다. 롤스의 원초적 합의는 어디까지나 참여자들에게만 한정된다. 밖의 제3자가 참여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공평한 관찰자는 인류의 눈을 통한 참여를 용인할 수 있다. 공평한 관찰자의 추론은 선형적 평가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를 추구한다. 또한 제도뿐만 아니라, 결과로서 사회적 실현에도 중점을 둔다. 무엇보다 인류의 눈으로서 정밀조사와 참여를 강조하면서 지역주의와 편협성을 해소할 수 있다(IJ 80; 151-2). 이는 선형적 제도주의 정의와 대조되는 비교중심의 실현접근 정의이기도 하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국가별 교과서 내용들이 인권이나 정의 등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도덕 교과에서도 세계시민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세계시민성 키워드란 인권, 정의, 평화, 다문화, 다양성, 세계시민, 민주주의 등이다(김형렬 외, 2019; 신지선, 2020: 2). 이처럼 도덕과 시민교육에서는 세계시민주의로서 요구되는 바가 크지만 여전히 그 당위성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요소들이 많다. 특히 열린 공평성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세계시민주의 내용으로서 해외원조에 대한 형식적 분리 접근의 문제점이다. 둘째, 롤스의 제도주의적 접근에 대한 문제점이다. 셋째, 상어의 공리주의적 접근에 대한 문제점이다.

먼저 개념적으로 세계시민주의는 세계시민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데, 세계시민성(global citizenship)은 다소 논쟁적이며 여러 관점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국가 간 상호 의존 및 연결의 증가, 세계 복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세계 복지가 각 나라의 복지에 영향을 준다는 데 기초하고 있다. 이는 법적 개념은 아니지만, 더 넓은 공동체와 공통된 인간성에 속한다는 감각을 의미하고, 이것은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세계적인 시각(global gaze)을 증진한다(UNESCO, 2014). 따라서 세계시민성이란 광범위한 공동체와 보편적 인류에 대한 소속감으로서 지역, 국가,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 연계되어 있음을 뜻한다(박성춘 & 이슬기, 2016: 93). 이에 따라 세계시민교육은 지역문제에 한정 짓지 않고, 지구적 관점을 가지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역할, 인간 자연의 생태학적 관계, 그리고 역사와 미래의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시민으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Merryfield & Wilson, 2005: 16-7; 박성춘 & 이슬기, 2016: 92-3).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총괄 목표에서는 앞서 다룬 세계시민주의의 개념과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개인이 시민 사회와 국가, 지구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를 특히 삶의 의미 물음과 연관지어 찾아볼 수 있는 능력과 실천 성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도덕과 총론).

이러한 목표에 따라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세계시민주의를 다루고 있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세계시민을 다루는 영역은 ‘윤리와 사상’의 사회사상이다. 여기에서 평화를 주제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영역 | 일반화된 지식 | 내용요소 |
|------|---|---|
| 사회사상 | 세계 평화의 실현을 위해 지구적 차원의 가치 규범과 시민윤리에 기초한 범세계적 노력이 요구된다. | 6. 평화 : 세계시민과 세계평화는 실현가능한가? ①동·서양의 다양한 평화사상 ②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윤리의 구상 |

[표 6] 세계시민주의와 관련된 윤리와 사상 영역

관련하여 중단원 성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동서양의 평화 사상들을 탐구하여 세계시민주의와 세계시민윤리의 원칙 및 지향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세계시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성찰할 수 있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생활과 윤리’에서도 세계시민주의와 매우 밀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 영역 | 일반화된 지식 | 내용요소 |
|------------|--|---|
| 문화와 윤리 | 다양한 문화와 종교 등이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존중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다문화적 시민 의식이 확립되어야 하며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 윤리의 문제, 다문화에 대한 관용의 범위와 한계, 종교 갈등과 공존의 문제 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 3. 다문화 사회의 윤리 :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는 존재할까? ①문화 다양성과 존중 ②종교의 공존과 관용 |
| 평화와 공존의 윤리 | 지구촌 시대의 국제 정의는 국제분쟁, 반인도적 범죄, 국가 간 빈부격차, 절대 빈곤 문제 등이 해결될 때 실현될 수 있으며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원조 등의 윤리적 책임과 기여가 필요하다. | 3. 지구촌 평화의 윤리 : 지구촌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에는 무엇이 있을까? ①국제분쟁의 해결과 평화 ②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

[표 7] 세계시민주의와 관련된 생활과 윤리 영역

관련하여 중단원 성취기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다문화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오늘날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국제 사회의 여러 분쟁들과 국가 간 빈부 격차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적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정당화하고 실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윤리와 사상’ 본문에서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세계시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학파에서 발전해 온 사상으로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 인류를 하나라고 보는 입장이다.

첫째, 세계시민주의는 전 지구적인 문제의 해결과 발전에 관심을 가진다.

둘째, 세계시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한다.

셋째, 세계시민주의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미래엔, 윤리와 사상: 212).

그리고 이어서 지구적 협력의 대표 사례인 해외원조에 대해 국제주의와 세계시민주의 입장을 대조시킨다.

국제주의의 입장에서 해외원조가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롤스이다.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즉 해외원조의 의무는 사회구조와 제도의 개선에 있다는 것이다...(중략)...한편 세계시민주의는 인종이나 국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며 보편적 인류애를 강조한다...(중략)...싱어에 따르면 우리가 커다란 희생 없이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무조건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원조의 의무는 모든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미래엔, 윤리와 사상: 213).

첫 번째 비판점으로서 이러한 형식적인 대조는 문제가 있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빈부 격차와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원조라는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를 실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롤스와 싱어로 대표되는 형식적인 분리는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를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비는 생활과 윤리에서도 동일하다. 윤

리적 근거를 의무와 자선으로 나누고, 싱어와 롤스뿐만 아니라 노직의 관점까지 제시하면서 대비시키고 있다.

싱어는 누군가 고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이므로 도움을 줄 대상을 자신이 속한 공동체, 민족, 국경 내부로 한정하지 말고 지구촌 전체로 확대하여 해외원조와 기부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중략)...롤스는 고통받는 사회의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것이 전 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나 복지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국가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일지라도 질서 정연하다면 원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롤스의 관점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개인의 복지 향상을 원조의 목적으로 하는 싱어와 대비된다...(중략)...반면 노직은 자선의 관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에 관한 배타적이고 절대적 소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자신의 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해외원조나 기부를 실천해야 할 윤리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직은 해외원조를 윤리적 의무로 인식한 싱어와 롤스의 주장에 반대한다(미래엔, 생활과 윤리: 209-10).

위 제시된 싱어, 롤스, 노직의 주장을 각각 세계시민주의, 국제주의, 자유방임주의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관점에서 해외원조에 대한 윤리적 근거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해외원조에 대한 정당성과 시급성이 약해진다는 데 있다. 이미 그 자체만으로 필요성이 상당히 요구되었던 해외원조에 대해 여러 관점의 윤리적 근거를 대비시켜 취사선택해야만 하는가? 근거를 노직의 자선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의무를 노직의 자선에서 찾아야 하는 데 이미 범주가 잘못되었다. 도덕과가 내세우는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해외원조는 당연히 도덕적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당위를 다루는 도덕 교과가 더욱 적극적으로 기술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도덕과 핵심교육 영역 중 윤리적 시민교육의 한 목표로서 깊은 인류애와 세계시민성이 있다. 도덕교육에서는 세계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도 일부 다루지만, 이보다는 세계시민으로서 어떻게 행위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와 같은 실천적, 근원적 물음에 대해

도덕규범과 가치에 근거해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정창우, 2020: 467-8).

두 번째 비판점으로서 롤스로 대표되는 국제주의 역시 비슷한 문제를 보인다. 롤스의 국제주의는 과연 시급한 부정의에 민감하며 바로 제거할 수 있는가? 센은 세계 정의의 문제가 단순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줄곧 강조한다. 국제주의에 따르면 전 세계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완벽한 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실현 가능하지 않고, 또 불필요하다. 센은 롤스 역시 『만민법』에서 국제적 정의에 대해서는 선함적 정의 원칙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단지 협상이라는 인도주의적 일반원칙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IJ* 29). 제도 자체는 정의의 발현이 아니라, 정의를 향상시킬 수단이어야 한다(*IJ* 95). 정의란 제도를 넘어서 필연적으로 실제 사람들의 모습과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제주의 관점은 국제적 정의들을 단지 기술공학적으로만 다루게 되고, 비록 선의로 인정받을지언정 한낱 수사(rhetoric)에 불과하게 된다. 전 세계에서 요구되는 것은 최소한의 인도주의나 완벽한 제도 정의가 아니라, 시급하고 명백한 부정의의 제거다.

제도주의적 접근 비판은 민주주의나 세계시민주의에 전제되어 있는 서구적 전통에도 강하게 적용된다. 교과서에도 제시되었듯이 민주주의의 시작은 언제나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이다. 여기에서 시작된 정치 제도가 민주주의의 최초 발현이었고, 이후 민주주의는 서구적인 전통을 지녔기에 자연스럽게 서양에서 더 발전하게 되었다는 논리로도 전개된다. 이에 대해 센은 터무니없다고 지적한다.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의에 초점을 맞춘다면, 인도를 비롯하여 동양에도 여러 형태의 참여형 정치 체제가 존재하였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주의에 필연적인 관용과 같은 덕목들이 폐쇄적인 유럽사회보다는 개방적인 무슬림에서 더 흔했다(*IJ* 370-5). 아시아적 가치는 권위적이고 개인 자유에 회의적이라는 흔한 주장 역시 근거가 희박하며, 오히려 서양의 슬한 고전들에도 독재를 찬양하고 자유를 탄압했던 증거가 남아있다(*IJ* 258). 센은 통념과 달랐던 역사적 사실들을 제시하면서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처럼 단순하고 협소한 분류를 강하게 비판한다. 오히려 이러한 대결구도가 세계를 더 불안정하고 대치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Sen, 2002, 2008: 192-5).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를

단순히 서구적 전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민주주의를 오직 제도적으로만 해석하게 할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

세계시민주의 역시 마찬가지다. 세계시민주의 역시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에서 시작된 것으로만 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스토아학파는 포용력을 결여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스토아의 코스모폴리스(cosmopolis)는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복에 의한 제국의 확장에 더 적합한 것이었다. 이러한 근원적인 모순은 오늘날 세계시민주의의 확장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불러일으켰다(Hill, 2000: 72; 변종헌, 2020: 224-6). 세계시민주의의 본의를 고려해본다면, 세계시민주의는 서양에만 존재했던 것도 아닐뿐더러, 세계시민주의가 어떠한 특정 형태로만 여겨져서도 안 된다. 이는 곧 세계시민주의를 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 번째 비판점은 싱어의 공리주의적 접근에 대한 문제이다. 싱어와 대비되는 롤스를 셴이 비판했지만, 그렇다고 셴의 정의 관점이 곧 싱어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전에 싱어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인 세계시민주의와 공리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공리주의에도 여러 갈래가 있지만, 단순히 현대 공리주의가 세계시민주의로 해석되지도 않을뿐더러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교과서에 혼용된 맥락은 자칫 세계시민주의를 공리주의로 단순화시킬 위험이 있다. 오히려 셴의 정의도 결과주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리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셴이 추구하는 정의 관점은 싱어의 공리주의적 이익평등원칙과 다르다. 둘의 핵심적 차이가 바로 열린 공정성으로서 공평한 관찰자이다.

롤스는 공평한 관찰자가 그 행위 판단이 결국 공감으로만 환원되는 고전적 공리주의자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셴은 롤스가 공평한 관찰자를 전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아담 스미스가 주장했던 공평한 관찰자의 본의는 결국 '추론의 확장'을 뜻하기에 공리주의든 계약론이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IJ 153-5). 결국 셴의 주장은 추론의 확장을 통한 전 세계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의 추구이다. 여기에는 셴이 강조하는 합리성 특징들인 지속가능한 이유, 커밋먼트, 거부할 수 없는 합당성, 권력의 책무 등이 포함된다. 이는 싱어의 공감에만 기초하는 세계시민주의

입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넓은 세계시민주의 형태가 단지 이익평등원칙으로만 대표될 수는 없다. 세계시민주의의 확장과정교화를 위해서 공평한 관찰자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위 비판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평한 관찰자로서 열린 공평성 관점을 교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는 기존 서술방식처럼 단순히 형식적인 추가가 아니다. 앞선 노직, 롤스, 싱어와 대비되면서 이들보다 더 합리적인 추론 관점으로서 제시이다. 세계시민주의는 방법론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당위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를 단순히 이익공감으로서가 아니라 더 넓은 형태의 추론으로서 접근한다면, 세계시민주의를 이론적으로 더 정교화 시킬뿐더러 관련된 실천성 역시 높일 수 있다.

다음은 열린 공평성을 반영한 편찬 및 지도 방향이다. 먼저 해외원조 내용에 드러난 형식적인 분리를 지양하도록 새로운 서술이 필요하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노직, 롤스, 싱어 등으로 단순 나누어지고 이들에게서 윤리적 근거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취사선택이 아니라, 세계시민주의적인 민감성을 기르고 윤리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오히려 각각을 비판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특히 노직의 개인 자선에만 의존하는 관점에서 세계시민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렵기에 보다 비판적 서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롤스의 제도중심주의 역시 세계의 여러 부정의 사례들과 연계하여 비판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 실제로 시급한 빈곤이나 기아 문제 등을 탐색해보고, 또 이러한 문제가 부유한 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한다는 점을 같이 안내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원인에 대해 단순히 제도적 접근만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탐구해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제도는 그 자체로 정의의 발현이 아니라 정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열린 공평성 관점을 반영하여 해외원조에 대한 쟁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추가 기술할 수 있다.

쟁의는 빈곤이나 기아와 같은 시급한 부정의의 제거가 오늘날 필요한 세계시민 정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기존의 제도중심적인 접근들이 완벽한 제도 마련에만

신경 쓸 뿐 그 실제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셴의 열린 공평성 관점은 한 집단이나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인류의 눈으로서 더 합리적인 선택을 요구한다. 이것이 공평한 관찰자이다. 공평한 관찰자란 단순히 공감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관점에서 추론의 확장을 뜻하며 더 넓은 형태의 세계시민주의를 표방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은 셴의 관점이 롤스나 싱어와 구분되고 또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그러나 셴이 결코 제도를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제도는 정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주요 수단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부정의의 해결이라는 결과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 이때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공적 추론이다.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적 추론이야말로 세계시민주의를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더 나은 공적 추론을 위해서는 열린 공평성 관점이 필요하다. 열린 공평성은 닫힌 공평성과 다르게 추론 참여자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영향받는 모두를 고려한다. 단순히 나의 입장이 아니라 타인과 우리의 관점에서 추론하면서 지속 가능한 이유, 커밋먼트, 거부할 수 없는 합당성, 권력의 책무 등을 합리적 선택의 근거로 삼는다. 이것이 바로 추론의 확장으로서 공평한 관찰자 관점이다. 따라서 기존 세계시민주의 내용을 더 정교화시키고, 세계시민주의 실천에 대한 더 폭넓은 당위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열린 공평성으로서 공평한 관찰자 관점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6 장 결 론

본 연구는 아마티아 센의 정의론을 재구성함으로써 그 속에 담긴 시민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센의 정의론은 크게 네 가지 관점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첫째, 센의 정의론은 실현 중심의 비교접근 방식을 추구한다. 실현 중심적 비교접근 방식은 기존의 제도중심적 정의 접근과 달리 실제 인간 행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었고, 다른 비교 접근 방식을 허용하였다. 비교접근 방식은 무엇보다 명백한 부정의를 제거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곧 센이 정의를 추구하는 배경과 목적이기도 하다. 센은 롤스의 선형적 정의가 제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그것의 실현 불가능성과 불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롤스의 원초적 합의는 구성원 이외의 추론과 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센은 이러한 닫힌 공평성의 대안으로서 아담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를 제시한다. 공평한 관찰자는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실현에도 주목하고, 인류의 시각을 반영하여 지역주의의 편협성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둘째, 센의 정의론은 역량으로서 자유를 주장한다. 역량이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성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다. 롤스의 정의론 역시 자유를 중시했지만, 기본가치에 의존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센은 이를 수단적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달리 센의 정의는 개인 역량에 따른 자원의 변환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나 역량만이 곧 실질적인 자유를 뜻하지는 않는다. 역량이란 자유의 다양한 속성 중 한 측면이고, 과정보다는 기회의 측면에 더 주목하는 것이다. 평가에 있어서 센은 행위주체성과 복지, 자유와 달성을 나누면서 각각 복지 달성, 복지 자유, 행위주체성 달성, 행위주체성 자유 등으로 구분하였다. 정작 센은 역량 평등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 않았다. 역량이란 자유의 한 측면에 불과하기에 역량의 역할과 동시에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역량이 추구하는 실질적인 자유와 다원적 평가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유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셋째, 센의 정의론은 자유의 다면성 관점으로서 센의 자유주의 패러독스

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셴의 자유주의 패러독스는 셴이 오랫동안 천착하였던 사회선택이론 분야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셴이 추구하는 자유를 사회선택이론의 방식으로 해석 적용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셴 정의론만의 독특한 전개 방식이자 정의관의 구체적인 적용이기도 하다. 셴의 자유주의 패러독스는 개인적 자유와 일반적 자유가 결국 대립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는 실질적인 자유를 위해서는 단순 개인 선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셴의 자유주의 패러독스는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처럼 제기되지 않았던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적 토론을 활성화시켰다. 셴은 사회선택이론의 정보기반을 개인 선호를 넘어서 확장한다면 더욱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셴이 실질적인 자유나 정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적용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넷째, 셴의 정의론은 민주주의와 그 기반으로서 공적토론을 강조한다. 동시에 민주주의를 제도로서만 보는 관점을 비판한다. 셴은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가 있으면서 동시에 발전에 도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발전이란 부정의를 제거하고 실질적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와 발전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민주주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적인 역할이 중요하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공적토론이다. 사회정의와 민주주의는 서로 밀접하며 필연적으로 담론적 특징들을 공유한다. 이때 공적 토론을 통한 합의는 경제학처럼 사람들의 실제 선호들과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과 다르다. 셴의 자유주의 패러독스는 개인의 자유와 다수결 원칙을 정합할 수 있는 관용적인 선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민주주의의 성공이 가장 완벽한 제도를 구성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셴의 정의론은 여러 기여에도 불구하고 크게 세 가지 비판을 받는다. 첫째, 선형적 제도주의에 대한 셴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비판받는다. 셴은 줄곧 선형적 제도주의로서 롤스를 비판하지만, 이 자체가 롤스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롤스를 단지 선형주의나 제도주의로 보는 시각을 거부한다. 오히려 셴의 비교정의론 역시 셴이 비판하였던 이상론에 기반을 둘 수밖에 없다고 지적받기도 한다. 게다가 셴의

반제도주의적 접근은 제도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채 제도로부터 기인하는 부정의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선 지적들은 다소 비약이며 선형적 제도주의에 대한 센의 비판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 반면 센의 정의론은 실천성에 대한 한계가 다소 인정될 수 있는데, 이는 제시되는 것처럼 방법론적 문제가 아닌 다른 관점의 문제이다.

둘째, 센이 주장하는 역량 개념에는 여러 한계들이 있다. 먼저 역량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로만 여겨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센은 역량 개념이 개인과 사회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반박한다. 또 다른 한계로는 역량 접근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역량이 인정의 문제를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연결된다. 인정의 문제를 구조적인 부정의로 보는 관점에서는 역량에 구조적인 보완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역량의 본질적인 가치를 충분히 반영한다면 인정의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부정의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기에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 한계로는 역량의 구체적인 목록이 제시되지 않아 실천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센은 구체성이 오히려 공적추론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역량이 모호해지거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 기존의 자원주의와 결국 같게 해석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해낸 센 정의론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센의 역량과 센의 비교접근 방식(사회선택이론)의 초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센이 주장하는 역량 개념은 냉정하게 따지면 사회선택이론이 추구하는 형식적이고 결과주의적인 속성과 융합되기 어렵다. 이로 인하여 역량을 구성 및 적용하고 평가해야 하는 실체가 모호해졌다. 센은 구체적인 제시없이 단지 사회선택이론 방식을 통한 공적토론만 강조한다. 센 정의론에 대한 실천성 비판이 줄곧 제기되지만 어쩔 수 없이 공적토론만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량의 구체적인 제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센이 우려한 각 사회의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되 공통적이고 필수적인

목록 또는 판단 기준들이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다만 제시된 항목들이 절대 불변하는 기준이 아니고, 불완전하더라도 열린 공평성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장치를 둔다면, 셴이 우려하는 부분과 셴 역량의 모순을 동시에 해소 가능하다.

셋째, 셴의 민주주의론은 다루는 범위에 비해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비판 받는다. 셴은 민주주의가 자유의 실질적인 확장이면서 국가 발전과 상생관계로 본다. 그 자체로 본질적인 중요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도구적으로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제도보다는 단지 공적토론의 중요성만 강조할 뿐이다. 이에 공적 토론만 주장하는 것은 기존의 권력 구조를 해소하지 못한 채 모두의 동등한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게다가 공적 토론을 중시하는 셴의 민주주의 관점은 심의민주주의와 유사한 한계를 지닌다. 심의민주주의 역시 다원성과 불일치에 기반하는 인정의 정치보다는 사회 통합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기존의 역학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자칫 심의역량에 더 용이한 엘리트들만의 민주주의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이러한 비판들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 측면이 있기에 심의의 성격이나 구체적인 절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비록 셴의 정의론은 기존 정의의 엄밀성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한계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셴이 제시하는 독창적인 자유의 범위나 세계시민주의 관점은 도덕과 시민교육에 주는 함의가 크다. 첫째, 자유의 다면성 관점에서 자유의 범위를 크게 확장할 수 있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에서 다루지는 자유는 오직 개인적 자유이다. 이때 자유주의와 공화주의를 제시하면서 개인선과 공동선을 대비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셴은 간섭에 초점을 둔 개인적 자유와 의존에 초점을 둔 공화주의적 자유 모두 일반적 자유의 다양한 속성의 한 측면이라고 말한다. 이외에 행위주체성에 초점을 맞춘 역량 자유도 중요한 한 측면이다. 이 각각은 서로 대조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해주는 관계이다. 따라서 도덕과 성취기준이나 각론 내용에 제시된 자유를 단편적으로 간섭 측면의 개인적 자유로만 다루지 않고, 일반

적 자유의 다면성 관점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개인적 자유란 필연적으로 공동선과 대비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자유의 범위 안에서 여러 관점을 반영하여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선을 모색할 수 있다.

둘째, 세계시민주의 내용에 열린 공평성 개념을 적용하여 더욱 정교화시킬 수 있다. 이는 이론적 배경을 더욱 공고하게 하면서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 공평한 관찰자로 대표되는 열린 공평성은 닫힌 공평성인 롤스의 원초적 합의와 달리 제 3자의 관여를 받아들인다. 센은 이를 인류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지는 세계시민주의 내용은 주로 해외 원조에 관한 내용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싱어, 롤스, 노직이 다루지는데, 각각 세계시민주의, 국제주의, 자유방임주의라고 할 수 있다. 각각에서 해외원조의 윤리적 근거를 찾는데, 이러한 기술 방식의 문제점은 오히려 해외원조에 대한 시급성과 정당성이 약해진다는 점이다. 해외원조란 이미 당연한 도덕적 의무이고, 당위를 다루는 도덕과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롤스의 경우 세계시민주의를 제도적으로만 접근하는데, 이는 센이 크게 비판했던 지점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 요구되는 것은 완벽한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아와 같은 명백한 부정의 제거를 과감히 실천하는 것이다. 제도란 그 자체로 정의의 발현이 아니고 정의를 향상시킬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센의 관점은 싱어의 공리주의적 관점의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이때 공감중심의 싱어의 이익평등원칙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합리성에 기반한 추론 관점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열린 공평성으로서 공평한 관찰자이다. 세계시민주의가 단지 공리주의적 공감에만 기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계시민주의의 확장과 더 큰 당위성을 위해서는 센의 열린 공평성 개념을 교육과정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도덕과에서의 시민교육적 함의라는 관점에서 센의 정의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기존의 정의론에 대해 센이 주장하는 실현 중심의 비교접근 방식은 현대 다원화 사회에 더 적합하며 활용될 수 있는 함의가 크다. 그 위상에 비해 센의 정의가 국내 도덕연구에서 2차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지

못하는 측면에서는 이미 지적받고 있는 한계들을 보완하면서 제고해나가야 할 필요성도 분명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센이 자신만의 독특한 정의체계를 구성해나가게 된 의도와 핵심 배경에도 주목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했다. 이는 전반적인 센 정의에 잠재적으로 깔려있는 중요한 문제의식이자 흐름이기도 하다. 또한 이 자체로 센 정의의 효과적인 당위이자 현대적인 의의이다. 그러나 본인 역량의 부족으로 제대로 다루지 못한 한계와 아쉬움이 있다. 이하 내용은 센의 의도와 배경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본 예시이다.

센은 오늘날 부정의의 근본 원인을 경제학과 윤리학의 괴리로 보고 있다. 센은 현대 경제학이 경제학과 윤리학 사이의 큰 간격 때문에 근본적으로 빈곤해졌다는 점을 지적한다(Sen, 1987: 23-6).¹⁰¹⁾ 그 결과 경제행위에서 인간의 행동 동기는 철저히 단편적이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아담 스미스를 근거로 인간은 이기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다.¹⁰²⁾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개인의 사익 추구는 자연스럽게 공익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 행위는 인간이 추구해야하는 지극히 합리적인 행위이다. 현행 도덕 교과서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의 이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자유방임주의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미래엔, 윤리와 사상: 199). 그러나 아담 스미스의 본의를 이해한다면 자유방임주의를 무작정 찬성하지 않았을뿐더러 신중으로 대표되는 이해관계의 강조가 다소 복잡한 맥락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센은 자신의 정의에서 아담 스미스에 대한 올바른

101) 센은 경제학의 기원을 기술공학적인 접근과 윤리적인 접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이 두 접근법의 균형이 중요한데, 오늘날 실증경제학 위주의 방식은 규범적인 분석을 거부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윤리적 성찰을 무시하게 되었다. 경제학의 윤리적 기원은 행위에 대한 인간 동기 즉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경제학은 인간의 보편적인 행위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102) 고전 경제학의 기본 가정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든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한다. 합리적인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시장이고, 시장 이외의 개입은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다는 것이 고전 경제학자의 기본적 입장이다. 이에 왜 고전경제학자들은 합리성에 집착을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최승주, 2015: 279-80).

해석을 줄곧 강조했다.

센은 경제학이 윤리학으로부터 떨어진 현실과 그로 인하여 만연하는 부정의를 지적한다. 대표적으로 기근이나 빈곤, 불평등 등이 그것이다. 인간의 동기와 시장에 대한 스미스의 복잡한 태도를 잘못 해석하고, 감정과 행위에 대한 그의 윤리학적 분석을 간과하는 것은 현대 경제학과 윤리학의 괴리와 같은 맥락이라고 말한다. 윤리학과 떨어진 경제학이 초래한 인간 동기에 대한 파악 실패는 현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복지경제학이 본래 목적했던 유익한 영향마저 현저히 줄어들었다(Sen, 1987: 49-50).

센은 경제학과 윤리학 두 분야의 교류가 더 긴밀해진다면 경제학뿐만 아니라 윤리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Sen, 1987: 112). 기술공학적 접근과 형식적 모형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도덕적 난제들에 대해 색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 많은 윤리적 딜레마가 기술공학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고, 사회정의 문제들은 대부분 경제와 관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는 지극히 당연하게 다양한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었다. 롤스 역시 정의의 원칙에 대해 상당히 기술공학적인 분석을 가한다. 이런 관점에서 센 역시 자신의 경제학 연구분야였던 사회선택이론을 통해 부정의를 해소하는 사회정의 실현의 실마리를 찾는다. 센은 실증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인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가치들의 양적화나 상충관계를 통해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더 높은 공적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센의 문제의식은 본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센의 정의를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 재구성하는 센의 정의론 자체는 롤스와 달리 센의 완성된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센이 구상해왔던 총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의라는 흐름 안에서 현재 진행형인 일부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점에서 센 정의의 본의와 여러 가지 연구물들의 다양한 적용가능성이 엿보였다. 그러나 사회정의론 관점에서 시민교육적 함의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 위해 더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래 본 연구 초기에는 센의 사회선택이론 적용 분야에 더 초점을 맞추

어 셴의 의도대로 도덕적 관점들을 적용, 융합하여 새롭게 교육적인 함의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너무 학제적이기도 하고, 그 자체만으로는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기에 본인 역량이 부족하여 사회정의 영역으로 한정 짓고 더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여기서 구체적인 주제로 심화시킨다면 미래 도덕교육의 외연 확장으로도 얼마든지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사회선택이론이나 행동경제학에서도 다양한 도덕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고, 도덕과에서도 시도해볼 수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관련하여 2차 연구들이 더 활성화되고 지속되었으면 한다. 그 중간 다리의 역할로 셴의 정의론이 있다. 셴의 정의가 완전무결해서가 아니라, 그의 깊은 문제의식과 학제적인 시도가 현대의 정의론과 도덕교육에 있어서 좋은 의의를 지니며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복잡하고 불완전하여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논의의 촉발은 셴의 정의가 지속적으로 의도하는 바이다.

참 고 문 헌

1. 셴의 저작

- Sen, A. K.(1970a), *Collective Choice and Social Welfare*, San Francisco, California: Holden-Day.
- _____ (1970b), “The Impossibility of a Paretian Libera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8, 152-7.
- _____ (1977), “Rational Fools: A Critique of the Behavioral Foundations of Economic Theory”, *Philosophy & Public Affairs*, 6(4), 317-344.
- _____ (1979), “Utilitarianism and Welfarism”, *The Journal of Philosophy*, 76(9), 463-489.
- Sen, A. K. & Williams, B.(eds.)(1982a), *Utilitarianism and Beyo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n, A. K.(1982b, 1988), “Rights and Agency”, *Philosophy & Public Affairs*, 11(1), 3-39, in Scheffler, Samuel(1988), *Consequentialism and Its Cr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87-223.
- _____ (1986), “An epilogue” in Elster, J. & Hylland, A.(eds.)(1986), *Foundations of Social Choice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13-48.
- _____ (1987), *On Ethics and Economics*, Basil Blackwell, 박순성 & 강신욱 역(2009), 『윤리학과 경제학』, 한울아카데미.
- _____ (1992), *Inequality Reexamined*, Oxford University Press, 이상호 & 이덕재 역(1999), 『불평등의 재검토』, 한울아카데미.
- _____ (1996), “서문” in Hirschman, Albert O.(1977),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s: Political arguments for Capitalism before its triumph*, Princeton University Press, 노정태 역(2020), 『정

념과 이해관계: 자본주의 승리 이전에 등장한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논변들』, 후마니타스, 9-21.

_____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김원기 역(2013), 『자유로서의 발전』, 갈라파고스.

_____ (1997-2002), 강연모음, 원용찬 역(2008), 『센코노믹스: 인간의 행복에 말을 거는 경제학』, 갈라파고스.

_____ (2009), *The Idea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이규원 역(2019), 『정의의 아이디어』, 지식의 날개.

2. 국내 문헌

김나경(2013), 복지 개념의 법철학적 구성, 법철학연구, 16(2), 53-80.

김대근(2010), Amartya Sen의 정의론의 방법과 구조, 법철학연구, 14(1), 179-212.

김동일(2014), 분배정의론이란 무엇인가? 자유주의 분배정의론의 쉬운 이해와 통괄적 연구를 위한 틀, 법철학연구, 17(3), 225-266.

김병곤 & 봉재현(2014),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21세기정치학회보, 24(3), 29-49.

김상범(2005), 결과주의의 시민윤리적 함의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김영산 & 왕규호(2009), 『미시경제학』, 박영사.

김완진(2005), 경제적 합리성과 게임이론, 철학사상, 20, 23-44.

김주성(2008),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보, 42(4), 5-32.

김형렬 외(2019),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도덕과 교과서의 변화: 국가 시민성과 세계 시민성 개념을 중심으로”, 제30회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145-158.

류지한(2019), A. K. 센의 공리주의 비판: 그 타당성과 한계, 윤리연구, 127.

- 목광수(2010), 역량 중심 접근법과 인정의 문제, 철학, 104, 215-239.
- 목광수(2011a), 아마티아 센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93, 149-174.
- 목광수(2011b), 이상론과 비이상론의 관계에 대한 고찰, 철학논총, 65, 209-228.
- 목광수(2018), 아마티아 센의 전지구적 정의관, 철학논총, 94, 171-196.
- 박성춘 & 이슬기(2016), 『다문화 시대의 통일 교육』, 집문당.
- 변종현(2020), “세계시민성과 시민교육”, in 추병완 외(2020), 『시민성 이론과 시민교육』, 하우.
- 서요련(2021), 하버마스 민주적 법치국가 이론의 시민교육적 함의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송윤진(2016), 자율성 역량 모델의 법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 신지선(2020), 『만민법』의 도덕교육적 함의,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유성상 & 이은혜(2016), Amartya Sen의 토대역량 접근과 교육개발협력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5, 119-143.
- 이경은(2017), 아마티아 센의 토대역량 접근법이 도덕교육에 갖는 함의,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 이정전(2004), 합리적인 개인, 비합리적인 사회?, 철학사상, 19, 33-81.
- 이정전(2005), 경제적 합리성 비판. 철학사상, 20, 45-78.
- 정원규(2005), 민주주의의 두 얼굴 : 참여 민주주의와 속의 민주주의, 사회와 철학(10), 281-329.
- 정준표(2003), 합리적 선택이론에 있어서 합리성의 개념, 대한정치학회보, 11(2), 415-439.
- 정창우(2020), 『도덕교육의 새로운 해법』, 교육과학사.
- 정창우 외(2020), 『생활과 윤리』, 미래엔.
- 정창우 외(2020), 『윤리와 사상』, 미래엔.

- 주병기(2013), 아담 스미스의 생애와 사상, 철학과 현실, 145-160.
- 주병기(2017), 규범경제학의 최근 동향: 공정배분과 사회선택이론, 경제논집, 56(1), 61-87.
- 최승주(2015), 행태경제학의 이슈와 동향, 경제논집, 54(1), 277-299.
- 최은광(2014), 셴의 역량이론과 롤스 정의론의 양립가능성, 서울대학교 문학석사 학위논문.
- 추병완 외(2020), 『시민성 이론과 시민교육』, 하우.

3. 해외 문헌

- Ackerman, Bruce(1992), *The Future of Liberal Revolution*,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Allais, Maurice & Otto Hagen(eds.)(1979), *Expected Utility Hypotheses and The Allais Paradox*, Dordrecht: Reidel.
- Anderson, Elizabeth(1999), “Justifying the Capabilities Approach to Justice”, in Brighthouse & Robeyns(eds.), *Measuring Justice: Primary Goods and Capabil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81-100.
- Arneson, Richard(1989). “Equality and Equal Opportunity for Welfare”, *Philosophical Studies*, 56(1), 77-93.
- Arneson, Richard(1990), “Liberalism, Distributive Subjectivism, and Equal Opportunity for Welfare”,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9, 158-194.
- Arrow, Kenneth(1951, 1963), *Social Choice and Individual Values*, Yale University Press.
- Atkinson, Anthony(1970),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2, 244-263.
- Axelrod, Robert(1984),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aker, C.(1975), “The Ideology of the Economic Analysis of Law”,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5, 3-48.
- Becker, Gary(1996), *Accounting for Tast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erlin, Isaiah(1979), “Two Concepts of Liberty”, 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University Press, 118-172.
- Bicchieri, Cristina(2002), “Covenants without Swords: Group Identity, Norms and Communication in Social Dilemmas”, *Rationality and Society*, 14, 187-222.
- Blau, Julian(1975), “Liberal Values and Independenc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 395-401.
- Bowles, Samuel(2016), *The Moral Economy: Why Good Incentives Are No Substitute for Good Citizens*, Yale University Press.
- 박용진 역(2020), 『도덕경제학: 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한 시민을 대체할 수 없는가』, 흐름출판.
- Brink, David(1986), “Utilitarian Morality and the Personal Point of View”, *The Journal of Philosophy*, 83(8), 417-438.
- Coase, R. H.(1976), “Adam Smith's View of Man”, *Th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3), 529-546.
- Cohen, G. A.(1989), “On the Currency of Egalitarian Justice”, *Ethics*, 99, 906-944.
- Cohen, G. A.(1990), “Equality of What? On Welfare, Goods, and Capabilities”, *Louvain Economic Review*, 56.
- Cohen, G. A.(2008), *Rescuing Justice and Equality*, Harvard University Press.
- Crocker, David(2008), *Ethics of Global Development: Agent, Capability, and Deliberative Democra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ocker, David & Robeyns, Ingrid(2009), “Capability and

- Agency”(edited by Christopher Morris), in *Amartya S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rwall, Stephen(2004), “Respect and the Second–Person Standpoint”, *Proceedings and Addresse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Association*, 78, 43–55.
- Deneulin, Séverine(2011), “Development and the Limits of Amartya Sen’s The Idea of Justice”, *Third World Quarterly*, 32(4), 787–797.
- Dryzek, John(2002), *Deliberative Democracy and Beyond: Liberals, Critics, Contest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 Dworkin, Gerald(1972), “Paternalism”, *The Monist*, 56, 64–84.
- Dworkin, Ronald(1977), *Taking Rights Seriousl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Dworkin, Ronald(1981), “What is Equality? Part 2: Equality of Resource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0, 283–345.
- Edgeworth, F. Y.(1881), *Mathematical Psychics: An Essay on the Application of Mathematics to the Moral Sciences*, London: C. K. Paul.
- Feinberg, Joel(1986), *Harm to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 Fraser, Nancy(2000), “Rethinking Recognition”, *New Left review*, 3(3), 107–118.
- Fraser, Nancy(2001), "Rethinking without Ethics?", *Theory, Culture & Society*, 18(2–3).
- Fraser, Nancy(2007), “Transnationalizing the Public Sphere: On the Legitimacy and Efficacy of Public Opinion in a Post–Westphalian World”, *Theory, Culture & Society*, 24(7), 1–30.
- Fraser, Nancy(2008),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Cambridge: Polity Press.

- Frohlich, Norman & Oppenheimer, Joe(1992), *Choosing Justice: An Experimental Approach to Ethical Theo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ehr, Ernst & Fischbacher, Urs(2002), “Why Social Preferences Matter – the Impact of non-Selfish Motives on Competition, Cooperation and Incentives”, *The Economic Journal*, 112(478), C1-C33.
- Gibbard, Allan(1974), “A Pareto-Consistent Libertarian Claim”, *Journal of Economic Theory*, 7, 388-410.
- Goodin, Robert & Pettit, Philip(eds.)(2009), *A Companion to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Blackwell Publishing.
- Gray, J.(1984), “On negative and positive liberty”, in Gray, J. & Pelczynski, Z.(1984), *Conceptions of Liberty in Political Philosophy*, London: Athlone Press, 321-348.
- Gutmann, Amy(2009), “Ch. 25 Democracy” in Goodin, Robert & Pettit, Philip(eds.)(2009), *A Companion to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Blackwell Publishing, 521-531.
- Habermas, Jürgen(1992), “Citizenship and National Identity: Some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Europe”, *Praxis International*, 12(1), 1-19.
- Habermas, Jürgen(1994), “Three Normative Models of Democracy”, *Constellations*, 1, 1-10, in Benhabib, Seyla(eds.)(1996), *Democracy and Difference: Contesting the Boundaries of the Political*,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amlin, Alan(2009), “Ch. 55 Welfare” in Goodin, Robert & Pettit, Philip(eds.)(2009), *A Companion to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Blackwell Publishing, 852-864.
- Hare, R. M.(1981), *Moral Thinking: Its Level, Method and Point*, Oxford: Clarendon Press.

- Hare, R. M.(1984), “Rights, Utility, and Universalization: Reply to J. L. Mackie”, in R. G. Frey(1984), *Utility and Right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06-121.
- Harsanyi, John(1955), “Cardinal Welfare, Individualistic Ethics and Interpersonal Comparisons of Ut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3, 309-321.
- Harsanyi, John(1977, 1982), “Morality and the Theory of Rational Behaviour”, in Amartya Sen and Bernard Williams(eds.)(1982), *Utilitarianism and Beyo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47.
- Harsanyi, John(1997), “Utilities, preferences, and substantive goods”, *Social Choice and Welfare*, 14, 129-145.
- Hausmann, Daniel M. & McPherson, Michael S.(2006), *Economic Analysis, Moral Philosophy, and Public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주동률 역(2010), 『경제분석, 도덕철학, 공공정책』, 나남출판.
- Hayek, Friedrich von(1976),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cks, John(1939), “The Foundations of Welfare Economics”, *Economic Journal*, 49, 696-712.
- Hirschman, Albert O.(1977),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s: Political arguments for Capitalism before its triumph*, Princeton University Press, 노정태 역(2020), 『정념과 이해관계: 자본주의 승리 이전에 등장한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적 논변들』, 후마니타스.
- Hill, Lisa(2000), “The Two Republicae of the Roman Stoics: Can a Cosmopolite be a Patriot?”, *Citizenship Studies*, 4(1), 65-79.
- Hohfeld, Wesley(1923), *Fundamental Legal Concep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aldor, Nicholas(1939), “Welfare Propositions of Economics and Interpersonal Comparisons of Utility”, *Economic Journal*, 49, 549-552.
- Karel Vasak(1977), “Human Rights: A Thirty-Year Struggle: the Sustained Efforts to give Force of law to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NESCO Courier 30:11, Paris: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Korsgaard, Christine(1996), *The Sources of Norma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강현정 & 김양현 역(2011), 『규범성의 원천』, 철학과 현실사.
- Kukathas, Chandran(2009), “Ch. 39 Liberty” in Goodin, Robert & Pettit, Philip(eds.)(2009), *A Companion to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Blackwell Publishing, 685-698.
- Kymlicka, Will(2002),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Oxford University Press, 장동진 외 역(2006, 2018),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 Levin, M.(1984), “Negative liberty”,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2, 84-100.
- MacCallum, Gerald(1991), “Negative and positive freedom”, in Miller, D.(1991), *Liberty(Oxford Readings in Politics and Governme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00-122.
- Merryfield, M. & Wilson, A.(2005), *Social studies and the world: Teaching global perspectives*, Silver Spring, MD: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 Mishan, E.(1971), *Cost-Benefit Analysis: An Introduction*, New York: Praeger.
- Mishan, E.(1981), *An Introduction to Normative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 Moellendorf, Darrel(2013), “Transcendental Institutionalism and Global Justice”, *Critical Review of International Social and Political Philosophy*, 16(2), 162–178.
- Mouffe, Chantal(2000), *The Democratic Paradox*, New York: Verso.
- Nagel, Thomas(1972), “War and Massacre”, *Philosophy & Public Affairs*, 1(2), 123–144, in Scheffler, Samuel(1988), *Consequentialism and Its Cr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Nash, John(1951), “Non-Cooperative Games”, *Annals of Mathematics*, 54, 286–295.
- Nozick, Robert(1969), “Newcomb’s Problem and Two Principles of Choice” in Nicholas, Rescher(eds.), *Essays in Honor of Carl G. Hempel*, Dordrecht: Kluwer, 114–146.
- Nozick, Robert(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s.
- Nussbaum, Martha(2000), *Women and Human Develop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ssbaum, Martha(2001), *Upheavals of Thought: The Intelligence of Emo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mani, S. R.(2010), “Theory of Justice for an Imperfect World: Exploring Amartya Sen's Idea of Justice”,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1(4), 599–607.
- Parfit, Derek(1984), *Reasons and Persons*, Oxford University Press.
- Parijs, Philippe Van & Vanderborght, Yannick(2017),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홍기빈 역(2018), 『21세기 기본소득: 자유로운 사회, 합리적인 경제를 향한 거대한 전환』, 흐름출판.
- Pettit, Philip(2001), “Capability and Freedom: A Defence of Sen”,

- Economics and Philosophy*, 17.
- Pogge, Thomas(2002), “Can the Capability Approach Be Justified?”, *Philosophical Topics*, 30(2), 167-228.
- Railton, Peter(1984), “Alienation, Consequentialism, and the Demands of Morality”,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3, 134-171.
- Rawls, John(1971, 1999),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황경식 역(2003), 『정의론』, 이학사.
- Rawls, John(1980), “Kantian Constructivism in Moral Theory”, *The Journal of Philosophy*, 77(9), 515-572.
- Rawls, John(1993), *The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장동진 역(2016), 『정치적 자유주의』, 동명사.
- Rawls, John(1999), *The law of peopl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장동진 외 역(2009), 『만민법』, 아카넷.
- Reima, Jeferey(2011), “No Idea of Justice: A Social Contractarian Response to Sen and Nussbaum”, *Criminal Justice and Ethics*, 30(1), 23-38.
- Riley, Evan(2010), “Amartya Sen. The Idea of Justice, Book review”, *Human Rights Review*, 12(1): 139-141.
- Roemer, John(1988), *Free to Los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Roemer, John(1999), “Egalitarian Strategies”, *Dissent*, 64-74.
- Rousseau, Jean-Jacques(1762), *The Social Contract*, tr. Maurice Cranston(1968), Harmondsworth: Penguin.
- Ryan, Alan(2009), “Ch. 14 Liberalism” in Goodin, Robert & Pettit, Philip(eds.)(2009), *A Companion to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 Blackwell Publishing, 360-382.

- Scanlon, Thomas(1973), “Rawls’ Theory of Justi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21(5), 1020–1069.
- Scanlon, Thomas(1998), *What We Owe to Each Oth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effler, Samuel(1994), *The Rejection of Consequentialism*, Clarendon Press.
- Simon, Herbert(1982), *Models of Bounded Rationality*, Cambridge: MIT Press.
- Sinnott–Armstrong, W.(2003), “Consequentialism”,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 Smart, J. & Williams, Bernard(1973, 1991), *Utilitarianism: For and Again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Adam(1759),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D.D. Raphael & A.L. Macfie(1982), Liberty Fund.
- Stewart, Frances(1985), *Planning to Meet Basic Needs*, London: Macmillan.
- Streeten, Paul(1981), *Development Perspectives*, London: Macmillan.
- Taylor, C.(1979), “What’s wrong with negative liberty”, in Ryan, A.(1979), *The Idea of Freedom: Essays in Honour of Isaiah Berli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75–194.
- Temkin, Larry(2003), “Egalitarianism Defended”, *Ethics*, 113, 764–782.
- Thaler, Richard & Sunstein, Cass(2008), *NUDGE: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 Yale University Press, 안진환 역(2009), 『넛지』, 리더스북.
- Thomas, Pogge(2002), “Can the Capability Approach be justified?”, *Philosophical Topics*, 30(2), 167–228.
- UNESCO(2014),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Preparing learners for the challenges of the twenty-first century*.

Walzer, Michael(1983), *Spheres of Justice*, New York: Basic Books.
Wolff, Jonathan(1998), “Fairness, Respect, and the Egalitarian Ethos”, *Philosophy & Public Affairs*, 27(2), 97-122.

Abstract

A study for the citizenship educational implications of Amartya Sen's theory of justice

Oh Myung Wu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seek the citizenship educational implications of Amartya Sen's theory of justice. Sen's theory of justice refers to a strong perception of manifest injustice in common with mankind and aims to promote rational and substantive freedoms based on the perception. This study deals with preliminary considerations to interpret Sen's theory of justice, which is an interdisciplinary character, and then reconstructs into four characteristic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covering the entire Sen's theory. First, Sen's theory of justice pursues a realization-focused comparison approach. Second, Sen's theory of justice argues for capability as a substantive freedom. Capability as freedom presupposes the plurality of aspect of freedom. Third,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social choice theory which is called a 'Sen's liberal

paradox', which is treated as another feature. From this moral point of view, the application of social choice theory is also a unique process of Sen's theory of justice. Fourth, The emphasis on public reasoning through social choice theory leads to Sen's democracy theory as a specific practice method of justice.

However, Sen's theory of justice shows three limitations. First of all, criticism is raised that criticism of a transcendental institutionalism is based on a wrong interpretation of it, and that th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 is rather overlooked. Second, several limitations of the concept of capability are also criticized. Capability pursues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so it is difficult to solve social structural problems such as the problem of recognition. In addition, difficulties in actual application such as evaluation are raised because the capability list is not specific. Finally, Sen's democratic method has a problem of emphasizing only public reason without institutional consideration. And due to the lack of careful consideration of deliberation, the existing limitations of deliberative democracy can be pointed out equally.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the Sen's theory of justice derived in this study is that the each focus of capability and comparison approach(social choice theory) is fundamentally different. As a result, criticism of practicality is inevitably raised, so even if it is different from Sen's argument, there is a need for specifically presented capability list from the perspective of open impartiality. This is not much contrary to Sen's original intention, and it is possible to resolve the essential conflict between the two approaches, capability and the comparison approach.

Despite some limitations, the extended scope of freedom and the perspective of cosmopolitanism pursued by Sen have great implications for moral and citizenship education. First, the scope of freedom can be

expanded from the plurality of aspect of freedom. The freedom covered in the existing moral curriculum is the personal liberty of liberalism and contrasts with the common good of republicanism. However, Sen says that both freedom as non-interference and freedom as non-domination, and also capability,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in terms of the plurality of aspect of freedom. From the plurality of aspect of freedom, the personal good does not necessarily conflict with the common good and can be seek more reasonable and substantive freedom by reflecting more information. Therefore, freedom described in the curriculum should not be treated only as personal liberty, but should be newly described by reflecting the plurality of aspect of freedom. This perspective can also present new criteria for the distributive justice.

Second, it is possible to further refine the concept of global citizenship and increase its legitimacy by applying the concept of open impartiality represented by 'impartial spectator'. Specific examples of cosmopolitanism covered in the existing moral curriculum are several perspectives on foreign aid. However, this ritual technical separation may rather weaken the urgency and legitimacy of aid. In addition, both Rawls's institutional approach and Singer's utilitarian approach show limitations about global citizenship.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Sen's perspective of open impartiality must be specified in the curriculum. Open impartiality seeks more open and better reasoning from the eyes of mankind. This goes further than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based on empathy.

keywords : Sen's theory of justice, citizenship education, freedom as capability, social choice theory, liberal paradox, open impartiality

Student Number : 2019-26287